

#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 기획논문

일제강점기 수원의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그 역할

| 이방원

수원자혜위원의 신축공사와 화성행궁의 공간 변천

| 최지해

## · 일반논문

병자호란시기 남한산성과 광고산의 기마전  
: 김준룡 부대와 청나라 팔기병의 기마전

| 이흥두

제암리 학살사건의 기억과 계승(1)  
: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 조성운

가상 정책 유형 선호와 유료화 찬반의 관계  
: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중심으로

| 조한라·조용준·정가형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과 정책방향

| 김숙화·김형준·임혜진

제19호  
2022

#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기획논문

일제강점기 수원의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그 역할   이방원 .....	1
수원자혜위원의 신축공사와 화성행궁의 공간 변천   최지해 .....	35

## 일반논문

병자호란시기 남한산성과 광교산의 기마전 : 김준룡 부대와 청나라 팔기병의 기마전   이흥두 .....	73
제암리 학살사건의 기억과 계승(1) :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조성운 .....	103
가상 정책 유형 선호와 유료화 찬반의 관계 :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중심으로   조한라·조용준·정가형 .....	137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과 정책방향   김숙희·김형준·임혜진 .....	161

# 기획논문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일제강점기 수원의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그 역할\*

이방원\*\*

1. 머리말
2. 수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전환
3. 수원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확장과 분과 분화
4.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5. 맺음말

## 1. 머리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의 공공의료<sup>1</sup>를 담당했던 수원자혜의원과 1925년 4월 1일 전환된 수원도립의원에 관한 고찰이다. 수원의원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 본 논문은 2021년 제8회 수원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일제시기 수원의 공공의료기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연구교수(Ewha Womans University, Ewha Institute of History, Research Professor), E-mail : bwlee65@hanmail.net

1 현재 법(법률 제18411호)으로 공공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공공의료와 현재 공공보건의료와의 일치여부는 향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였다는 점에서는 수원자혜의원, 수원도립의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명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직전부터 각도 도청소재지에 관립의료기관을 설립하였던 의료정책의 일환으로 ‘관립 수원자혜의원’의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가 각 지역에 존재했던 자혜의원을 도립의원으로 전환하였던 시기, 경기도수원자혜의원은 경기도립수원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관할 주체도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해방까지 수원과 경기 일원의 공공의료를 담당했던 주체로서 활동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고, 수원위원의 설립 배경, 수원위원의 규모 확대 및 의료 분과와 구성원의 조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했던 다양한 활동을 관립수원자혜의원에서 경기도수원자혜의원으로, 다시 경기도립수원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과 함께 정리함으로써 수원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관보』, 『경기도립수원의원25년사』, 『조선도립의원개황』, 『조선도립의원요람』,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당시 주요 신문을 활용하였고, 기존 연구성과<sup>2</sup>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경기도립수원의원25년사』는 수원위원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원장이었던 미키 사카에(三木榮)가 정리한 수원위원의 역사서로, 수원위원 변천을 널리 알리고자 편찬하였다. 미키 사카에는 수원위원의 변천을 화령전 내 개원 시대를 요람시대, 관찰도청사 개원 시대를 유년시대, 도립의원 시대를 청년시대, 수원위원 설립 25주년(1935) 이후의 시기를 장년시대로 구분하여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시기별 특색을 정리하였다.<sup>3</sup>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주 사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일제강점기 수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당시 일제강점기 존재했던 각 지역에 산재한 도립의원(1925년 이전 자혜의원) 연구의 구체적 지역 사례가 되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활동을 확인하며, 나아가 일제의 지방 의료정책의 실

2 수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연구로 먼저 근대 수원의 공공의료기관 설치 목적, 과정,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정리한 연구가 있다. 수원의 공공의료의 상황을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책 및 전국 차원의 통계를 사용·정리하면서 일제강점기 일반 민중의 의료는 당시 한의가 절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과 전국 도립위원의 의료 인력 분석을 통해 민족적 차별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수원의 공공의료기관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경기사학』 8). 그리고 수원자혜위원의 공간을 건물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건물 내부 공간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기능별 분리와 공간의 독립성 등 건축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장필구·전봉희, 2012, 「풍경공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층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2).

3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26쪽.

체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원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모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 2. 수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전환

### 1) 관립 수원자혜위원의 설립

수원에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된 배경은 통감부 시기였던 1909년 자혜위원의 설치에서 비롯된다. 1907년 당시 한국주차군 군의감이었던 후지타(藤田嗣章)가 의병 토벌을 위해 조선에 입국한 일본군을 치료하고 남은 의료품을 유효하게 소비하면서 식민통치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전국 13도 각지에 소규모 의료기관 설치를 건의하였다. 군의감 후지타의 건의가 1대 이토(伊藤博文) 통감 시기에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2대 소네(曾禰荒助) 통감 부임 이후 전격 채택되었다.<sup>4</sup>

1909년 8월 육군은 한국주차육군창고에 수장하고 있던 의료기계·약품 등 시가 5만원에 상당하는 위생재료를 통감부에 이전하였고, 통감부는 이를 다시 한국 정부에 교부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방 자혜위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1909년 8월 21일 「자혜위원관제」(부칙령 제75호)를 발표하고, 1909년 12월부터 1910년 9월에 이르기까지 각도의 도청소재지에 자혜위원을 설립하여 각도일원(各道一院)의 배치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일제강점 직후 전국 공공의료체계는 중앙의 조선총독부의원과 지방의 자혜위원으로 구성되었다.<sup>5</sup>

수원은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채택되었을 때 경기도의 수부로 지정되어 도청소재지가 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sup>6</sup> 수원의 근대적 변화는 일본인들의 이주, 일제의 식민 지배와 더불어 본격화

4 기창덕, 1993, 「평양에서의 의학교육」, 『의사학』 2-2, 128쪽.

5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2-3쪽.

6 김백영, 2012,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13쪽.

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일제 식민권력의 지배전략이 수원의 발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수원이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는 1) 서울에 인접한 사통발달의 교통 요지, 2) 풍부한 수원(水源)을 비롯한 각종 농업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의 적지, 3) 화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유산을 보유한 고적의 도시라는 점이었다. 수원역이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수원역 주변에는 수원군청, 경찰서, 재판소, 헌병분대, 우편국, 수비대, 권업모범장, 경기도수원묘포 등의 관공서들을 비롯하여 일본인들의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성내 조선인들의 구시가지와는 사뭇 다른 경관을 이루었다. 일본인 이주가 본격화된 1910년대 이후, 이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에 분포되어 있었다.<sup>7</sup>

수원자혜의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명분, 경기도 수부로서의 지위, 근대화의 배경하에서 경기도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인 ‘관립수원자혜의원’으로 1910년 9월 5일에 개원되었다. 당시 경기도관찰사는 개원한 관립수원자혜의원이 빈궁한 질환자의 박시제중을 위해 반액 또는 무료로 치료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 식민통치의 유효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관립자혜의원을 개원하여 치료·수술에 종사하고 약가와 수술료를 반액 또는 면제하고 혹 병중에 의해 입원 치료를 허락하여 박시제중(博施濟衆)의 자혜 목적을 관철하고자 노력한다. 우리 민중의 빈궁한 질환자가 구차하게 길에서 격절(隔絶)하고 약가를 스스로 내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속히 진치(診治)받고 곧고루 행복을 향유하는 취지를 유고한다.<sup>8</sup>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지방관제」의 시행에 따라 전국의 관립자혜의원은 각 도에 배속되어 도 자혜의원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관립수원자혜의원은 채 1달도 되지 않아서 경기도수원자혜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sup>9</sup> 당시 서구 의료를 펼

7 김백영, 2012,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11쪽; 15~16쪽; 23쪽.

8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3쪽.

9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 『경기사학』 8, 514-515쪽.

치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의료활동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sup>10</sup> 수원자혜의원의 개원은 수원의료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10년 9월 4일, 수원자혜의원의 설립 당시 위치, 진료대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총 3장 15항의 「관립수원자혜의원 환자치료 내칙」이 경기도 고시 제11호로 발표되었다. 수원자혜의원 위치는 제1장 총칙 제1항에 “관립자혜의원을 화령전 안에 둔다.”고 명시하였다. 처음에는 수원자혜의원을 연무대에 설치하려는 논의도 있었으나,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병실·창고·우물(井戶) 등의 부속 건물을 증축해야 하며 관민의 희망도 있어서 화령전 내로 선정하였다.<sup>11</sup> 또한 경기도관찰도청이 1910년 10월 경성으로 이전한 후에는 경기도관찰도청이 있었던 화성행궁에 자혜의원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기에 화령전에 임시 개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12</sup> 1910년 9월 1일 화령전 내 3개 동의 일부를 수축하여 9월 5일 급히 개원하였다. 처음 병원을 설립할 당시 서무과, 약제과, 진료과, 그리고 숙직실을 두었고, 감병실과 을병실을 두었으나 모두 협소하고 많이 낡은 상태였다.<sup>13</sup> 수원자혜의원이 워낙 ‘급히’ 그리고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령전에 개원하였기에 개원할 당시 시설은 매우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관찰청이 1910년 10월 경성으로 이전하였으나, 의원 설비 마련을 위해 청사를 수축하느라 수원자혜의원은 1911년 5월 28일이 되어야 구 관찰청사인 화성행궁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이곳은 이전의 화령전 내의 원사에 비해 부지 총 면적은 2,686평, 건물 총면적은 649평으로 넓어졌고, 그 공간에는 서무과, 의무과, 진

10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 『경기사학』 8, 511쪽.

11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4쪽.

12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3-5쪽;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 『경기사학』 8, 512쪽.

13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5쪽. 당시 자혜의원들은 입원실을 특등, 갑호, 을호, 병호 또는 특등, 1등, 2등, 3등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병실마다 하루 입원료를 달리하였다. 당시 갑호, 을호, 병호와 1등, 2등, 3등은 입원실의 수용 인원 및 규모 등에 근거하여 구분한 것으로 명칭 상의 특별한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에 근거하여 수원자혜의원 설립 초기 입원실이 감병실, 을병실로 구분되었다고 서술하였으며, 1916년 「京畿道水原慈惠醫院收價規程中改正」을 보면 특등, 1등, 2등, 3등으로 구분되어 있다(「咸鏡北道慈惠醫院收價規程」,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8월 7일; 「慶尙北道大邱慈惠醫院收價規程」,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0월 14일; 「忠清北道清州慈惠醫院收價規程」,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0월 14일; 「江原道慈惠醫院收價規程」,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9월 26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收價規程中改正」,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월 31일).

찰실(보통부, 시료부), 약제과, 약실, 마공(磨工)실, 병실 37실(온돌실 25, 다다미방(疊敷)실 5, 마루방(板敷)실 1, 예비병실 6), 병상 수 44개(평병실(平病室) 38, 전염병실 6), 예비 병상 수 10개, 수술실, 병리실험실, 암실, 치과 치료실, 시실(屍室), 창고, 취사소, 욕실, 소독 겸 건조실, 강당, 소사실, 탕비실, 숙직실 등이 배치되어 근대 의료 기관인 경기도자혜위원회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다.<sup>14</sup> 자혜위원회의 외형은 조선가옥으로 그 내부를 조금 교체하였을 뿐이고, 근대 건물은 외과·부인과 등의 수술을 위해 설치한 수술실 1동뿐이었다. 원사는 매년 크고 작게 개수했지만 대체로 옛날의 것을 존속하며 1923년에 이르렀다.<sup>15</sup>

수원자혜위원회의 진료 대상은 총칙 제3항에 “환자치료를 수가 및 시료 환자 치료로 구별하는 외에 헌병대 및 수비대의 진단 치료를 보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인 빈궁자뿐 아니라 일본인을 포함한 일반인 그리고 일본 헌병대와 수비대에 소속된 군인들의 진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재조선 일본인의 편익과 군사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내칙 제2장 ‘환자수진(患者受診)의 심득(心得)’에는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진료시간, 외래환자의 진료 과정, 수가환자의 치료비 관련, 입원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나열하였다. 내칙 제3장 ‘수가환자(受價患者)’에서는 수가환자가 지불해야 할 약가, 입원료, 수술료 등을 상세히 적고 있다. 그런데 수가환자에 대하여 단서 조항을 붙였다. 즉 조선인에 한하여 약가, 입원료, 수술료를 당분간 반감하고 빈곤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가 의도하였던 지방 의료기관의 시혜적 측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들의 식민통치의 선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원수가가 1912년 10월 시점에 개원 당시보다 내복약은 대인 기준 8전에서 10전으로, 대수술료는 1~10원에서 5~30원으로, 입원료는 1일 기준 특등이 1원에서 3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원 당시 입원실은 특등, 1등, 2등까지 있었는데, 1912년이 되면서 3등도 있어 70전을 받았다.<sup>16</sup>

14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2~13쪽.

15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1~12쪽.

16 『水原慈惠院收價規程』, 『매일신보』, 1912년 10월 12일.

개원 2년 만에 수술료는 최하 기준이 5배, 최고 기준이 3배 인상하였고, 입원료도 3배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1916년 1월 31일, 1918년 4월 16일, 1918년 5월 27일 등 지속적으로 의원수가가 개정되었다. 수술료와 입원료 등은 차이가 없으나 1916년 약가의 경우 대인 기준 내복약은 1912년 10전 하던 것이 15전으로 인상되었다.<sup>17</sup> 이로써 1916년에는 개원 당시와 비교하여 약가는 약 2배, 수술료는 최상 기준 3배, 입원료 역시 3배가 오른 것으로 수가환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 2) 경기도립수원위원회의 전환

1919년 3·1운동 이후 8월에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은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부임 직후 총독부 관제 개정과 더불어 제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위생시설의 정비였다.<sup>18</sup> 사이토 총독의 부임 당시 조선 내 자혜위원은 1909~1910년 한일병합 전후한 시기 13도 도청소재지에 설립된 13개소, 1912년 설립된 5개소, 1916년 한센인 치료를 위해 설립된 전남 소록도자혜의원, 1918년 국경 건너 간도용정에 설립된 회령자혜의원출장원진료소를 합하여 19개 자혜위원과 1개의 출장원진료소가 존재하였다.<sup>19</sup> 즉 한반도 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방에 설립된 관립의원인 자혜위원은 1912년 이후 증설되지 않고 있었다. 사이토 총독은 부실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기설 의원의 증·개축, 의료분과의 증치, 간호부 양성과 초빙 등을 계획했다. 또한 필요한 곳에 의원(醫院)을 신설하고, 궁벽한 지역에 공의(公醫)의 배치를 늘려 의료기관의 완성을 도모해 제생(濟生), 구료(救療)의 결실을 거두겠다고 천명하였다.<sup>20</sup>

조선총독부는 자혜의원 원사를 설립 당시 경비 절약을 위해 재래 건물을 활용하

17 「大正元年10月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14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收價規程左ノ通改正ス」,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월 31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收價規程中左ノ通改正ス」,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4월 16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收價規程中左ノ通改正ス」,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5월 27일.

18 박찬승, 김민석, 최은진, 양지혜 역주, 2018,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민속원, 303~304쪽.

19 『조선도립의원요람』 5, 1941, 2쪽.

20 박찬승 외, 2018,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민속원, 467쪽.

였기 때문에 모두 협소하고 공간의 배치가 진료상 매우 불편하며 다수의 자혜의원은 쇠퇴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1919년부터 1923년까지 계속비 250만원을 들여 총독부의원과 이미 설치된 자혜의원의 증개축 확장을 계획하였다.<sup>21</sup> 1920년 사이토 총독은 자혜의원의 증설도 계획하였고, 1921년부터 군산, 순천, 남원 등지에서 신설 자혜의원의 공사가 시작되었다.<sup>22</sup>

1920년을 전후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1922년 조선총독부는 재정 긴축 방침으로 선회하였고,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자혜의원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24년 11월, 1925년부터는 직할로 있던 각도 자혜의원의 경영을 도지방청에 일임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총독부는 자혜의원을 각도로 이관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립의원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5년 4월 1일 「조선도립의원관제(이하 관제)」(칙령 제86호)와 「도립의원규정(이하 규정)」(조선총독부령 제29호)을 공포하면서 소록도자혜의원을 제외한 모든 자혜의원을 도립의원으로 개편하였다. 자혜의원의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과 동산 일체가 도 재정에 귀속되면서 자혜의원의 관리는 중앙에서 지방 각 도로 이관되었고 각도 자혜의원의 조선총독부 직접 운영은 종료되었다.<sup>23</sup>

이러한 일제의 의료정책 변화로 경기도수원자혜의원은 경기도립수원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운영 체제 또한 변화되었다. 경기도 도(道)장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일반 조선 민중이 오래된 ‘루(陋)’를 탈피하여 점차 문명의 영역으로 들어가 의료에 있어서도 예전과 동일한 의(義)로써 나가는 것은 시세의 흐름에 합치되지 않음으로, 도립의원에 대해 점차 독립 자영의 방침 하에 의원의 경영을 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시료환자 치료와 순회진료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해왔는데, 일부에서는 자혜의 예전을 그리워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지만 착착 그 목적의 실시에 걸음을 내딛어 오고 있다.<sup>24</sup>

21 『조선도립의원개황』, 1930, 3~4쪽.

22 이방원, 2021, 「일제시기 도립의원의 설립과 운영(1925-1945)」, 『이화사학연구』 23, 88쪽.

23 이방원, 2021, 「일제시기 도립의원의 설립과 운영(1925-1945)」, 『이화사학연구』 23, 89~90쪽.

24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7쪽.

### 3. 수원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확장과 분과 분화

#### 1) 원사의 규모 확장 및 공간의 분화

수원자혜의원은 경기도관찰청이 있었던 화성행궁을 개조해서 사용하다가 1923년 대대적으로 증축하였다. 이는 개성으로 경기도자혜의원이 이전한다는 조선총독부의 결정에 기인하였다. 1920년 사이토 총독에 의해 개성이 자혜의원 신설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개성이 장차 부(府)로 승격될 정도로 경기도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수원보다 인구나 여러 발전상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원에 있는 자혜의원을 개성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원 지역민들은 경기도자혜의원이 개성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개성으로 경기도자혜의원이 이전되는 것을 무산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수원자혜의원 증축 및 개선 의지를 피력하였다.<sup>25</sup>

이전 수원자혜의원은 수술실로 사용하는 한 개의 건물 외에 모두 관찰청으로 사용되었던 오래된 조선식 건축물로, 매년 이를 개수하는데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으나 규모가 좁고 불편하였다. 경기도자혜의원을 개성으로 이전시킨다는 조선총독부의 논의 이후 수원군 각 지방 유지의 노력으로 공사비 7만 8,000원의 거액을 모금하고, 1923년 7월부터 본관, 병실, 숙직실 등을 짓기 위하여 일부 건물을 철거하였으며,<sup>26</sup> 1924년 5월에 2층 연와조 본관을 비롯한 각종 건물들이 준공되었다. 신축 건평 수가 244평이고, 기공·목판·병실·시설·사체해부실·창고·소독장의 신축, 구본관을 병실로 전환, 기타 세탁장·창고·간호부숙사를 개축하여 수원자혜의원의 외형을 일신하였다.<sup>27</sup>

이로써 수원자혜의원은 부지 4,295평, 총건평 762평이 되었고, 본관 1층에 수납, 약제과, X선실, 시료과, 내과소아과, 외과피부비뇨과, 산부인과의 각 진료실, 수술

25 이방원, 2022, 「사이토 총독 시기 신설 도립의원에 관한 지정학적 고찰」, 『대한의사학』 31-2, 403쪽; 『醫院移轉反對로 수원시민대표가 총독부에 진정해』, 『동아일보』, 1922년 11월 30일.

26 전봉희·주상훈·장필구·김수범, 2010,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Ⅳ」, 국가기록원; 장필구·전봉희, 2012,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2, 241쪽.

27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6쪽; 『慈惠醫院注意』, 『동아일보』, 1924년 8월 28일; 『水原慈醫 一層 확장』, 『매일신보』, 1924년 8월 28일.

실이 있고, 2층에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의 각 진료실, 원장실, 서무과, 응접실, 도서실, 의국, 식당, 세균병리이화학시험실, 이학적치료실이 배치되었다. 병실은 보통 병실 16실 33명, 전염병실 11실 14명, 결핵병실 2실 3명, 시료병실 1실 5명이었다. 예산 관계로 전염병실과 시료병실은 개축되지 못하였고, 또 X선실은 설계되었지만 그 기구를 설치하지는 못했다.<sup>28</sup> 1911년 화성행궁으로 이전 당시 규모와 비교하면 총 부지는 2,686평에서 4,295평으로, 총건평은 649평에서 762평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병실은 31개실(예비병실 제외)에서 30개실로 별 차이가 없으나, 수용인원은 44명에서 55명으로 20%정도 늘었다.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 1911년 조선인 시료환자 또는 조선인이 주로 입원하였던 온돌실이 25개 있었는데<sup>29</sup> 1924년 당시에는 온돌실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시료병실은 1개로 5명으로 제한되어 총 수용인원 55명 중 시료환자는 10%에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료환자를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염병실은 5명에서 1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원자혜의원의 동쪽에는 일본인 병실을, 서쪽에는 조선인 병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시료부 진찰소와 간호부기숙사는 좌익문 밖에 두어 시료환자는 좌익문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염병실은 자혜의원을 들어오자마자 좌측으로 별도의 문을 만들어 진료실 및 일반병실과 구분시켜 놓았다.<sup>30</sup> 이러한 병실 배치는 전염병의 경우 일반 환자와 격리해야 하는 질병 치료의 원칙으로 다른 진료실 및 일반병실과 구분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일본인과 조선인을, 일반 수가 환자와 시료환자를 구분한 것으로 일제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박시제중을 표방하며 조선인 질병 치료를 담당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치료한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원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1931년 4월 1일 총독

28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6~17쪽.

29 1910년대 온돌병실은 바닥재에 따른 명칭에서 나아가 시료병실이나 조선인 병실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주상훈, 2021, 「1910년대 자혜의원 계획도면에서의 병실 유형과 온돌병실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4, 180쪽.

30 장필구·전봉희, 2012, 「풍경공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2, 242~243쪽; 주상훈, 2021, 「1910년대 자혜의원 계획도면에서의 병실 유형과 온돌병실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4, 178~179쪽; 182쪽.

부령으로 전국 41개의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수원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고, 1936년 10월 1일에는 수원읍의 대대적인 확장으로 수원읍의 면적은 8배 이상 확장되고 인구도 2배 이상 늘어나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1930년에는 수원과 인천 사이를 오가는 승합자동차가 개통되고, 1931년에는 경성과 수원 사이에는 대형 가솔린 자동차가 하루 두 차례 운행되고 버스 노선이 개통되는 등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망이 발전하였다.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여선이 1931년 12월 1일에,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1937년 8월 6일에 개통되면서 주변 도시와의 교통망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수원의 행정구역의 확대, 교통망의 발전, 인구의 확대 등의 변화는 산업구조나 도시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다.<sup>31</sup>

1935년 수원도립의원 설립 25주년이 되는 시기 도립의원의 규모는 총 부지 4,969평, 총 건평 993.65평으로 1924년 5월 준공 시기보다 총 부지는 약 670평, 총 건평은 230평 확장되었으나, 환자수용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sup>32</sup> 원내 설비는 점차 충실해져 '뢴트겐' 장치, 태양열, 감응평류전기장치, 만능수술대 등 새로운 의학에 필수적인 진단치료용 기구 기계의 정비, 병리이화학시험실의 완비, 병실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sup>33</sup>

수원도립의원은 1936년 유여택(維興宅)을 제외한 모든 전각을 철거하고 병실을 다시 지었다. 도심에 위치한 궁궐을 전용함으로써 충분한 규모와 함께 접근성과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립의원과는 달리 부지를 이전하지 않고 증개축을 통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sup>34</sup> 만주사변 후에 팽창 국가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1936년 3월 10일을 기해 본관의 증신축, 보통병실과 결핵병실의 신축, 구 조선 건물의 간호부기숙사와 창고의 개신축, 상수도·기구 기계 등 수원도립의원 공사에 착수하였다. 개증축 후에는 보통병실 32실 40명(특1실 1명, 1등 7실 7명, 2등 21실 21명, 3등 2실 각 5명, 의사(疑似) 1실 1명), 결핵병실 5실 5명(2등 2실 2명, 3등 3실 3명), 전염병실 12실 14명, 시료병실 1실 5명으로 총 계 50실 64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sup>35</sup> 1924년

31 김백영, 2012,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31~32쪽.

32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8쪽.

33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7쪽.

34 장필구·전봉희, 2012, 「풍경공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2, 241쪽.

35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25쪽.

수원자혜의원 준공 당시보다 환자 수용은 55명에서 64명으로 약 20% 늘어났으나 시료환자의 수용은 5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1936년 원사의 대개축으로 수원도립의원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원장 미키는 장래에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내·소아과, 외·피부비뇨과, 안·이비인후과의 독립 분장, 전염병실의 개축, 구내부지의 확장, 증기난방의 부설, 수원본역 앞에 수원도립의원출장소 설치, 환자와 직원의 오락기관 설비 등의 제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sup>36</sup>

수원의원은 자혜의원부터 도립의원에 이르는 일제강점기 동안 그 외형과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대, 분화되었다. 처음 개원 당시의 관립수원자혜의원의 공간은 매우 협소한 임시 공간이었으나, 화성행궁으로의 이전 이후 시설과 설비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근대 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하였다.

## 2) 분과 분화 및 직원 분장

### (1) 분과 정비

수원자혜의원 개원 당시 원장은 각 과를 진료하고 그 이외에 의원 및 촉탁의원인 의무직원은 대개 내과와 외과로 나누어 진료하였으나, 점차 전문 분과별 치료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1920년이 되면 의무직원들은 내아(內兒), 외피비안이(外皮泌眼耳:외·피부·비뇨·안·이비인후과), 산부, 치과로 분장되었고, 1912년에는 따로 순회진료부도 설치되었다. 1922년에 이르러 명확하게 내과소아과, 외과(피부, 비뇨, 안, 이비인후과), 산부인과의 세 과로 나누어졌다. 이해에 치과는 폐지되었다.<sup>37</sup>

1925년 이후 도립의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내·소아과, 외·피부·비뇨·안·이비인후과, 산부인과의 셋으로 대별하여 진료하였지만, 1933년 이후에는 안·이비인후과가 독립하여 넷으로 대별하여 분장되었다. 1918년 폐지되었던 치과는 다시 1927년에 다시 배치되었다가 1931년 다시 폐지되었다.<sup>38</sup> 1928년 7월 수원도립의원

36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26쪽.

37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3쪽.

38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8쪽.

에는 치과 의사로 여의(女醫) 와타나베(渡邊マキ)를 임용하여 진료를 확장하였으나<sup>39</sup> 1930년 5월 기사에 수원도립의원 치과 아라키(荒木靜雄) 의원의 후임으로는 아사노(淺野清一)가 임관하여 3일 도착한다<sup>40</sup>는 내용으로 짧은 시기 동안 여러 차례 치과 의사의 임용과 퇴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치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1931년 폐지된 것으로 사료된다.

### (2) 직원 구성원

『경기도립수원의원25년사』의 부록표에는 수원자혜의원 및 도립의원의 직원을 원장, 의관, 의원, 서기, 약제수, 조수, 촉탁, 고원, 간호부, 기타로 나누어 정리해 놓았다. 직원표를 보면 조수는 1916년부터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sup>41</sup> 앞으로 직원표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내용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1910년 9월 개원 당시 직원은 원장 육군3등 군의정(軍醫正) 무라이(村井靜夫), 의원 육군2등 군의(軍醫) 요시노(吉野麟至), 조수 권태동(權泰東), 고원 2명(서부 육군상등간호장(上等看護長) 이와타(岩田恒四郎)와 약제수 미조구치(溝口成章)), 간호부 야마구치(山口ミ)로 총 6명이었는데, 12월에는 간호부 1명과 마공(磨工) 1명이 더해져 총 8명이었다.<sup>42</sup>

수원자혜의원 시기 직원으로 조선인들이 보인다. 의원으로는 백남규(白南圭, 1917~1918, 의무촉탁 부수), 신현익(申鉉益, 1919~1923, 의무촉탁 부수, 내아),<sup>43</sup> 오기환

39 「水原道立醫院齒科増員」, 『조선신문』, 1928년 7월 11일. 와타나베는 1928년 총독부시행 치과 의사시험에서 300여 명의 수험자 중 수석으로 합격한 수재였다.

40 「齒科醫更迭」, 『조선신문』, 1930년 5월 6일. 1926년 3월 경성치과학교 졸업 후 경성치과대전 조수로 있었다.

41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9~21쪽.

42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9~10쪽.

43 신현익은 1897년 용인에서 출생하여 기초 교육없이 일약 경성의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1919년 5월 졸업하면서 6월 경기도립수원의원의 전신인 수원자혜의원으로 진출하여 1923년까지 근무하고, 1936년 현재 경영하던 수원의원으로서 전향하여 생명구원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는 수원 사회의 은인이다. 경기도회의원(京畿道會議員), 철도국촉탁의장사(鐵道局囑託醫長), 여잠양촉탁의(女蚕兩囑託醫), 소작위원회위원(小作委員會委員), 세무서조사위원(稅務署調査委員)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각계중진인물』, 『조선일보』, 1936년 6월 12일).



## 4.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 1) 내원환자 및 왕진 치료

수원자혜의원 개원 초기 의무직원들은 진료를 통해 의술에 어두운 조선 민중에게 근대의술의 우수성과 총독부 정치의 시정방침인 자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서양 의료를 경험하거나 내지인 의사를 접하지 못한 조선인이 치료에 대한 의구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종래의 관습에 거슬리지 않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부인은 피부를 노출하고 또는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까닭에 처음에는 망진(望診), 문진(問診), 검맥(檢脈) 등의 방법으로 병의 증세를 살펴 치료했다.<sup>52</sup> 수원자혜의원은 조선인 환자의 대다수에게 시료를 하고, 또 전담의사를 두어 순회진료를 행하였다.<sup>53</sup> 점차 진료 방법과 서구 의술을 신뢰하게 되면서 의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수원자혜의원으로 오게 되었다. 수원자혜의원에는 수원 뿐 아니라 남으로는 평택, 안성에서, 북으로는 과천과 시흥에서 방문하였다. 하루 내원하는 조선인 환자는 100에서 160~170명에 이르렀다.<sup>54</sup>

조선인들은 자혜의원의 내과 치료에 대해서는 응급의 경우 즉 위세척, 흉수(胸水)와 복수(腹水) 천자(穿刺) 등에서는 서구 의학의 효험을 알게 되었으나 그 외 내과적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한약과 다를 바 없다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외과 치료, 특히 전신 마취 하에서 절제, 절개, 성형, 개복수술 등은 경험하지 못했던 치료 방법이었고, 난산을 하는 경우 효험이 있다고 신뢰하였다.<sup>55</sup>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혜의원 및 도립의원의 치료 대상은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내원환자의 수를 정리한 표이다.<sup>56</sup>

52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6쪽.

53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1쪽.

54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7쪽.

55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3쪽.

56 1911년부터 1935년까지는 三木榮, 앞의 책, 21~22쪽 참조; 1936년은 『조선도립의원요람』 1, 1940년은 『조선도립의원요람』 5 참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의 내원환자를 정리하였다. 그 외 시기는 三木榮, 앞의 책 참조할 것.

〈표 2〉 수원 자혜의원 · 도립의원의 내원환자 상황

연도	외래				입원			
	보통		시료		보통		시료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11	1,825	306	51	13,349	194	11	28	200
1915	2,133	475	11	11,866	260	44	19	141
1919	3,307	691	1	9,173	545	83	6	191
1921	5,532	1,385	-	10,193	313	83	-	143
1925	7,832	5,143	9	6,557	132	57	-	31
1930	10,445	7,660	16	4,432	166	159	-	41
1935	9,890	9,365	766	2,164	222	197	12	25
1936	21,236		3,104		8,571		962	
1940	30,572		2,479		12,032		476	

위의 〈표 2〉를 살펴보면 일본인 환자는 대개 수가환자인데 반해 조선인 환자는 주로 시료환자였다. 자혜의원 설립 초기 조선인 중 부유한 자도 있지만, 수원자혜의원은 다른 조선인에게 불안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조선인에 대해서는 수가를 강하게 하지 않는 방침을 정하였고, 조선인 수가의 시기는 수년 후로 생각하고 있었다.<sup>57</sup>

조선인의 보통환자 비율이 외래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일본인과 거의 동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30년에는 조선인 보통환자가 시료환자의 수를 추월하고 있다. 조선인은 일반의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병이거나 수술을 요하는 큰 병일 경우에 도립의원을 이용하였다. 도립의원의 치료비는 일반 민중의 처지에서 보면 당시 건설노동자의 한 달 노임의 20~30%에 해당하고, 가장 낮은 급수의 입원실을 이용할지라도 한 달 노임의 전액에 해당하는 고비용이었다. 따라서 당시 도립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이 대부분이었고, 조선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sup>58</sup> 조선인 환자의 경우 보통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나 시료환자의 수는 자혜의원 설립 초기 가장 많았으며, 1925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료환자 외래 경우 1940년은 1911년 대비 1/5 이하로 감소하였고, 입원 경우 1935년은 1911년 대비 1/8로 감소하였다.

수원자혜의원 설립 초기에는 내칙에 처음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왕진을

57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8쪽.

58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경기사학』 8, 522~523쪽.

사절한다고 규정하였으나(제15항), 2년이 지난 1912년 10월 시점에는 왕진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왕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장, 의원, 산파의 왕진료를 각각 달리하였다.<sup>59</sup> 왕진과 출장 진료의 경우 수원군 각 지는 물론, 용인군, 이천군, 진위군, 안성군, 가평군, 광주군, 양주군, 여주군, 시흥군 혹은 충청남도 천안, 온양, 성환 등에 걸쳐 시행되었다.<sup>60</sup> 왕진의 효과에 대해 미키 원장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며, 수원자혜의원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원자혜의원이 설립되었으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왕진 치료의 기회가 있는 때에는 미리 다량의 약품재료를 가지고 다녔고, 헌병 경찰의 조력을 얻어 조선인 환자를 구료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시료의 의의를 의심하고 치료를 받는 것에 주저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상을 이해하고 점점 신뢰가 쌓여 성은에 감흡하기에 이르렀다.<sup>61</sup>

미키 원장은 시료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으나 위의 <표 2> 내원환자 상황을 보면 시료환자 치료 비중은 자혜의원 설립 초반에 높으며 점차 낮아지고 있고, 도립의원 시기로 들어서는 1925년 이후에는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방 의료기관을 조선인만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1910~1918년까지 전국 자혜의원의 관련 통계를 볼 때 거주자 인구비율로 따져보면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14~20배 높은 자혜의원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고, 공의 역시 일본 이주자들의 건강 보호를 중요시 하였다. 지방 의료기관 설치에 일본인들의 지방 정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62</sup> 이러한 경향은 수원자혜의원 및 도립의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자혜의원에서 도립의원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 도립의원의 환자수를 보면 해마다 보통환자수는 증가하고 시료환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1936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부 시료과를 운영하던 도립의원의 수가 계속 감소되어

59 「水原慈惠院収働規程」, 『매일신보』, 1912년 10월 12일.

60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4쪽.

61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7쪽.

62 박윤재, 2009,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1, 164~165쪽..

1941년에는 시료과가 모든 도립의원에서 사라졌으며, 시료환자의 수도 격감하여 1941년에는 총 환자의 3.75%로 감소하고 있었다.<sup>63</sup>

도립의원이 조선인을 위한 의원이 아니었음을 당시 살았던 사람의 기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제시기에는 한약을 많이 쓰는 약방 또는 약종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일부 신식 가정만이 서구 의료의 치료 효과를 알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한약방에 안가고 도립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수원도립의원이 수원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본 군인, 일본 헌병대에 있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전부 독차지해서 이용했다고 전한다.<sup>64</sup> 일제 도립의원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기억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2) 순회진료

조선총독부는 도 자혜의원의 사업 목적이 궁민 시약을 위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재지를 도읍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1912년부터 도 자혜의원의 의원, 조수 각 1명을 관할 부군청 소재지에 파견하여 순회하며 진료하도록 하였다.<sup>65</sup> 수원자혜의원은 1912년 8월부터 순회진료를 개시하고 전임 의원 1명과 조수 1명이 연중 끊이지 않고 경기도 각지로 약상을 말의 등에 싣고 순회 진료하였다. 사정에 의해서 순회진료를 중지한 해도 있었으나 1940년까지도 진행되었다.<sup>66</sup> 순회진료 상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sup>67</sup>

63 이방원, 2021, 「일제시기 도립의원의 설립과 운영(1925~1945)」, 『이화사학연구』 23, 117쪽.

64 수원시, 2002,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I』, 경기출판사, 74쪽.

65 박찬승 외,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2018, 민속원, 211쪽; 박윤재, 2009,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1, 164쪽.

66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4쪽.

67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연년순회진료환자수, 23~24쪽. 三木榮의 책에는 1935년까지만 기록되어 있어 이후의 기록은 『조선도립의원요람』을 참고하였다.

〈표 3〉 순회진료 일수 및 진료 환자

연도	일수	보통		시료		총환자수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13	262	118	6	194	12,414	12,732
1914	307	16	14	55	14,588	14,673
1915	296	39	16	19	15,289	15,363
1916	218	22	33	8	9,858	9,921
1917	176	9	6	8	8,031	8,054
1918	207	150	74	72	9,096	9,392
1919	130	47	56	92	6,142	6,337
1922	12	1	2	14	1,165	1,182
1923	11	46	3	-	1,975	2,024
1924	15	17	43	-	1,668	1,728
1928	4	-	-	-	1,237	1,237
1930	7	-	-	-	353	353
1931	4	-	-	-	342	342
1933	5	-	-	2	1,999	2,001
1934	9	-	-	8	2,119	2,127
1935	6	-	-	5	987	992
1936						1,060
1938						3,181
1939						1,325
1940						1,457

순회진료를 전담한 의원은 1912년부터 1917년까지 다카하시(高橋肅)였고, 1918년부터 1920년까지는 사토(佐藤佐一郎)였다.<sup>68</sup>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순회 일수는 130~307일이었으며, 1914년은 307일로 가장 많고, 1919년은 130일로 가장 적었다. 1940년 이후 순회진료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1940년 이전 순회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연도는 1920년, 1921년, 1925~1927년, 1929년, 1932년이었으며, 1922년 이후 순회 일수 급격히 감소하여 1922~1924년은 1년간 순회일수가 11~15

68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역년직원과 각과 분장 상황표」, 19~21쪽.

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1928년 이후 순회 일수는 10일 미만으로<sup>69</sup> 명목만 남아 있게 되었다.

순회진료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915년 총 1만 5,36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1922년 이후 2,000명 내외로 급감하였다. 1930~1931년에는 환자수가 300명 선이었다. 이후 증가하여 1938년에는 한때 3,000명이 넘는 하나 1910년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1910년대, 연중 끊이지 않고 수원자혜의원의 순회진료는 활성화되었고, 상당수의 벽지 사람들이 순회진료를 통해 치료받았음을 알 수 있다.

수원자혜의원의 순회일정이 정해지면 경기도청에서는 각 군에 미리 통지하였고, 신문에 순회날짜와 해당 지역을 공지하는 등 순회진료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또한 공지사항에는 “진단 급 시약방법은 자력이 없는 내지인과 조선인은 무료시료하고 기타는 규정의 약가를 징수”한다고 하였다. 자력이 없는 자는 헌병 순사의 증명을 받아야 무료 시료시약이 가능하였다.<sup>70</sup> 순회진료를 신문에 공지한

69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역년순회진료환자수」, 23~24쪽.

70 「수원자혜의원 巡診」, 『매일신보』, 1912년 9월 22일; 「慈惠醫員의 巡迴」, 『매일신보』, 1912년 11월 7일; 「水原 자혜원 巡診」, 『매일신보』, 1913년 5월 3일; 「水原院 순회 진료」, 『매일신보』, 1913년 9월 10일; 「水原慈惠院 巡診」, 『매일신보』, 1913년 9월 18일; 「巡迴診療의 日割」, 『매일신보』, 1913년 11월 5일; 「慈惠醫院 巡回診療」, 『매일신보』, 1914년 2월 6일; 「순회진료 무료 실시, 수원자혜의원 순회진찰, 일반인민에게 무료시행」, 『매일신보』, 1914년 5월 5일; 「大正3年3月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6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3年度巡迴診療ノ日割及位置中左ノ通改ム」,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6월 9일; 「地方通信: 京畿道, 醫員 巡診(開城)」, 『매일신보』, 1914년 7월 1일; 「大正3年3月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6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3年度巡迴診療ノ日割及位置中澗川郡以下ヲ左ノ通變更ス」,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0월 9일; 「大正3年3月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6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3年度巡迴診療日割及位置中高陽郡二於ケル診療場所ヲ左ノ通變更ス」,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1월 20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4年度自4月至5月期間二於ケル巡迴診療ノ日割場所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4월 12일; 「慈惠院巡回日割」, 『매일신보』, 1915년 6월 24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4年度第2回巡迴診療ノ日割及位置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6월 26일; 「지방통신: 경기도, 慈惠巡回 진료(개성)」, 『매일신보』, 1915년 8월 1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4年度第3回巡迴診療ノ日割及位置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11월 11일; 「大正4年11月1日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60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4年度第3回巡迴診療ノ日割及位置中左ノ通變更ス」,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2월 2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5年度第1回巡迴診療日割及位置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3월 25일; 「大正5年3月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8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5年度第1回巡迴診療日割及位置中左ノ通改ム」,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4월 22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5年度第2回巡迴診療日割及位置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0월 7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5年度第3回巡迴診療日割及位置左ノ通定ム」, 「大正5年10月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53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5年度第3回巡迴診療日割及位置中左ノ通變更ス」,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1월 16일; 「大正5年10月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53号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5年度第3回巡迴診療ノ日割及位置中左ノ通改ム」,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3월 9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6年度巡迴診療日割及位置ノ通定ム」,

1917년 5월에 6월부터 1918년 3월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1월, 4~5월 빼고는 경기도 내 양평군, 광주군, 고양군, 개성군, 장단군, 파주군, 강화군, 부천군, 시흥군, 양주군, 가평군, 포천군, 연천군, 진위군, 안성군, 용인군, 이천군, 여주군 등 총 18개 군을 대개 일주일씩 순회진료를 하였다.<sup>71</sup>

신문에 게재된 수원자혜의원의 주요 순회진료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 1913년 8월 순회진료는 의사 다카하시(高橋肅)와 조수 심상연(沈相年) 두 명이 풍덕, 개성, 통진의 3군에 약 일주일간 출장하여 약 80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sup>72</sup>
- b. 1914년 3월 중순부터 12일간 양평군에서 순회진료한 관공리(官公吏)와 일반환자는 총 552명으로 1일 평균 46명이었으며, 진료 중 하루는 공립 보통학교에 일반 인민을 회집하여 위생 관련 사항과 음료수 선택 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에 대해 강연하였다.<sup>73</sup>
- c. 다카하시(高橋)의원 일행은 1914년 5월 2일 인천부에 도착하여 다음날 3일에 준비 및 정리하고 4일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한 환자의 총계가 353명인데, 내지인 남 6명, 여 4명, 선인 남 185명에 이르렀다.<sup>74</sup>

- d. 고교속 의원은 1914년 7월 1일부터 송양서원에서 진찰약료(診察藥料)를 무료로 하고 광제(廣濟)를 할 재 본군청 직원 헌병 관리가 출장 주선하였는데 제반 환자 수는 남 398인, 여 484인, 총계 882명에 최다 이환 증세는 소화기병 292명, 호흡기병 98명이었으며, 4일에는 당시 공립제2보통 학교에서 일반인 수백 명을 대상으로 위생강연을 하였다.<sup>75</sup>
- e. 1914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파주군에서 시료한 보통환자는 내지인 2명, 시료환자는 내지인 3명, 선인 955인, 합계 960명인데 1일에 평균 96인을 치료하였다.<sup>76</sup>
- f. 1917년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수원자혜의원에서 시행한 순회진료 상황은 보통환자 내지인 2인, 조선인 1인, 시료환자 조선인 1,667인, 합계 1,670인이었다.<sup>77</sup>
- g. 수원자혜의원의 순회진료는 1923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이천군읍내 면소회의실에서 일반환자의 진료를 행하였는데 진료를 받은 환자는 합 758명이었다.<sup>78</sup>
- h. 1927년 11월 의료기관이 불편한 여주, 장호원, 죽산, 안성에 각각 이틀 정도 머물러 치료하였다. 이 시기에도 의원과 약제계 각 1명이 조를 이루어 순회진료를 하였다.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여주 1,203명, 장호원 447명, 죽산 345명, 안성 561명, 계 2,556명으로 특히 공의 배치가 안 된 여주의 환자는 매우 기뻐하였고 장기 체제를 희망하였다.<sup>79</sup>

수원자혜의원이 순회진료를 가장 많이 하였던 1914년 시기 관련 기사가 많다. 이를 통해 수원자혜의원의 순회진료는 의사 한명과 조수 또는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이루어졌으며, 시기에는 각 지역에 대체로 7~10일 정도를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5월 12일; 『안성: 순진일할』, 『매일신보』, 1917년 8월 8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7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5월 3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8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5월 9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8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中診療場所開城郡中西面土城里ノ診療期間ヲ左通變更ス』,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7월 29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8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中金浦郡陽東面加陽里, 江華郡府内面官庁里, 富川郡文鶴面官校里及竜仁郡内四面陽智里ノ診療期日ヲ当分ノ間延期ス』,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9월 18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8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中金浦郡陽東面加陽里外3箇所ノ診療期日延期ノ如該延期場所中竜仁郡内四面陽智里ハ5月3日附京畿道告示第29号ニ依リ定メタル通實施ス』,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10월 25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8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中開城郡中西面土城里, 金浦郡陽東面加陽里, 江華郡府内面官庁里及富川郡文鶴面官校里ノ診療ハ之ヲ取消ス』,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3월 2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11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10월 25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12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23년 2월 3일; 『京畿道水原慈惠醫院大正13年度巡回診療日割及場所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 1924년 9월 5일; 『無料診療施行, 水原慈惠醫院에서(安城)』, 『동아일보』, 1924년 9월 8일.

71 『경기순회진료일할』, 『매일신보』, 1917년 5월 16일.

72 『醫院施療 감음, 수원자혜의원의 시료, 일반 병자의 감음 불이』, 『매일신보』, 1913년 9월 7일.

73 『慈惠院 의사 파송』, 『매일신보』, 1914년 4월 2일.

74 『순회치료 성적』, 『매일신보』, 1914년 5월 15일.

75 『地方通信: 京畿道, 巡診 好績(開城)』, 『매일신보』, 1914년 7월 10일.

76 『순회치료상황』, 『매일신보』, 1914년 7월 17일.

77 『순회진료환자 상황』, 『매일신보』, 1917년 8월 5일.

78 『水原慈惠醫院巡診(利川)』, 『동아일보』, 1923년 3월 10일.

79 『水原道立醫院巡回診療』, 『조선신문』, 1927년 11월 14일; 『水原道立醫院巡回診療成績』, 『조선신문』, 1927년 12월 5일.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순회진료 시 각 지역의 많은 인원이 질병 치료를 받았으며, 최다 증세는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병이었음과 순회진료 의사들은 단지 진료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위생강연을 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 3) 조산부와 간호부 양성

1913년 10월 총독부령 제94호 「도자혜의원조산부급간호부양성규정」과 1913년 12월 경기도고시 제55호 「경기도수원자혜의원조산부급간호부양성취급규칙」에 기초하여 수원자혜의원은 양성할 조산부와 간호부의 정원, 급비생수, 급비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도장관의 인가받았다.

〈표 4〉 조산부와 간호부 양성 정원과 급비

구분	정원	급비생수	급비월액
조산부과생	3	1	선인 5원
간호부과생	3	1	선인 5원
속성조산부과생	6	2	내지인 8원, 선인 5원

1916년 4월 25일 총독부령 제35호 「조선총독부의원급도자혜의원조산부간호부 양성규정」이 반포되면서 관립 간호교육이 하나의 법규 안에서 다음과 같이 입학 자격, 입학시험 과목, 수업 연합, 급비생 의무 연합 등이 통일되었다.

〈표 5〉 간호부과, 조산부과, 속성간호부과의 교육 내용

	입학 자격	입학시험 과목	수업 연합	급비생 의무 연합
간호부과	보통학교 4년 졸업	일어, 산술	1년 6개월	2년
조산부과	간호부과 졸업	일어, 산술, 해부생리, 간호법	1년	2년
속성조산부과			5개월 이상	1년

수원자혜의원은 1914년 4월 1일부터 조산부와 간호부를 각 3명씩 양성할 계획으로 생도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자격은 17세 이상 30세 이하의 보통학교 또

는 소학교 졸업의 학력이 있는 자로, 청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통해 입학시켰다.<sup>80</sup> 1914년과 1915년은 1년에 두 번 시험을 보았으나, 1916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받았다. 1915년 수원자혜의원 산파간호부<sup>81</sup> 시험 수험자는 산파 8인, 간호부 12인이었고, 1916년 6월 20일부터 7일간 경기도청에서 거행한 수원자혜의원 산파간호부시험의 수험 총원은 산파 12명 중 조선인 1인, 내지인 11인이었고, 간호부는 26인 중 내지인 19인, 조선인 7인이었다. 이는 1915년에 비교하면 간호부는 14인, 산파는 4인이 증가한 것으로, 종래 매년 2회씩 거행하였던 것을 1916년부터 년 1회로 변경한 결과로 보인다.<sup>82</sup> 수원자혜의원의 조산부 및 간호부 생도 모집은 1920년 6월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다. 1920년 6월 9일부터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시험 수험자 총수는 22명으로 그 중 1명은 불참하였는데, 조선인 12명, 일본인 8명, 외국인 1명이었다. 이들은 9일은 신체검사와 간호부 학설시험, 10일은 조산부 시험, 11일은 양방의 실지 시험을 치러야 했다.<sup>83</sup> 조산부 및 간호부 생도를 모집했던 초반 1916년에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응모하였으나, 1920년이 되면 조선인도 응모를 많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부터 졸업생이 없었고, 1920년에 모집한 생도의 졸업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중간에 양성기관의 폐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속성조산부과는 주로 헌병, 경찰관의 가족 중에서 5개월간 수업받게 하여 벽지의 조산을 담당케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처음부터 학생들이 입학하여 약간의 성적을 거두었다. 졸업생은 1914년 제1회 8명, 제2회 3명, 1915년 제3회 2명, 1916년 제4회 5명, 1917년 제5회 없음, 1918년 제6회 2명, 1919년 제7회 없음으로 6년간 총 20명의 조산부를 배출하고 이후 폐지되었다.<sup>84</sup>

수원자혜의원의 조산부와 간호부 양성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본인 중심의 간호교육에서 점차 조선인 생도의 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80 「여취업의 호기」, 『매일신보』, 1914년 3월 25일; 「산파 간호부시험」, 『매일신보』 1914년 12월 1일; 「여자의 입학할 시기 배움의 인도, 수원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 공부」, 『매일신보』, 1915년 3월 5일; 「산파간호부 시험」, 『매일신보』, 1916년 6월 20일.

81 산파가 조산부를 의미하나, 당시 사료에 기록된 대로 산파를 조산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였다.

82 「산파간호부 시험」, 『매일신보』, 1916년 6월 20일.

83 「조산부급 간호부 모집」, 『매일신보』, 1917년 9월 12일; 「産婆看護婦試験」, 『매일신보』, 1920년 6월 11일.

84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5쪽.

수 있으며,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의 간호부 양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간호부 배출이 되지 않았던 시기 1923년 천연두가 창궐하자 수원경찰서에서는 부녀 시두(施痘)의 편의를 위해 수원군 21면에 대하여 1면마다 약 3인씩의 여자중 두강습생을 모집하여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수원자혜의원 의사 오기환을 청하여 교수하였다.<sup>85</sup>

또한 수원도립의원에서는 환자 진료 외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1934년 한방의를 강습하였다.<sup>86</sup> 그리고 경기도가 1943년, 상이군인의 건강진단을 행하고 병중에 따라 치료하는 병원으로 수원도립의원을 지정하였다.<sup>87</sup>

#### 4) 방역 활동

수원자혜의원 개원 초기에는 실험기구가 없었으나, 관련 기구를 정비하면서 시험(治驗)과 실험(實驗)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여 진단 확정에 필요한 각종 병리와 이화학(理化學) 실험도 중앙의 손을 빌리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되어 내과와 외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1914년부터 1924년까지 유행성감기, 발진티푸스 실험, 유행성 적리(이질)병 원균 조사 등을 시행하였다. 그 외 다수의 도내 각지의 수질시험, 위생상황조사, 의탁병리가험물(依託病理加驗物) 시험, 감정 등을 행하고 지방위생 향상에 기여하였다.<sup>88</sup>

1916년 8월 30일 밤 기차에서 발생한 호열자(콜레라) 환자가 수원에 내려 수원이 비상사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수원에 대한 방역 시찰을 위해 총독 부의원장과 군의정(軍醫正)이 함께 수원에 내려와 자혜의원에서 임시방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총독부의원장, 군수, 기사, 경부 등 방역 관계자가 함께 출석하여 방역 방법을 협의하였다.<sup>89</sup> 정류자들을 격리하고 108명 중 60인분의 대변을 받아 검경(檢鏡)

85 「女子種痘術講習會」, 『동아일보』, 1923년 8월 19일.

86 「수원서 漢方醫 강습」, 『조선중앙일보』, 1934년 10월 6일.

87 「傷痍軍人健康診斷 京畿道에서巡迴日程을決定」, 『매일신보』, 1943년 8월 26일 : 경기도가 상이군인 건강진단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은 수원도립의원, 인천도립의원, 경성의전부속의원, 경성적십자병원이다. 그러나 상이군인 치료 활동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88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4~15쪽.

89 「芳賓원장 시찰, 방역시찰차로 수원에」, 『매일신보』, 1916년 9월 2일.

검사에 착수하였다. 수원자혜의원 기사 등이 밤을 새우며 검사하여 9월 1일 오후 1시에 모든 검사가 종료되었는데 전부 의심 증상이 없어 오후 5시경에는 해산하였다.<sup>90</sup>

수원도립의원은 전염병실 1동을 1927년 개축하였고, 1928년에 다시 1동을 신축하려고 계획하였다. 1926년 1월부터 11월에 이르는 전염병 환자 수는 내지인 21명, 선인 3명, 총 24명이었고, 1927년 1월부터 11월에 이르는 수원도립의원에서 취급한 전염병 환자는 내지인 19명, 선인 5명, 계 24명으로 적리(이질)와 장티푸스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sup>91</sup> 1940년 수원경찰서는 수원군 일왕면 하광교리에 천연두 환자가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수원도립의원에 검진한 결과 천연두 환자로 판명되어 즉시 격리병사에 수용하고 관내에 임시중두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의 활동 영역을 조사하였다.<sup>92</sup> 이렇듯 수원자혜의원은 전염병 방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 5) 출장소 관리

수원의원은 자혜의원 시절부터 경기도 타 지역에 출장소를 설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출장소는 수원자혜의원개성출장소였다. 수원 의원이 경기도자혜의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920년 9월 사이토 총독이 자혜의원 증설 계획과 신설 지역을 발표하였고 그 중 개성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sup>93</sup> 개성군은 1920년 9월 21일 관민 일동이 협의하여 '개성에는 4만여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기독교 남성병원 1개소에 불과하며 그 설비가 완전하지 못하고, 기타 몇몇의 개인의가 있으나 일반 주민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자혜의원 설립이 가장 긴급함'을 인식하고 자혜의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운동하였다.<sup>94</sup> 개성 주민

90 「수원 停留者 해방, 난리를 만난 수원군 백성, 검경을 마친 후 전부 해방」, 『매일신보』, 1916년 9월 2일.

91 「水原道立醫院伝患取扱数」, 『조선신문』, 1927년 12월 4일.

병 유형	1926년	1927년
적리(이질)	11명	10명
장티푸스	10명	8명
파라티푸스	1명	2명
성홍열	2명	3명
디프테리아	-	1명

92 「水原에도 痘禍-患者一名發生」, 『매일신보』, 1940년 1월 8일.

93 「자혜의원건설지 십이처를 결정」, 『동아일보』, 1920년 9월 11일.

94 「개성시민 협의」, 『조선일보』, 1920년 9월 5일.

들은 7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조선총독부에 자혜의원 신설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다.<sup>95</sup>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자혜위원의 개성 이전이 무산되고 수원자혜의원개성출장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출장소는 1924년 1월 28일부터 일반 환자의 진료를 개시하였다.<sup>96</sup> 수원의원에서 호시노(星野鼎)과 오기환 2명을 의무촉탁으로 임명하여 진료를 개시하였다. 이는 1925년 4월 1일에 이르러 도립의원으로 승격되어 수원의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 별개로 독립되었다.<sup>97</sup>

수원도립의원 시기 경기도 이천과 안성 지역에 수원도립의원출장소가 설립되었다. 이천군은 동부 조선의 관문이며 교통이 발달한 상업지역이었으나 제대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천군 번영회의 활동으로 1933년 6월 1일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1933년 10월 수원도립의원이천출장소를 개원하였다.<sup>98</sup> 이천출장소 개원 후 안성군 공직자와 유지들이 1934년 11월 7일 도립의원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총경비 4만 원의 모금 방법을 논의, 결정하였다.<sup>99</sup> 총독부는 수원도립의원안성출장소로 승인하였고, 출장소는 1936년 3월부터 진료하면서 의료 기계 및 수술실의 설비를 보완하여 1936년 11월 15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sup>100</sup> 1936년 당시 수원도립의원에서는 이천출장소에 5명, 안성출장소에 4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진료하였으며,<sup>101</sup> 수원도립의원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천출장소와 안성출장소는 1938년 11월 도립의원으로 승격되었다.<sup>102</sup>

95 『開城에 慈惠醫院』, 『매일신보』, 1920년 10월 5일.

96 『開城慈惠醫院出張所開設』, 『경성일보』, 1924년 1월 14일; 『開城에 慈惠醫院』, 『동아일보』, 1923년 11월 5일;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대정 13년(1924) 4월 1일 당원의 지배하에 개성진료소가 설치되었다고 기록하였다.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1쪽.

97 三木榮, 1936.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1쪽.

98 『道立利川醫院 七日에 開院式』, 『동아일보』, 1933년 10월 10일.

99 『道立醫院設立期成 安城有志들이 活動中』, 『조선중앙일보』, 1934년 11월 11일.

100 『難産! 安城道立醫院 開院日은 何歲月 当局의 無誠意를 非難』, 『조선중앙일보』, 1936년 1월 3일; 『安城道立醫院新築工事落成, 本月下旬落成式』, 『조선신문』, 1936년 9월 15일; 『安城道立醫院諸設備完了』, 『조선신문』, 1936년 10월 24일; 『安城道立醫院 十五日 落成式』, 『매일신보』, 1936년 11월 10일.

101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경기사학』 8, 522~523쪽.

102 『利川·安城의 兩出張所 道立醫院으로 昇格』, 『매일신보』, 1938년 11월 11일.

## 5. 맺음말

본 연구는 수원 지역에 1910년 9월 5일 개원한 자혜의원과 이를 승계하여 1925년 4월 1일 전환된 도립의원에 관한 고찰로 수원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원자혜의원은 경기도 도청소재지에 설립된 최초의 관립의료기관으로 처음 개원한 화령전은 매우 협소한 임시 공간이었으나, 화성행궁으로의 이전 이후 시설과 설비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근대 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하였으며, 도립의원 전환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그 외형과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대, 분화되었다. 식민지 정착을 위한 시혜적 치료를 중시하여, 공민환자를 무료로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수원자혜의원은 1912년 이후 순회진료를 통해 경기도 각 지역으로 무료진료를 시행하였다. 수원자혜의원 의료활동 범위는 순회진료 지역으로 알 수 있으며, 경기도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수원의원은 질병 치료 외에도 1914년부터 1920년까지 간호부 양성, 순회진료를 하면서 일반인 위생계몽, 언론에 위생 관련 내용 게재 등을 통해 의료인 양성 및 의료지식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경기도 방역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하였고, 수원자혜의원 및 도립의원 산하 개성, 이천, 안성출장소가 설립되어 이들 출장소로 의료진을 파견하며 관리하였으며, 이들 출장소는 각각 독립도립의원으로 승격되어 활동하였다. 따라서 수원의원은 개성, 안성, 이천도립의원의 모태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수원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료 환자의 수와 순회진료의 횟수가 감소하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다수의 조선인 대상이 아닌 일본인을 위한 의료시설로서의 기능이 커지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수원의원은 경기도 지역 특히 수원의 공공의료기관의 첫 시발점이었으며 지속적인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혜의원 시기에는 서구 근대의료기관의 설립과 벽지 순회진료, 시료환자의 무료진료 등 시혜를 중심으로 한 의료활동을 통해 조선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였으며, 1920년 이후 특히 도립의원 시기를 거치면서 세계 공황으로 인한 일제의 재정 악화, 일제의 정복 전쟁으로의 정책 변경, 순회진료의 횟수 축소, 시료환자 수의 감소, 조선인들의 경제 상황 악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차별적 처우 등의 이유로 조선인들은 의료혜택에서 더욱 소외되는 모순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수원이라는 공간에 일제강점기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혜의원과 도립의원의 운영 주체와 치료 대상에 대해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립의원으로 전환 이후 조선인 환자에 대한 처우, 조선인 직원의 활동과 처우, 조선인 직원의 퇴임 후 경기도 지역에서의 의료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일제강점기 수원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2년 9월 1일 심사일 2022년 9월 29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1일

## 참고문헌

### 〈자료〉

『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 『朝鮮道立醫院概況』, 1930; 조선총독부, 『朝鮮道立醫院要覽』, 1936~1941; 三木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936;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 〈연구논저〉

- 기창덕, 「평양에서의 의학교육」, 『의사학』 2-2, 1993.
- 김백영, 「일제하 식민지도시 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2012.
- 김영수, 「근대의사제도와 대전지역의 의료」, 『의료사회사연구』 8, 2021.
-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1, 2009.
- 박인순, 「일제통치기 제주자혜의원(~전라남도립제주의원) 일고」, 『제주도연구』 46, 2016.
- 박찬승·김민석·최은진·양지혜,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민속원, 2018.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下-활기찬 수원』, 경기출판사, 1997.
-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Ⅱ』, 경기출판사, 2002.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도서출판 한울, 1997.
- 이꽃매, 「한국근대간호사」, 도서출판 한울, 2002.
- 이방원, 「일제시기 도립의원의 설립과 운영(1925-1945)」, 『이화사학연구』 23, 2021.
- 이방원, 「사이토 총독 시기 신설 도립의원에 관한 지정학적 고찰」, 『대한의사학』 31-2, 2022.
- 장민숙, 「1910년대 광주자혜의원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20.
- 장필구·전봉희,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2, 2012.
- 전봉희·주상훈·장필구·김수범,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Ⅳ』, 국가기록원, 2010.
- 주상훈, 「1910년대 자혜의원 계획도면에서의 병실 유형과 온돌병실의 특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7-4, 2021.
- 한동민, 「근대 수원지역의 공공의료기관-관립수원자혜의원에서 도립수원의원까지」, 『경기사학』 8, 2004.

## 요 약

본 연구는 수원 지역에 1910년 9월 5일 개원한 자혜의원과 이를 승계하여 1925년 4월 1일 전환된 도립의원에 관한 고찰로 수원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자혜의원 및 도립의원의 관련 관제 및 규정, 『경기도립수원의원25년사』(1936), 『조선도립의원개황』(1930), 『조선도립의원요람』(1937~1941), 주요 신문 등의 사료를 활용하였다.

수원자혜의원은 경기도 도청소재지에 설립된 최초의 관립의료기관으로 처음 개원한 화령전은 매우 협소한 임시 공간이었다. 그러나 화성행궁으로의 이전 이후 시설과 설비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근대 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하였으며, 도립의원 전환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그 외형과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대, 분화되었다. 식민지 정착을 위한 시혜적 치료를 중시하여, 궁민환자를 무료로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수원자혜의원은 1912년 이후 순회진료를 통해 경기도 각 지역으로 무료진료를 시행하였다. 수원의원은 질병 치료 외에도 1914년부터 1920년경까지 간호부 양성, 순회진료를 하면서 일반인 위생계몽, 언론에 위생 관련 내용 게재 등을 통해 의료인 양성 및 의료지식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경기도 방역활동의 중추로서, 그리고 경기도 개성, 이천, 안성에 설립된 수원의원출장소로 의료진을 파견하며 관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원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료 환자의 수와 순회진료의 횟수가 감소하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다수의 조선인 대상이 아닌 일본인을 위한 의료시설로서의 기능이 커지게 되었다. 자혜의원 시기에는 서구 근대 의료기관의 설립과 시혜 중심의 의료 활동을 통해 조선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였으며, 1920년 이후 특히 도립의원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차별적 처우로 의료혜택에서 더욱 소외되는 모순을 갖게 되었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수원, 공공의료기관, 자혜의원, 도립의원

## ABSTRACT

### Establishment and role of a public medical institution in Suw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Bang-We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ature and meaning of a public medical institution in Suwon by examining the Jahye hospital, which was opened on September 5, 1910, and the provincial hospital, which succeeded Jahye hospital and was converted to on April 1, 1925 in Suwon. This study used, Laws and Regulations for Jahye Hospital and Provincial Hospital, 『25 years of history of Suwon hospital of the Gyeonggi-do(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1936), 『Overview of the Joseon Provincial Hospital(朝鮮道立醫院概況』(1930), 『booklet of the Joseon Provincial Hospital(朝鮮道立醫院要覽』(1937~1941), major newspapers and etc. as a historical materials.

Suwon Jahye hospital is the first government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ed in capital of Gyeonggi-do and newly opened Hwaryeongjeon(華寧殿) was a small temporary space. However, after the replacement to Hwaseong Temporary Palace, it developed to modern medical institution with the completion of facility equipment. After transition to provincial hospital, its look and space continuously expanded and was divided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Japan cared about charity like treatment and built Suwon Jahye hospital with the purpose of freely curing poor patients. And after 1912, Suwon Jahye hospital implemented free traveling clinic over Gyeonggi-do. In addition to disease treatment, Suwon Clinic also played a role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train medical personnel and expand medical knowledge through public hygiene enlightenment and publication of hygiene-related information in the media from 1914 to 1920. On top of that,

they dispatched medical staffs and managed Suwon's original offices established in Kaesong, Icheon, and Anseong, Gyeonggi-do as the backbone of quarantine activities.

As described above, Suwon Medical Center is meaningful as a public medical institution, but in the 1920s, the number of charge-free patients and the number of traveling treatment decreased, increasing its function as a medical facility for Japanese, not the majority of Koreans who were economically struggling at the time. During the period of Jahye hospital, Joseon's colonization was justifi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Western modern medical institutions and beneficial medical activities, and after 1920, Koreans became more alienated from medical benefits due to economic reasons and ethnic discrimination as Koreans.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Suwon, public medical institution, Jahye Hospital(慈惠醫院), Provincial Hospital(道立醫院)

## 수원자혜의원의 신축공사와 화성행궁의 공간 변천

최지혜\*

1. 머리말
2. 수원자혜의원의 설립
3. 전통 공간에서 근대 공간으로
4. 화성행궁의 철거와 자혜의원 신축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에 처음 도입된 근대 의료시설은 19세기 말 개항장에 설립된 외국인병원과 선교병원이었다. 조선에서 정부의 주도로 도입한 최초의 서양식 의료시설은 1885년에 설립된 제중원(濟衆院)이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의 주도 아래 1907년에 설립된 대한의원(大韓醫院)을 시작으로 기존의 서양식 의료시설을 통합하였다. 일제는 1909년부터 전국 각지에 자혜의원(慈惠醫院)을 설치하였다. 이때 설치된 수원자혜의원은 1910년 9월 5일 화령전(華寧殿)<sup>1</sup>에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화성행궁으로 이전하여 해방 이후까지 수원의 근대 의료시설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Doctor of Architecture at Hanyang University), E-mail : jijaewoman@naver.com, Tel : 010-4246-8393

<sup>1</sup> 정조의 어진(御眞)을 모셨던 곳으로 1801년(순조 원년)에 건립되었다. 화령전은 화성행궁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자혜의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필구·전봉희의 연구<sup>2</sup>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원의 화성행궁과 평양의 풍경궁에 자혜의원이 설치되어 기존의 전통건축이 병원이라는 시설에 맞춰 개조되는 과정을 비교 연구한 것으로 한옥의 개조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원자혜의원이 1923년 본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궁의 철거와 공간의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한동민의 연구<sup>3</sup>는 수원자혜의원이 독립수원의원으로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정확한 명칭 변화에 대한 연혁을 밝히고 지역의료사적 의미로서 수원자혜의원을 다루고 있으며 건축적 변화나 도면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자혜의원이 설립된 이후 전통공간을 근대적 의료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건축적·공간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초기에는 전통건물인 화성행궁을 개조하여 사용하다 1923년에 신본관 건립과 함께 행궁의 대규모 철거가 일어났는데 이 과정을 당시의 도면분석을 통해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 2. 수원자혜의원의 설립

1909년 8월 21일 통감부는 칙령 제75호 ‘자혜의원관제(慈惠醫院官制)’와 같은 해 8월 30일 법률 제25호 ‘자혜의원특별회계법(慈惠醫院特別會計法)’을 공포하였다. 이후 1909년 12월부터 전국 각 도(道)의 행정 중심기관인 관찰부(觀察府)<sup>4</sup>가 있는 지역에 자혜의원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전라북도 전주와 충청북도 청주를 시작으로 1910년 1월에는 함경남도 함흥, 1910년 9월에는 공주, 광주, 함경북도 경성(鏡城), 대구, 수원, 의주, 진주, 춘천, 평양, 해주에 모두 설치되어 13개 도의 관찰부 소재지에 모두 설립되었다. 이후에도 자혜의원이 전국 주요 지역에 지속해서 설립되었다.<sup>5</sup>

2 장필구·전봉희, 2012,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12).  
 3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官立水原慈惠醫院에서 道立水原醫院까지-」, 『경기사학』 8.  
 4 각 도(道)의 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중심기관으로 조선시대에는 감영(監營)이라고 했으며 1896년 지방제도 개편 때는 관찰부(觀察府), 일제강점기부터는 도청(道廳)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5 주상훈·전봉희, 2011,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12), 239~240쪽.

자혜의원의 설립은 글자 그대로 “모두 민생을 고홀(顧恤)하는 자혜에서 나온 것”으로 시혜적인 목적을 명목상 내세우면서 일본의 근대적인 지배의 틀을 마련하고 조선인의 반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sup>6</sup>

〈표〉 1909~1910년 지방 자혜의원 설치지역과 연도

연번	의료 시설명	설치연도	연번	의료 시설명	설치연도
1	전주자혜의원	1909.12.	8	수원자혜의원	1910.09.
2	청주자혜의원	1909.12.	9	의주자혜의원	1910.09.
3	함흥자혜의원	1910.01.	10	진주자혜의원	1910.09.
4	공주자혜의원	1910.09.	11	춘천자혜의원	1910.09.
5	광주자혜의원	1910.09.	12	평양자혜의원	1910.09.
6	경성(鏡城)자혜의원	1910.09.	13	해주자혜의원	1910.09.
7	대구자혜의원	19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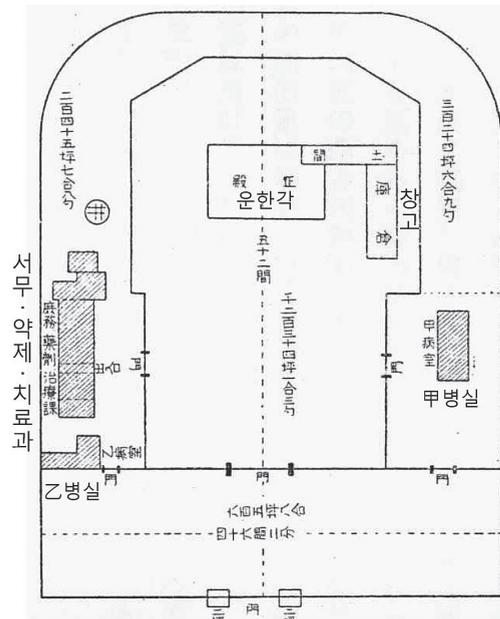
수원은 1896년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경기도 관찰부가 화성행궁에 설치되었다. 조선의 행정구역이 기존의 8도제에서 13도제<sup>7</sup>로 바뀌었으며 수원은 관찰부 소재지로 지위가 높아졌다. 수원자혜의원은 1909년에 설립이 결정되었고, 1910년 9월 5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수원자혜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1910년 9월 4일에 공포한 경기도고시(京畿道告示)에서 ‘관립자혜의원 환자치료 내칙(官立慈惠醫院患者治療內則)’에서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원자혜의원은 화령전에 설치한다는 것, 환자치료는 수가(收價)와 시료(施療) 환자의 치료로 구별한다는 것, 헌병대와 수비대의 진단 치료(診斷治療)를 보조한다는 내용 외 진료시간, 외래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 각 진료비와 수술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궁핍한 경우 진료비를 면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조선인들의 일제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자 하였다.<sup>8</sup>

6 박윤재, 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27쪽.  
 7 조선시대에는 지방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의 8개 도(道)로 나누었다. 1896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어 13개의 도로 재편하였다.  
 8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官立水原慈惠醫院에서 道立水原醫院까지-」, 『경기사학』 8, 505~506쪽.

수원자혜의원의 초기 병원으로 활용했던 건물은 화령전이었다. 순조(純祖, 1800~1834)가 즉위하고 난 후인 1801년, 화성행궁 북동쪽에 정조의 어진이 봉안된 화령전이 건립되었다. 어진이 봉안된 정전(正殿)을 운한각(雲漢閣)이라고 명명하였고, 순조가 직접 쓴 편액이 걸렸다. 이후 화령전은 모든 국왕이 참배하는 곳이 되었다. 화령전의 건물 구성을 살펴보면 외삼문-내삼문-운한각이 한 축으로 이어지고, 운한각 좌측으로 복도각, 이안청이 있다. 풍화당(風化堂)은 운한각의 좌측 담 밖에 재실 공간으로 화령전에 제향(祭享)이 있을 때 헌관이 머무르는 장소였다.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 일제에 의해 정조의 어진은 1908년 9월에 덕수궁 선원전(璿源殿)으로 이안(移安)되었다. 이후 1909년 전국에 자혜의원 설치 결정되고 수원에는 1910년 9월 5일 화령전에 병원을 개설하였다. 정조의 어진이 이안되어 화령전이 비어 있다는 점과 규모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되었다. 병원으로 사용한 건물은 화령전의 부속 건물인 풍화당과 전사청(典祀廳) 등 3개 동의 건물이었다. 서무·약제·치료과로 사용한 건물은 건평 61평, 갑(甲)병실 20평, 을(乙)병실 11평으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sup>9</sup>



〈그림 1〉 화령전을 전용한 수원자혜의원 (三木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1936, 4쪽) 빗금 친 부분이 사용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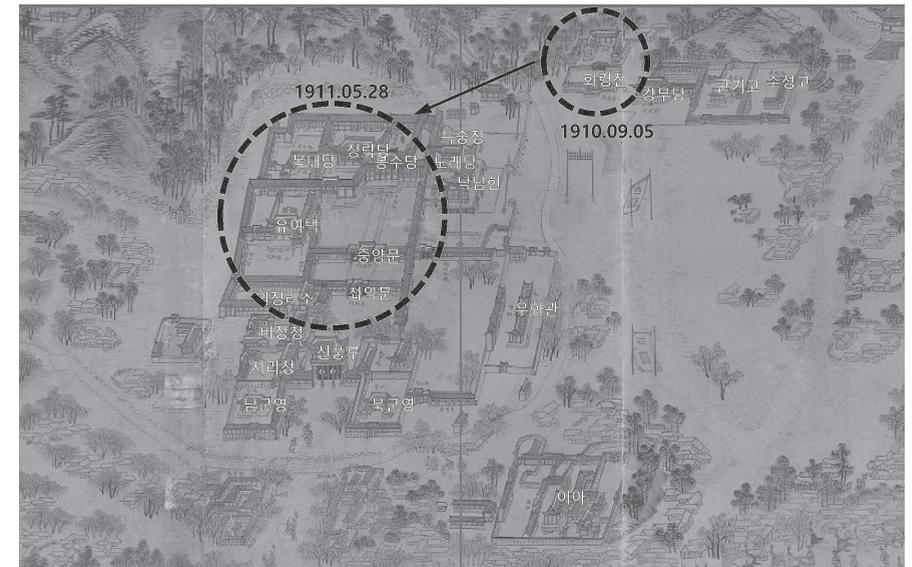
9 한동민, 2007,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277~284쪽.

### 3. 전통 공간에서 근대 공간으로

일본은 일제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를 공포하여 지방행정을 개편하였다.<sup>10</sup> 1910년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6호 ‘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공포하여 경기도청을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sup>11</sup>

화성행궁이 비자 노천진료를 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했던 수원자혜의원은 화성행궁으로 이전하였다. 행궁을 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개조하였고 1911년 5월 28일에 화령전에서 화성행궁으로 이전하였다.<sup>12</sup>

본장에서는 전통적인 공간이었던 화성행궁이 근대식 병원이라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간이 변화했는지와 일제에 의해 화성행궁이 어떤 과정으로 훼손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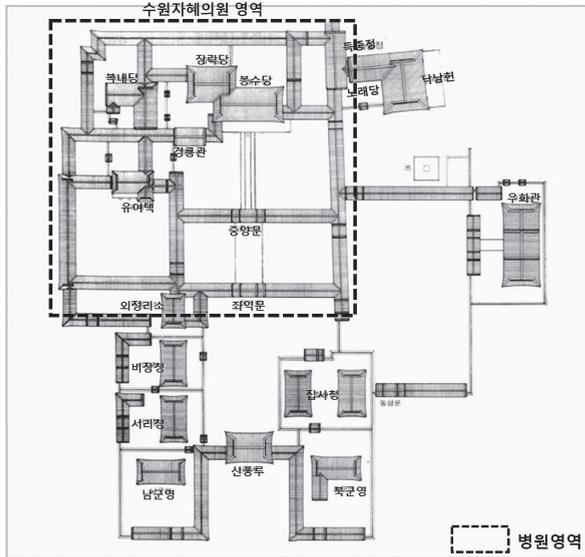
〈그림 2〉 화성도병(華城圖屏)(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0 『官報』 1910년 9월 30일.

11 『官報』 1910년 10월 1일.

12 한동민, 2007,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301~303쪽.

### 1) 한국 전통 공간의 배치원리와 화성행궁



〈그림 3〉 화성행궁 건물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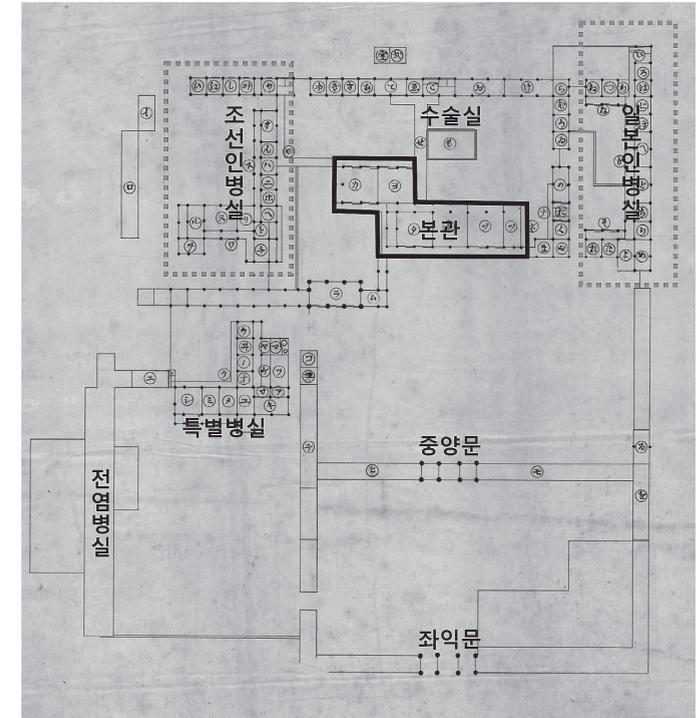
한국 전통 공간의 배치원리는 문당제(門堂制)로 불리는 원리에 따라 공간이 구성된다. 문(門)과 당(堂)이 분립 또는 병존하여 당을 중심으로 한 중정을 조성하면서 문으로 경계를 지어 밀폐되면서 외부공간을 만들어 내는 공간 구성 방식이다.<sup>13</sup> 화성행궁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 문→중정→건물로 진입하는 방

식이다. 삼문(三門)인 신평루(新豐樓)→좌익문(左翊門)→중양문(中陽門)을 지나 중정을 지나면 정전인 봉수당(奉壽堂)에 이른다. 봉수당은 화성행궁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로 1789년에 건립되었다. 봉수당과 지붕을 걸쳐 지은 장락당(長樂堂)은 1794년에 완공하였고, 1795년 을묘원행(乙卯園幸) 중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하였다.<sup>14</sup> 수원자혜의원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봉수당과 장락당 건물은 병원 본관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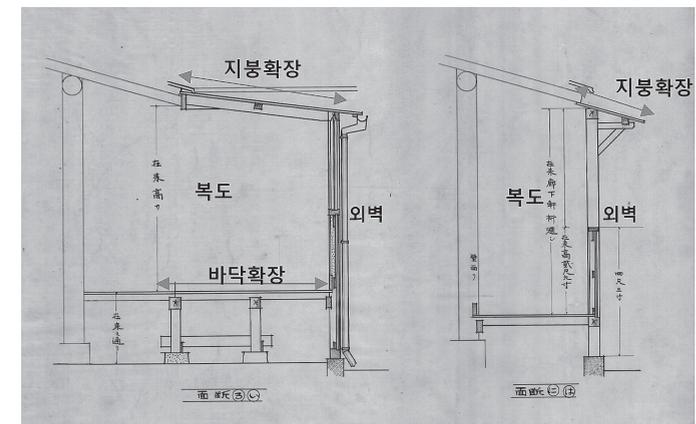
13 장필구·전봉희, 2012, 『풍경공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12), 241쪽.

14 '장락당' 수원화성소개,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p=59&listGubun=list&page=1&viewMode=view&idx=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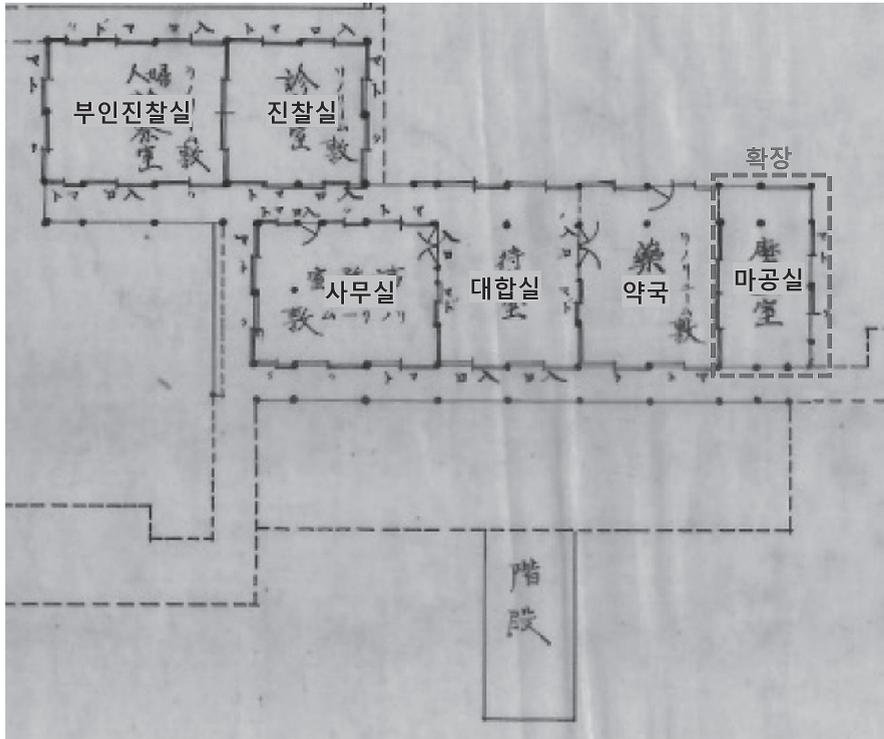
### 2) 수원자혜의원 설립과 화성행궁의 공간 변화



〈그림 4〉 1910년대 초(추정) 수원자혜의원 건물배치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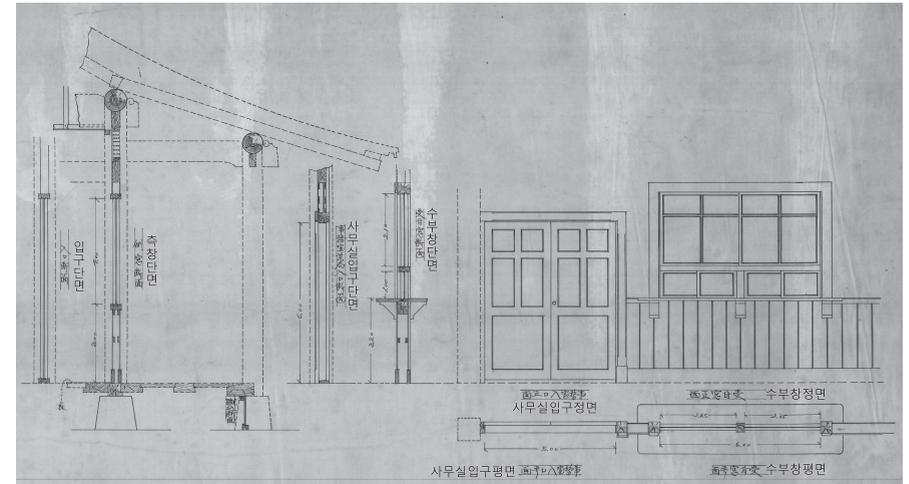
〈그림 5〉 수원자혜의원 바닥과 복도 확장 단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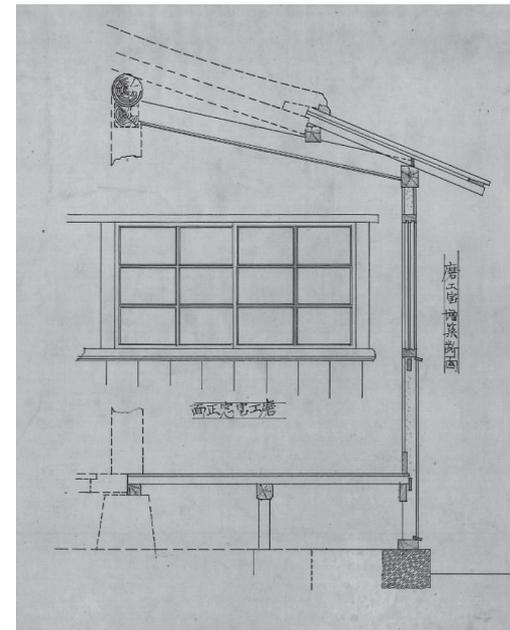
〈그림 6〉 수원자혜의원 수선공사도 본관 배치도(국가기록원 소장)

수원자혜의원의 설립 이후 병원시설로 개조하기 위한 변화가 생겼다. 먼저 본관을 중심으로 뒤편에 수술실 건물을 증축하였다. 복내당(福內堂) 영역은 조선인 병실, 득중정(得中亭) 영역은 일본인 병실로 개조하였다. 그 외에도 유여택(維與宅) 영역은 특별병실로 바뀌었고 그 옆에 전염병실도 따로 두어 공간을 분리하였다. 병원은 건물과 건물 사이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랑과 뒤틀마루를 개조하여 실내 복도로 만들었다. 1910년대 초의 병원 본관 평면도에서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그림 6〉) 건물 정면 중앙에 대합실(待合室)이 있고 좌측에는 사무실과 우측에 약국, 마공실(磨工室)<sup>15</sup>이 있다. 봉수당과 연결되어 있는 장락당 건물은 부인진찰실과

15 현재 마공실(磨工室)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 의미나 용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高岡真美의 연구(2012, 「文献にみる砥石—医療器械の研磨に使用された砥石—」, 『日本医史学雑誌』 第58巻 第1号)내용에서 미루어보면 의료기기를 연마 및 수리하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수원자혜의원 수선공사도 본관 단면도, 사무실·수부창 단면·정면·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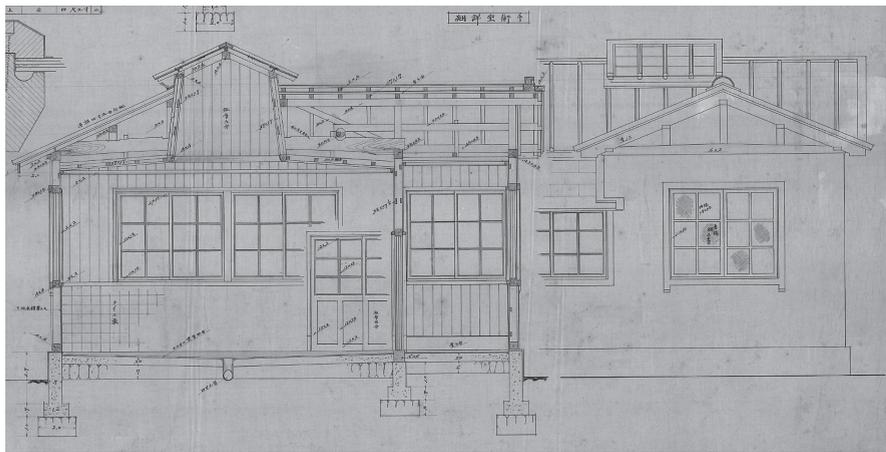
〈그림 8〉 마공실 단면도(국가기록원 소장)

진찰실로 개조하였다. 건물의 단면도를 보면(〈그림 5〉 및 〈그림 7〉), 뒤틀마루의 바닥을 확장하고 외벽을 설치하여 내부 복도로 만들었다.

뒤틀간을 편복도로 개조한 경우는 일제 초기 전통건물을 활용한 사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뒤틀간은 건물 한쪽 면 전체에 골고루 있어 편복도로 개조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장락당과 봉수당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중복도로 변형되었다. 본관의 마공실은 기존 건물을 확장한 것으로 단면도(〈그림 8〉)를 보면 바닥과 지붕을 확

장시킴과 일본식 목구조의 외벽을 설치하여 복도 공간을 확보하였다. 전통적으로 중정을 통해 각 건물의 전면 출입방식은 건물의 현관으로 출입하고, 실내 복도로 각 건물을 모두 연결해 동선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공간 구성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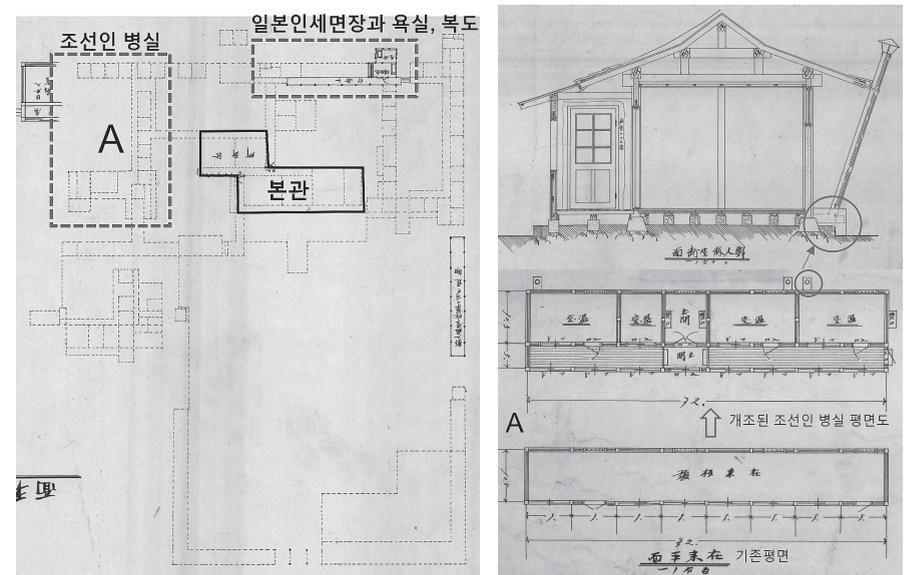
본관 뒤에 있는 수술실은 일본식 단층 목구조로 신축하여 복도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일제 초기에 주로 관립건축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으로 전통건물에 일본식 목구조로 확장 및 증축을 하여 전통건축과 일본식 외관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림 9〉 수원자혜의원 증축공사설계도의 수술실 상세도면(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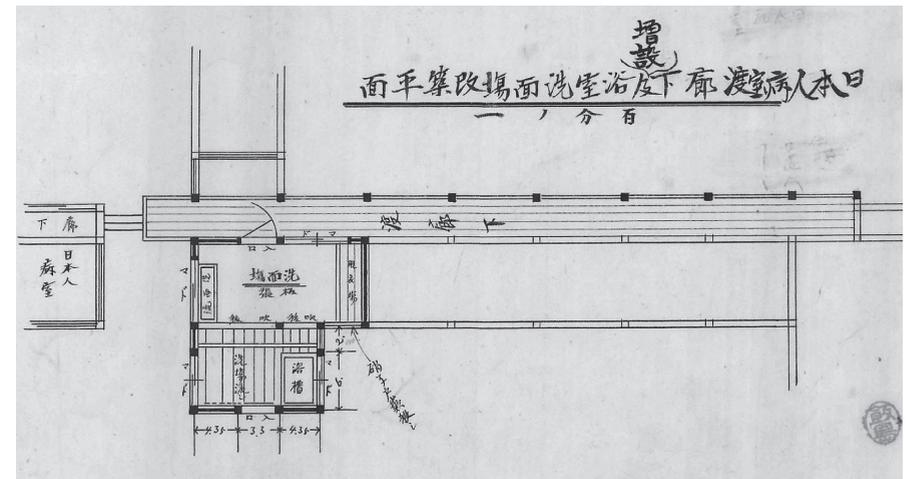
병실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인 병실과 조선인 병실로 구분하였다. 병실은 기존 건물을 부분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일제 초기 대부분의 자혜의원이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병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우 기존에 온돌이 있던 건물은 온돌 병실로 사용하였고, 온돌이 없었던 건물에는 다다미를 깔 병실로 개조하여 일본인 병실로 사용하였다.<sup>16</sup> 수원자혜의원의 조선인 병실 개축 평면도(〈그림 11〉)를 보면 4개의 온돌 병실에 아궁이가 3개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지붕과 바닥을 확장하여 편복도를 설치하였다. 일본인 병실 영역을 보면 세면장과 욕실개조는 일본인 병실 복도 끝에 위치하였으며 세면장과 욕조가 있는 욕실을 두어

16 주상훈, 2021, 「1910년대 자혜의원 계획도면에서의 병실 유형과 온돌병실의 특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4), 177쪽.



〈그림 10〉 수원자혜의원 조선인 병실 개축공사도 (1919~1922년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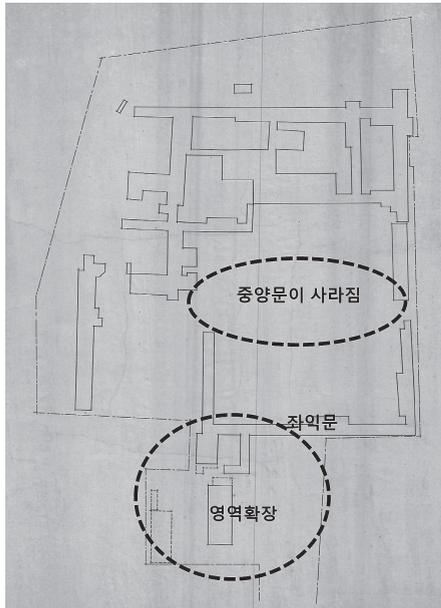
〈그림 11〉 수원자혜의원 조선인 병실 개축 평면도 (1919~1922년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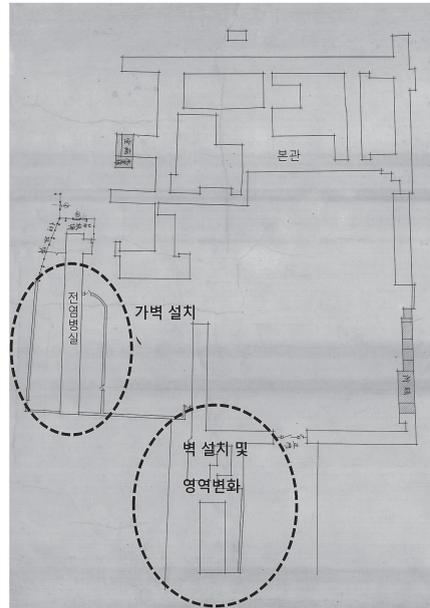
〈그림 12〉 일본인 세면장, 욕실, 복도 개조 평면도(1919~1922년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일본식 화장실로 개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자혜의원은 지속해서 건물 배치가 바뀌는데 1919년에는 삼문 중에서 본관인 봉수당과 가장 가까운 중앙문을 철거하고 본관 앞에 넓은 중정을 확보하였다.



〈그림 13〉 수원자혜의원수선공사건물배치도 (1919년,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14〉 수원자혜의원병실기타공사배치도 (1921년, 국가기록원 소장)

그리고 좌익문 앞에 병원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영역을 더 확장하였다(〈그림 13〉). 1921년 병원 배치도를 보면 전염병실 주변으로 벽을 둘러 격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염병실은 개원 초부터 병원에서 가장 남쪽에 있다. 이는 전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남쪽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좌익문 앞에 추가로 설치된 시설에는 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건물이 병원 영역에서 사라져 영역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이후 수원자혜의원은 1923년 본관과 병실 및 기타 시설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행궁 건물은 일부 몇 동만 남긴 채 대부분 철거하였다.

일제 초기 수원자혜의원이 화성행궁을 개조하면서 생긴 공간적 변화양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09년 전국 주요지역에 자혜의원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수원자혜의원은 1910년 9월 5일 화령전에 처음 영업을 개시하였다. 일제강점 직후 경기도 관찰부가 경기도로 이전하여 화성행궁이 비워지자 수원자혜의원이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병원의 용도에 맞게 개조 후 1911년 5월 28일에 이전하였다. 병원

본관은 봉수당과 장락당 건물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뒷간의 바닥을 확장하고 외벽을 설치하여 실내 복도로 만들었고, 모든 건물이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회랑과 뒷간을 이용한 복도 개조공사를 하였다. 또 일제 초기 대부분의 관영 건축물에서 나타나듯이 전통건물에 일본식 목구조로 증축을 한 한·일 결합형태의 외관이 수원자혜의원에도 나타났다. 본관 뒤편에 수술실을 단층의 일본 목구조 건물로 신축하여 복도로 연결하였고 병실을 조선인·일본인·특별·전염병실로 구분하였다. 조선인 병실의 경우 온돌 병실로, 일본인 병실은 다다미로 개조하였다. 일제초기 무료환자의 대부분이 조선인 환자였고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여 병실을 나누는 것은 식민지적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주거문화에 맞게 온돌과 다다미 병실로 개조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919년에는 중앙문이 철거되면서 본관 앞에 중정을 확장하였고, 좌익문 앞에 일부 시설을 확충하면서 병원 영역이 확장되었다. 1921년에는 전염병실 주변으로 벽을 둘러 격리시설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좌익문 앞에 건물의 증·개축 및 영역 확장으로 변화가 생겼다. 이처럼 수원자혜의원은 초기부터 건물을 개조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건물의 증·개축과 철거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1923년 본관 및 기타 시설이 신축되면서 행궁의 철거 및 공간적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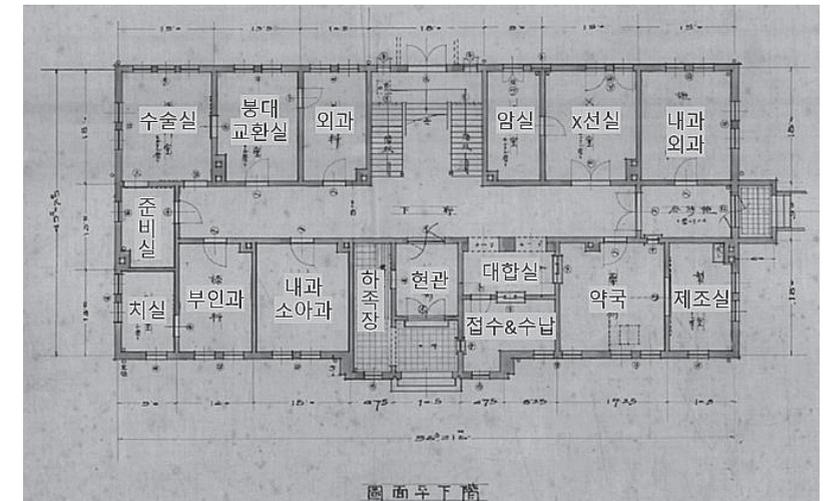
#### 4. 화성행궁의 철거와 자혜의원 본관 신축

1923년 5월 수원자혜의원은 본관 및 기타 시설을 신축하였다. 병원 전체 3,715평에 총공사비 7만 8,000여 원이 들었다. 신축 본관은 좌익문 자리에 2개 층의 벽돌조 건물로 세워졌다. 전체적으로 763평이 신축되었고, 일부 기존 건물을 개조하였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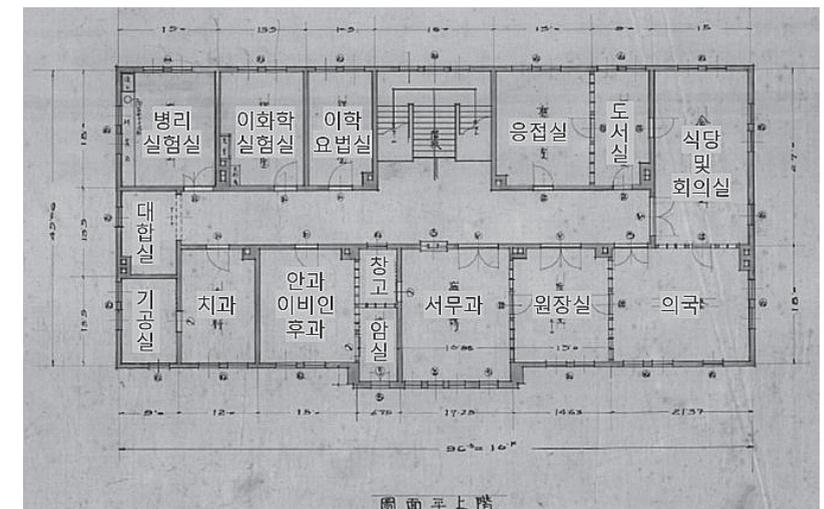
17 『京城日報』 1924년 8월 26일.



〈그림 15〉 수원자혜의원부지 배치도(1923년, 국가기록원 소장, 필자가 재편집)



〈그림 16〉 신축 본관 1층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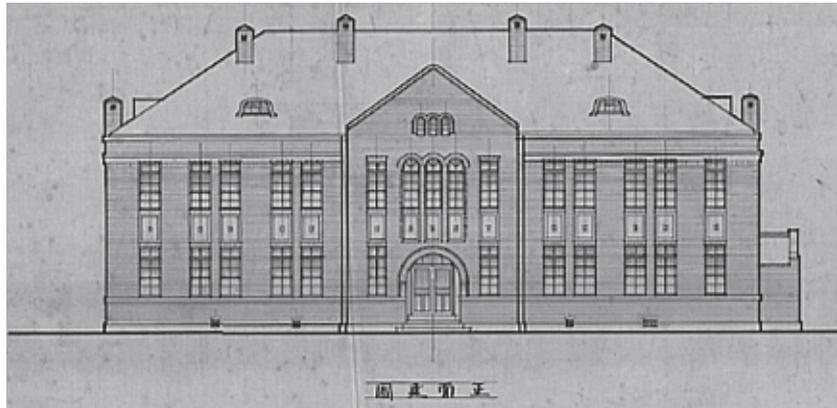
〈그림 17〉 신축 본관 2층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1) 신축건물 : 본관, 병실, 숙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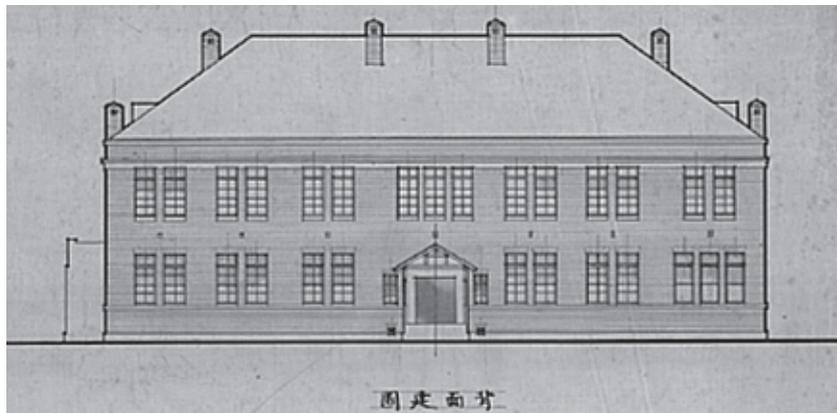
수원자혜의원 본관 신축공사 배치도를 보면 먼저 부지 전면 중앙에 본관 건물을 배치하고, 뒤로 십(十)자 형태의 복도를 두어 건물 간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배치도에서 병원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배치도 중앙에 복도를 중심축으로 한 배치계획은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의 자혜의원 계획에서도 볼 수 있다.<sup>18</sup> 기존의 행궁건물 중에서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되었다.

18 안국진, 2019, 『일제강점기 수원관련건축 훼손과정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8-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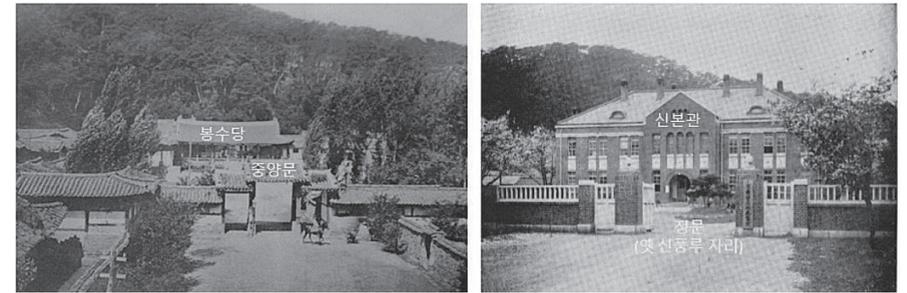
〈그림 18〉 신축 본관 정면도(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19〉 신축 본관 배면도(국가기록원 소장)

건물의 용도도 남쪽 전염병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뀌었다. 신본관 뒤로는 숙직실 건물을 두어 복도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병실 건물로 신축한 건물은 1개 동으로 온돌 병실과 시료 병실 옆에 있다. 기존의 본관 건물로 사용했던 봉수당은 병실로 용도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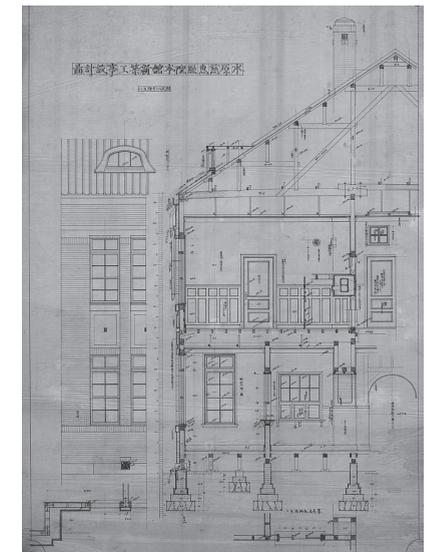
신축 본관은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벽돌조의 건물이다. 구조는 목구조이나 외벽을 벽돌로 마감하였다. 1~2층의 평면도에서 실 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수술실, 붕대교환실, 외과, 암실, X선실, 내과, 부인과, 소아과, 약국, 제조실 등이 있고 입구에는 현관과 그 옆에 하족장(下足長)이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방식인 것을



〈그림 20〉 수원자혜의원 1914년 전경(좌)과 1929년 전경(우)  
 (좌 : 酒井政之助, 1914, 『發展せる水原』, 우 : 朝鮮總督府, 1929, 『生活狀態照査 1-水原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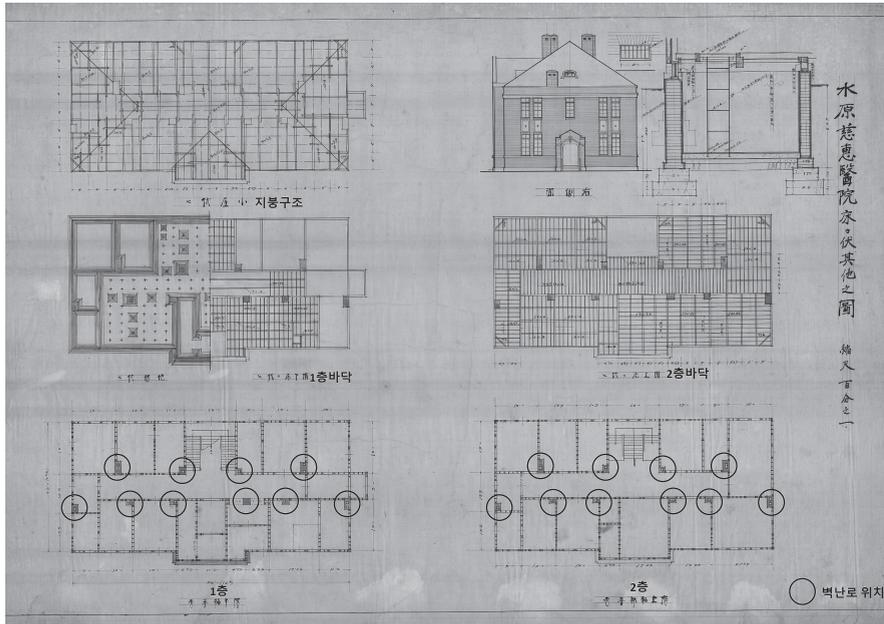
집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자혜의원에서는 볼 수 없는 수원자혜의원만의 독특한 모습이다. 건물 중앙에 계단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병리실험실, 이화학 실험실·요법실, 치과, 안과·이비인후과, 서무과, 원장실, 의국, 응접실, 도서실, 식당 및 회의실 등이 있다. 본관 신축과 함께 정문 설계도 하여 기존의 행궁을 개조한 병원의 모습은 사라지고, 벽돌 외장의 근대식 건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림 21〉에서 본관의 단면도를 보면 지붕은 목조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외장은 벽돌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보기 드문 특이한 사례로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다.<sup>19</sup> 지붕에는 돌출창을 내었고, 지붕위에 굴뚝이 있는데 이는 난방을 위한 벽난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굴뚝은 건물의 정면도(〈그림 18〉)와 배면도(〈그림 19〉)를 보면 지붕 곳곳에 솟아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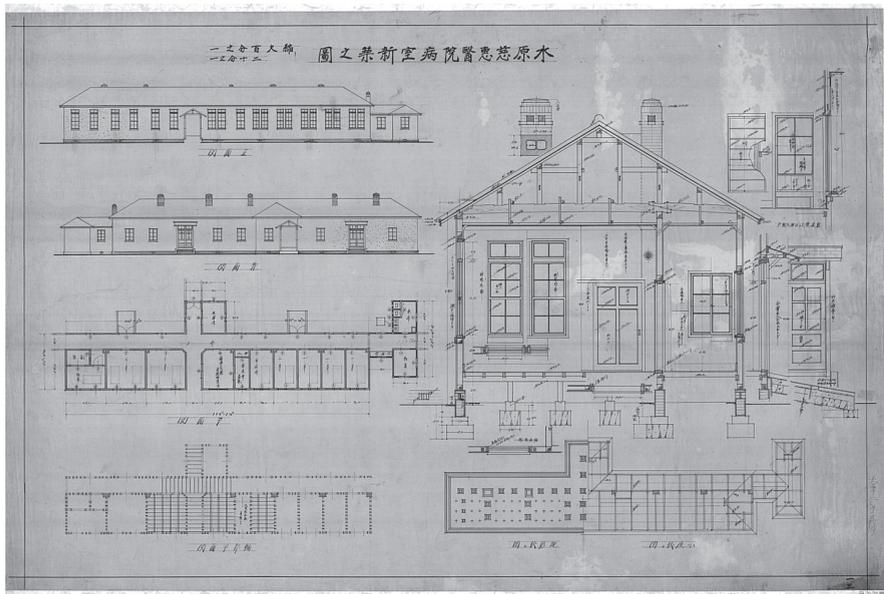


〈그림 21〉 수원자혜의원본관신축공사설계도 (1923년, 국가기록원 소장)

19 '수원자혜의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https://theme.archives.go.kr/next/place/viewMain.do>).



〈그림 22〉 수원지혜의원 구조, 바닥 기타도면(1923년,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3〉 신축 병실 설계도(1923년,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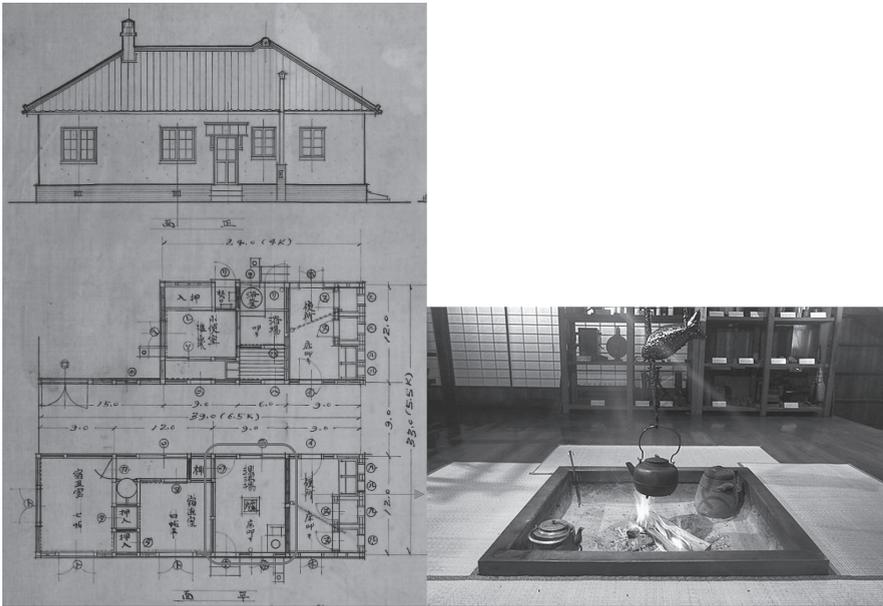
〈그림 20〉에서 1929년의 병원 전경을 보면 정면 입구와 중앙에 돌출된 부분의 창문은 원형아치로 꾸몄고, 상부는 박공으로 장식하였다.

수원지혜의원의 신축 본관에서는 다른 자혜의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으로는 출입구에 하족장을 두어 신발을 벗는 공간이 있다는 점과 구조는 목구조이나 외장을 벽돌로 마감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본관 신축 이전에는 일본인·조선인·특별·전염 병실로 나뉘었으나 공사 이후에는 병실·온돌 병실·시료 병실·전염병실로 나누었다. 먼저 신축 병실 건물을 살펴보면 단층의 일본식 목구조 건물로 지었으며 주로 1인실 또는 2인실의 침대가 있는 병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 뒤에 십(十)자 복도에서 북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에 있다.

신축 병실의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고, 복도 맨 끝에 화장실을 두었다. 난방은 본관과 마찬가지로 지붕에 굴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벽난로를 통해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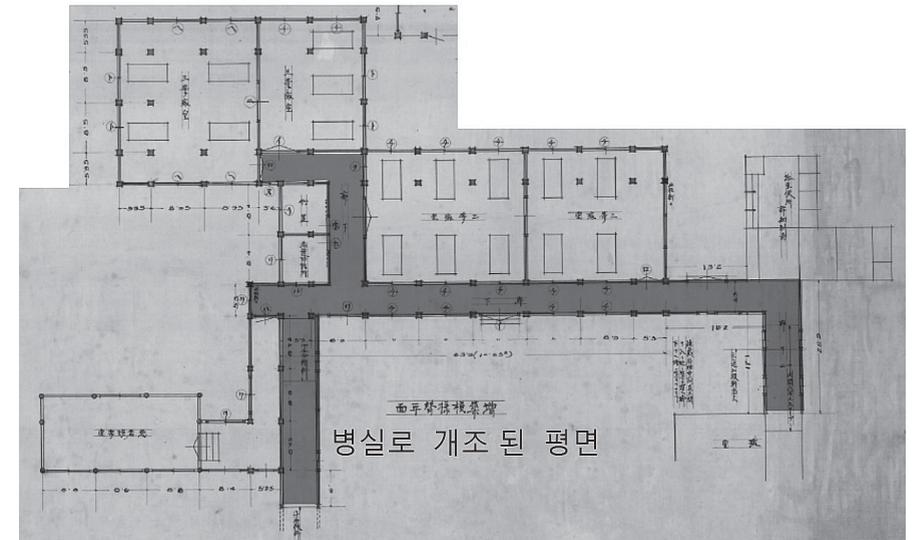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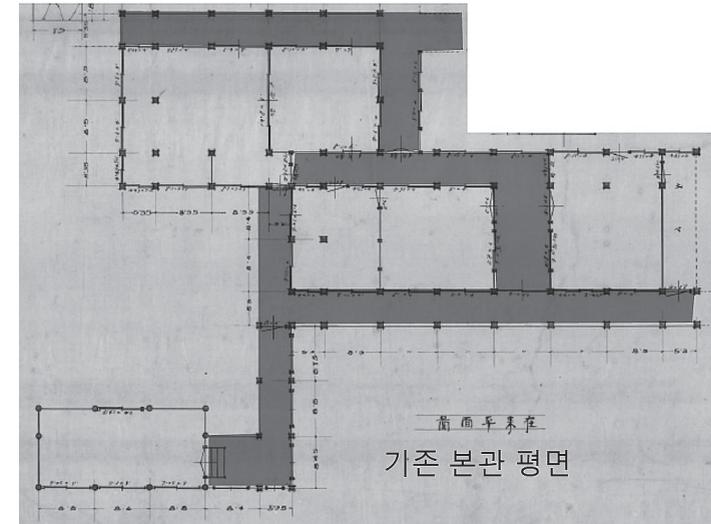
십(十)자형 복도 중앙에 있는 숙직실 건물을 보면 소사실(小室)과 숙직실(宿直室)로 나뉜다. 소사실은 온돌방이고 숙직실은 다다미방인 것으로 보아 소사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조선인이고 숙직실은 일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공간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운데 복도를 두고 한쪽으로는 일본식 변소와 욕실 옆에 온돌방의 소사실이 있고 반대편에는 두 개의 다다미방이 각 7조(七帖)와 4조반(四帖半)의 크기로 있고, 그 옆에는 이로리(일본어: 囲炉裏)로 추정되는 것이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4〉). 그 옆에는 변소가 있는 화장실이 있다. 숙직실 건물의 이로리는 일제 초기 관영시설의 숙직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수원에 수도지방법원이 일제 초 강무당(講武堂)에 설치되었을 때도 숙직실로 신축한 건물에서 이로리로 보이는 것이 방 중앙에 있고 그 옆에는 다다미로 된 방이 있었다. 일본인의 주거문화가 유입되어 관영시설에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4〉 숙직실 건물 평면(좌)과 이로리(우) 예시사진(좌 : 국가기록원 소장, 우 : '이로리' 위키피디아)

## 2) 기존 건물의 변화

본관 건물로 사용했던 봉수당과 장락당은 3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의 병실로 구성된 일반병실 건물로 개조되었다. 기존 본관의 복도를 최소한으로 하여 병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복도 끝에는 화장실을 증축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 뒤편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수술실 건물과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수술실이 신축 본관에 생기면서 기존의 수술실 건물은 헐렸다. 기둥의 위치는 거의 그대로이나 벽을 설치하거나 헐어서 각 실의 크기를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원래는 봉수당을 헐고 그 자리에 본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봉수당은 헐리지 않았고 일반병실로 개조되었으며, 신축 본관은 좌익문 부근에 건립되었다. 화성행궁의 정전이었던 봉수당은 수원자혜의원의 본관에서 일반병실로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그림 25〉 본관에서 병실로 개조된 봉수당과 장락당 개조 전후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시료 병실은 이름 그대로 빈민 환자의 입원을 위한 병실이었다. 본래 자혜의원의 설립 취지가 빈곤한 조선인들을 진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빈곤하지 않은 환자도 무료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자 재정문제에 부딪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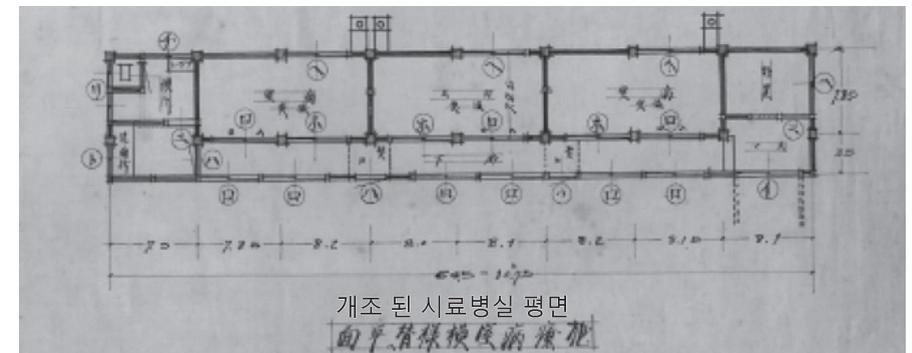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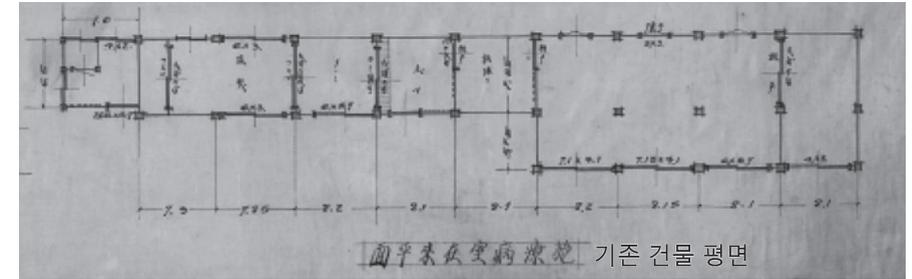
밖에 없었고, 시료 환자에 대한 규정을 점차 강화했고 점차 자혜위원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시혜적인 기능이 축소되어 갔다. 함경북도 나남(羅南)에 있는 자혜위원의 경우 1920년에 병원을 신축하면서 시료 병실을 병원부지 밖에 별도로 설치하여 시료부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갔다.<sup>20</sup> 이러한 흐름이 수원자혜위원에도 반영이 되어 시료 환자를 위한 병실을 맨 끝에 설치하였고, 중앙의 십(十)자 복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관에서 따로 이어지는 복도를 통해서 연결하였다. 시료 병실은 자혜위원 북동쪽 끝에 위치하여 원래 취사장(賄所)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었다. 이곳을 3개의 병실을 만들고 편복도를 설치하였다. 시료 병실의 이용자는 주로 조선인들이었기에 온돌로 개조하여 환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복도 끝에는 변소를 두었고 반대편 끝에는 업무공간으로 보이는 실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온돌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수원자혜위원은 1923년 이전에는 시료 병실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주로 시료 환자가 조선인이었기에 조선인 병실을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23년 본관 신축과 함께 병원 전체 배치계획에서 병원부지 안쪽에 배치되었던 조선인 병실은 온돌 병실과 시료 병실로 바뀌어 병원부지의 외곽으로 옮겨졌다. 온돌 병실은 시료 병실 옆에 위치하고, 신축 병실 건물 뒤편에 있다. 기존의 행궁 건물을 개조하여 온돌 병실로 만들었다. 온돌 병실은 이름 그대로 온돌을 난방 방식으로 한 병실로 큰 병실 3실, 작은 병실 1실, 업무공간 1실로 되어있다. 병실 각각에 아궁이를 설치했고, 복도를 통해 각각의 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복도 양 끝에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26〉, 〈그림 27〉). 정리해 보면 기존의 조선인 병실을 온돌 병실과 시료 병실로 나누었고, 위치도 부지의 외곽으로 두었다. 온돌 병실과 시료 병실로 구분한 것은 시료 환자에 대한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면서 시료 병실을 별도로 두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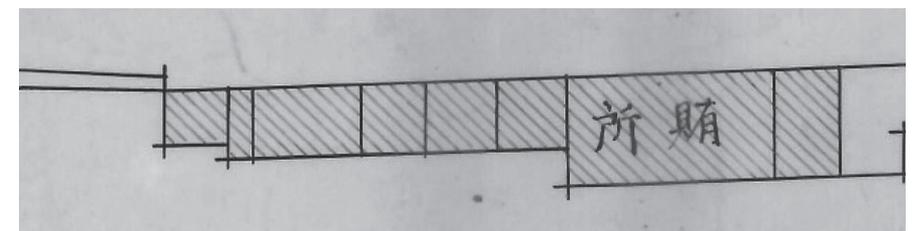
실제 조선총독부는 시료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 나갔고, 1920년을 계기로 시료의 제공하는 주체가 조선총독부가 아닌 도(道)로 바뀌었다. 각도 별로 이에 대한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초와 같이 제한

20 김영수, 2015,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료사업(施療事業)의 변천-시료대상과 운영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5, 155~157쪽.

없는 시혜적 무료 진료를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1925년에는 도립의원규정이 공포<sup>21</sup>되어 수원자혜위원은 경기도립수원의원(京畿道立水原醫院)으로 개칭되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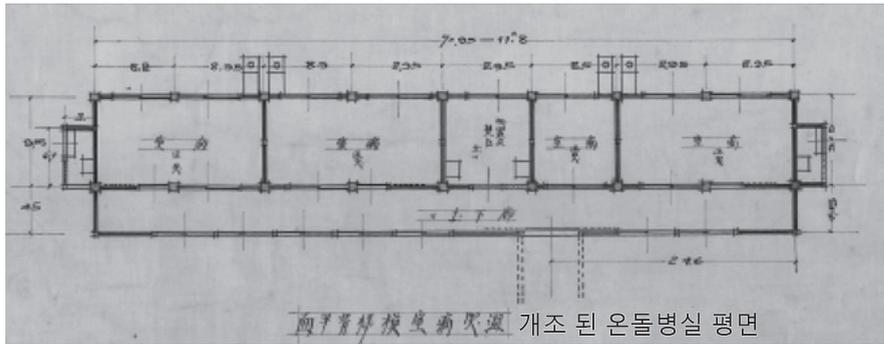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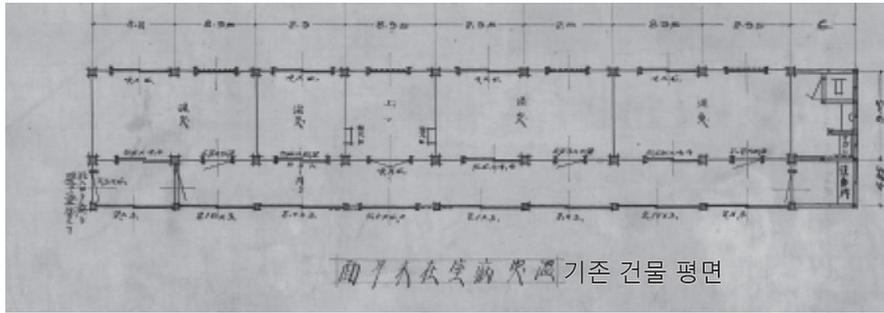
〈그림 26〉 취사장을 개조해서 만든 시료 병실 개조 전후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7〉 1921년 수원자혜위원 배치도에서 시료 병실로 사용하기 전 취사장(賄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 배치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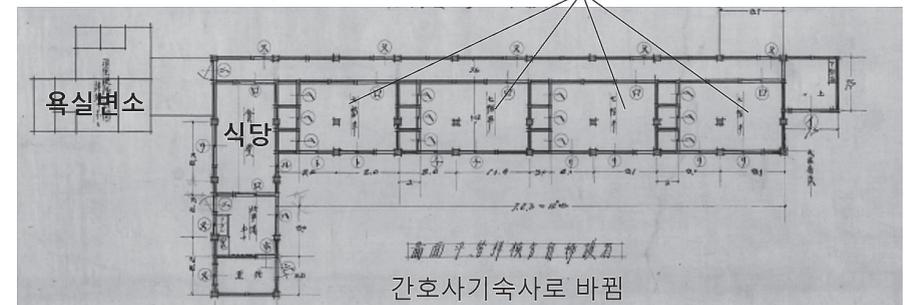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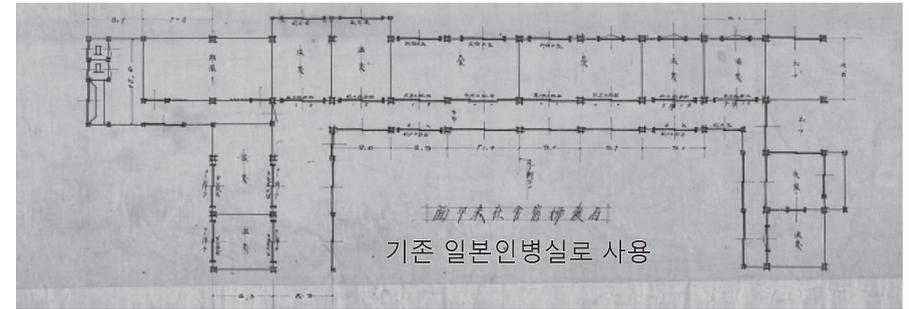
21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9호 「도립의원규정(道立醫院規程)」.

22 김영수, 2015,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료사업(施療事業)의 변천-시료대상과 운영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5, 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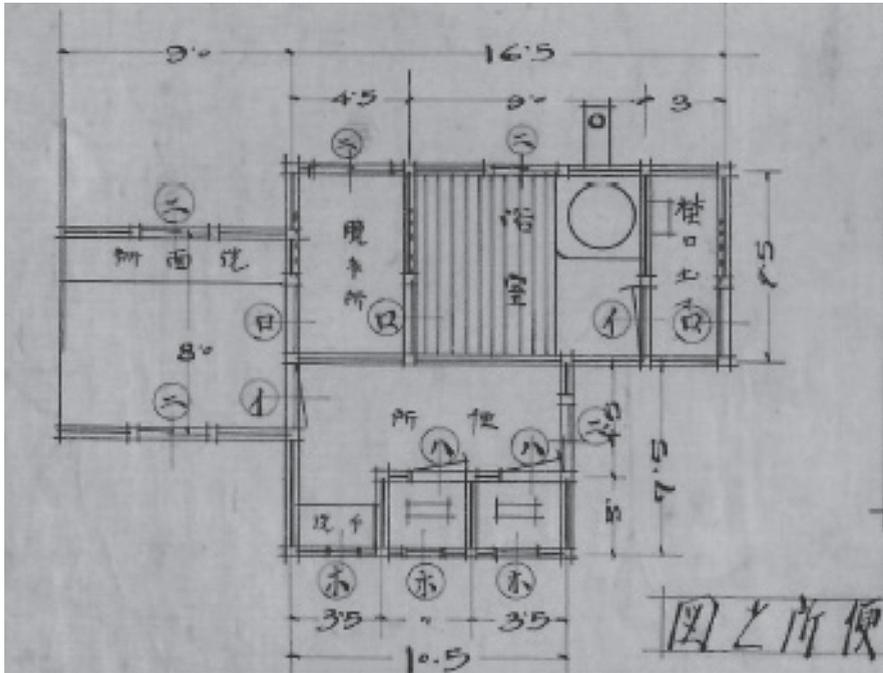
〈그림 28〉 온돌병실의 개조 전후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일본인 병실로 사용했던 건물은 1923년에 간호사 기숙사로 개조되었다. 일본인 병실로 사용되었던 만큼 다다미로 된 병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조된 간호사 기숙사 평면에서도 다다미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균일하게 7조 반(七帖半) 크기의 다다미 4개 실이 나란히 있으며 원래 복도가 남쪽으로 위치했으나 개조 후에는 북쪽으로 복도의 위치가 바뀌었다. 평면도를 보면 복도의 위치가 바뀌면서 기둥이 각 실 중앙마다 오게 되었다. 이는 원래 기존 건물의 툇마루 위치가 남쪽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호사 기숙사에는 식당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욕실이 있는 변소도 따로 증축하여 복도와 연결하였다(〈그림 29〉, 〈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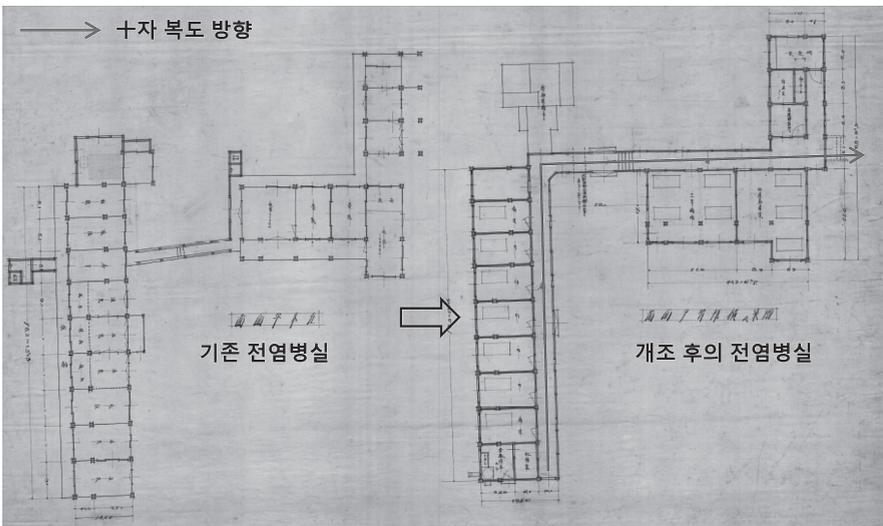


〈그림 29〉 간호사 기숙사 개조 전후 평면도(1923년, 국가기록원 소장)

기존의 특별병실과 전염병실 건물은 1923년에 모두 전염병실로 개조하였다. 남쪽에 있는 툇마루를 편복도로 개조한 전염병실을 중앙 십(十)자 복도와 연결하면서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도 폭을 확장하고 위치를 북쪽으로 바꾸었다. ㄱ자 형태의 복도로 개도하면서 3인 1실, 4인 1실 외 7개의 1인실로 만들었고 모두 침대를 사용하는 병실로 개조하였다. 복도 끝에는 화장실을 증축하여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염병실에서 3인실과 4인실의 경우 툇마루를 복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다 다시 병실로 개조하여 기둥이 병실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



〈그림 30〉 간호사 기숙사 욕실·변소(1923년,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31〉 전염병실 개조 전후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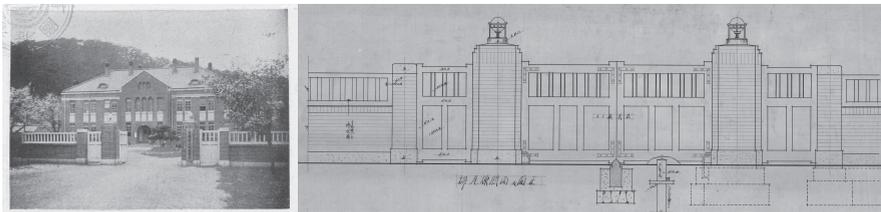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의료기관은 전염병 관리를 하였다. 전염병원을 따로 두거나 지방에서는 자혜의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성에는 ‘경성부립순화병원’이라는 전염병 전담병원이 있어 전염병 환자를 격리 및 입원·치료를 맡았다. 지방에서는 자혜의원에서 일반진료와 전염병 진료를 모두 담당하였다. 한국에서는 콜레라가 1916년, 1919년, 1920년, 1926년에 크게 유행했고, 장티푸스는 1925년과 1928년에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1919~1920년에 유행했던 콜레라는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조선총독부가 조선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 위생사업은 도(道)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sup>23</sup> 수원자혜의원은 지역민의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전염병 진료도 맡았다. 이에 병원의 남쪽에 전염병실을 두었다. 1923년에는 전염병실과 그에 따른 시설이 더욱 확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전염병실 옆에 있었던 특별병실이 전염병실로 바뀌고, 병실 주변으로 벽체를 세워 분리된 공간을 만들었다. 또 전염병실 관련 시설로 소독실을 새롭게 지었다.

마지막으로 수원자혜의원의 정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의 자혜의원도 신축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 먼저 1920년에 지어진 함북 나남 자혜의원과 1921년에 지은 전북 군산 자혜의원의 신축정비계획 배치도를 보면 정문과 전체 병원 배치도의 중심축은 일치하며 그 외 다른 지역의 자혜의원도 모두 동일축상에 있다. 그러나 수원자혜의원의 경우 정문의 위치와 배치도의 중심축과는 동일축상에 있지 않다. 1923년에 지은 정문의 위치를 화성행궁 배치도와 비교해 봤을 때 신흥루의 위치와 일치하였다. 신흥루는 좌익문-중앙문-봉수당까지 이어지는 축선에 위치하고 있다. 신축 본관은 좌익문 위치에 지어졌고, 중앙문은 1919년 이전에 철거되었다. 이후 1921년 병원 배치도에서 좌익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좌익문과 신흥루는 1923년 공사과정에서 철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3 김영수, 2015,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료사업(施療事業)의 변천-시료대상과 운영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5, 154~155쪽.



〈그림 32〉 수원·남·군산 자혜의원 중심축과 정문 위치(붉은색 화살표)(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33〉 1929년 경기도립수원의원(구 수원자혜의원) 전경(좌)과 1923년 정문 설계도(우)  
(좌 : 朝鮮總督府, 1929, 『生活狀態照査 1-水原郡-』, 우 : 국가기록원 소장)

##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수원의 전통적 공간인 화성행궁에 근대 의료기관인 수원자혜의원이 들어오면서 어떤 공간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도면과 문헌 등의 자료를 통해서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기존의 화성행궁 건물 대부분은 병원의 용도에 맞게 개조하였고, 일부 증축 또는 철거가 이루어졌다. 1923년 본관 및 기타 시설 신축공사 당시에는 일부 건물을 남겨 두고 대부분의 행궁은 헐려 나갔다.

1910년 9월 5일 수원자혜의원은 화령전 부속 건물에 개원하였다. 같은 해 화성행궁에 있던 경기도 관찰부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병원 용도에 맞게 건물을 개조한 후 이듬해인 1911년 5월 28일에 수원자혜의원은 화령전에서 화성행궁으로 이전하였다. 화성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은 병원의 본관으로 사용하였고, 복내당 영역은 조선인 병실, 득중정 영역은 일본인 병실로 개조되었다. 유여택 영역은 특별병실, 그

옆에 전염병실을 두었다. 각 건물의 뿔마루를 복도로 개조하여 실내공간에서 각 실로 연결되거나, 건물끼리 연결하는 실내복도를 두어 외부를 통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다. 본관인 봉수당은 북측으로 확장하여 마공실로 사용하였다. 바닥과 지붕을 확장하면서 일본식 구조로 확장하여 한국과 일본의 혼합된 건물 형태가 되었다. 이는 일제 초 관영시설이 기존의 전통건물을 활용하는 경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조선인 병실의 경우 온돌을 설치하였고, 일본인 병실은 다다미로 개조하였다. 1919년에는 본관 앞의 중앙문을 철거하여 넓은 중정을 확보하였고 1921년에는 전염병실 주변으로 벽을 설치하여 전염병실을 격리병동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갔다.

1923년 5월 수원자혜의원은 본관 및 기타 시설을 신축하면서 화성행궁의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전체 3,715평에 총공사비 7만 8,000여 원을 들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신축된 건물은 전체 763여 평으로 일부 행궁 건물은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하였다. 신축한 건물은 본관, 병실, 숙직실, 중앙복도 등이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것은 간호사 기숙사, 온돌 병실, 시료 병실, 전염병실 등이다. 신축 본관은 좌익문 위치에 지어졌다. 전체 2층의 벽돌조 건물로 목구조에 벽돌 외장마감으로 당시 병원 건축으로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각 실에 벽난로를 설치하여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붕에는 굴뚝이 솟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건물의 전면 중앙에 돌출된 부분은 아치형 창문과 상부에 박공으로 장식하였다. 신축 병실은 모두 침대 병실로 구성되었으며 본관 뒤에 중앙 복도와 바로 연결되는 곳에 있다. 본관 바로 뒤에는 숙직실을 두어 일본인 직원용 다다미방과 조선인 직원용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본관이었던 봉수당과 장락당은 일반병실로 개조되었다. 일본인 병실로 사용되었던 득중정 영역은 간호사 기숙사로 개조되었고, 각 실은 모두 다다미방이다. 온돌 병실과 시료 병실은 모두 온돌로 되어있고 기존의 조선인 병실이 바뀌어 병원부지 외곽에 위치하였다. 전염병실은 대부분 1인 침대 병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3인 또는 4인 병실이 있다. 격리 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전염병실 주변에 벽체를 세웠고, 소독실을 따로 두어 격리병동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신축된 자혜의원의 배치도에서는 모두 중심축이 되는 복도와 병원의 정문은 동일 축에 있으나 수원자혜의원은 중심복도와 정문의 위치가 일직선에 있지 않다. 이는 화성행궁의 배치도와 비교했을 때, 수원자혜의원이 새롭게 설치한 정문의 위치가 신평루의 위치에 정문이 만들어지면서 중앙복도의 중심축과

정문의 위치는 일직선에 놓여있지 않게 되었다.

1923년 수원자혜위원의 본관 및 기타 시설 공사로 화성행궁은 원래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개원 초기에는 전통건물에 일본식 목구조의 확장 혹은 외벽이 설치되어 한·일 결합형태의 외관을 가지게 되었으나 1923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행궁 건물은 헐리게 되었고, 본관을 중심으로 병원부지 중심에는 일본식 건물로 대체되었다. 남아 있던 기존의 행궁 건물조차 개조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투고일 2022년 4월 29일 심사일 2022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 참고문헌

### 〈원문 자료〉

- 『京城日報』 1924년 8월 26일.  
 『官報』 1910년 9월 30일.  
 『官報』 1910년 10월 1일.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朝鮮總督府, 『生活狀態照査1 -水原郡-』, 1929.

### 〈단행본 및 논문〉

- 김선희, 2010,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제3호.  
 김영수, 2015,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료사업(施療事業)의 변천-시료대상과 운영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5.  
 박윤재, 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화성박물관, 2018, 『수원의 궁궐, 화성행궁』(특별기획전 전시도록).  
 안국진, 2014, 「근대건축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안국진, 2019, 「일제강점기 수원관립건축훼손과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이상해, 2014, 「화성행궁의 배치와 구조」, 『수원시사 17 : 수원화성』,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장필구 · 진봉희, 2012, 「풍경공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8(12).  
 주상훈 · 진봉희, 2011, 「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11).  
 주상훈, 2021, 「1910년대 자혜의원 계획도면에서의 병실 유형과 온돌병실의 특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7(4).  
 한동민, 2004, 「근대 수원지역의 공립의료기관 - 관립 수원자혜위원에서 도립수원의원까지」, 『경기사학』 8.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 〈홈페이지〉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www.nl.go.kr/newspaper>).

수원문화재단(<https://www.swcf.or.kr>).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https://theme.archives.go.kr/next/place/viewMain.do>).

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http://gb.nl.go.kr/>).

## 요 약

개항과 함께 한반도에 서양식 의료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일본의 주도로 근대식 의료기관은 점차 확립되어 갔다. 1907년 대한의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지방의 주요 지역에 시혜적 성격의 자혜의원이 설치되었다.

1910년 9월 5일 수원자혜의원은 수원의 화령전 부속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같은 해 화성행궁에 있던 경기도 관찰부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비워진 화성행궁으로 수원 자혜의원이 이전해 왔다. 병원 용도에 맞게 건물을 개조한 후 이듬해인 1911년 5월 28일에 수원자혜의원은 화령전(華寧殿)에서 화성행궁으로 이전하였다. 화성행궁의 정전(正殿)인 봉수당(奉壽堂)은 병원의 본관으로 사용하였고, 복내당(福內堂) 영역은 조선인 병실, 득중정(得中亭) 영역은 일본인 병실로 개조되었다. 유여택(維與宅) 영역은 특별병실, 그 옆에 전염병실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각 건물의 툇마루나 회랑을 복도로 개조하여 실내공간에서 각 실로 연결하거나, 건물끼리 연결하는 실내 복도를 설치하여 외부로 통하지 않고도 이동을 하도록 개조하였다. 본관의 북측 끝으로 건물을 확장하는데 바닥과 지붕을 일본식 구조로 확장하여 한국과 일본의 혼합된 외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초 대부분의 관영시설이 기존의 전통건물을 활용하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병실을 조선인 병실과 일본인 병실로 구분하면서 조선인 병실에는 온돌을 설치하고, 일본인 병실은 다다미로 개조하였다. 1919년에 본관 앞의 중앙문(中陽門)을 철거하여 넓은 중정을 확보하였고 1921년에는 전염병실 주변으로 벽을 설치하여 전염병실을 격리병동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갔다.

1923년 5월 수원자혜의원은 본관 및 기타 시설을 신축하면서 화성행궁의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전체 3,715평에 총공사비 7만 8,000여 원이 소요된 공사가 진행되었다. 신축된 건물의 면적은 총 763여 평으로 일부 몇 개 동의 기존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하였다. 신축한 건물로는 본관, 병실, 숙직실, 중앙십(十)자 형태의 복도 등이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것은 간호사 기숙사, 온돌 병실, 시료 병실, 전염병실 등이다. 신축 본관은 좌익문(左翊門)의 위치에 지어졌으며 2층 건물로 목구조에 벽돌로 외장을 마감하였다. 각 실에 벽난로를 설치하여 난방

시설을 완비하였고, 지붕에는 굴뚝이 솟아나 있다. 건물의 전면 중앙에 돌출된 부분은 아치형 창문과 함께 상부를 박공으로 장식하였다. 신축 병실은 모두 침대 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 뒤편 중앙복도 옆에 위치한다. 본관 바로 뒤에는 숙직실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본인 직원용 다다미방과 조선인 직원용 온돌방을 두었다. 구(舊) 본관이었던 봉수당은 일반병실로 개조되었다. 일본인 병실로 사용되었던 득중정 영역은 간호사 기숙사로 개조되었고, 각 실은 모두 다다미방이다. 온돌 병실과 시료 병실은 모두 온돌로 되어있고 기존의 조선인 병실이 바뀌어 병원부지 외곽에 위치하였다. 전염병실은 대부분 1인 침대 병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3인과 4인 병실이 있다. 격리 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전염병실 주변에 벽체를 세웠고, 소독실을 따로 두어 격리병동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신축된 자혜의원의 배치도에서는 대부분 중심축이 되는 복도와 병원의 정문은 일직선상에 있으나 수원자혜의원은 중심복도와 정문의 위치가 일직선에 있지 않다. 이는 화성행궁의 배치도와 비교했을 때, 수원자혜의원이 새롭게 설치한 정문의 위치가 신평루(新豐樓)의 위치와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중심복도의 축과 정문의 위치는 일직선에 놓여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1923년 수원자혜의원의 본관 및 기타 시설 공사로 화성행궁은 원래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개원 초기에는 전통건물에 일본식 목구조의 확장 혹은 외벽이 설치되어 한·일 결합형태의 외관을 가지게 되었으나 1923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행궁 건물은 헐리게 되었고, 본관을 중심으로 병원부지 중심에는 일본식 건물로 대체되었다. 남아 있던 기존의 행궁 건물조차 개조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주제어** : 근대 의료시설, 수원자혜의원, 화성행궁, 일제강점기

## ABSTRACT

### A study on spatial changes of Hwaseonghaenggung after construction in 1923

Choi, Jihae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changes of Hwaseonghaenggung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especially focusing on changes after the construction in 1923.

Suwon Charity Hospital(水原慈惠醫院) opened at Hwaryeongjeon in 1910. The hospital relocated from Hwaryeongjeon to Hwaseonghaenggung in 1911. Bongsudang(奉壽堂) was used for main building of hospital. Bongnaedang(福內堂) was the place where King Jeongjo stayed at the time of wonhaeng (long journey) and is located in the south of Jangnakdang(長樂堂). This building was changed to hospital room for Joseon people. Deukjungjeong, used for archery, was used for Japanese hospital room. Yuyeotaek(維與宅) was used for infectious hospital. Toenmaru, arrow wooden porch running along the outside of a room, of each building was remodeled to indoor hallways. And there were corridors connecting buildings each other. Some buildings were extended or built with Japanese wooden structure. Most buildings of Hwaseonghaenggung were remodeled.

In 1923, new main building and other buildings were construction. The space of hospital was 3,715 pyeong(坪) and the amount of construction cost was about 78,000 won. Some buildings were newly constructed, main building, a hospital building, central hallways and night duty building. The new main building was 2 stories with wooden structure and facing bricks. Central corridor, a night duty building and a hospital building were behind the new main building and connected each other. All new buildings that was built in 1923 were constructed

with Japanese wooden structure.

Some old buildings remained and renovated after the construction. Old main building Bongsudang, was converted to a hospital building with rooms for 3-6 people. A dormitory for nurses had used for Japanese hospital building. This building was renovated as a dormitory with Tatami rooms Japanese traditional flooring system. Befor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building was one of Hwaseonghaenggung buildings with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wo buildings at the edge of the site were also hospital wards. One was connected to the main building with a hallway and it was charity ward with ondol that is Korean floor heating system. The other building had 4 rooms with ondol. These two buildings might had been a hospital ward for Korean patients. A contagion ward was at the south of hospital. It was surrounded walls for being separated.

Main gate was also built on the site of Sinpungnu(新豐樓) that is the main gate of Hwaseonghaenggung. After the construction in 1923, most buildings of Hwaseonghaenggung were demolished by Japan. New buildings

**Key words** : Modern Healthcare Facilities, Suwon Charity Hospital, Hwaseonghaenggung, Japanese colonial period

# 병자호란시기 남한산성과 광교산의 기마전

: 김준룡 부대와 청나라 팔기병의 기마전

이흥두\*

1. 머리말
2. 수도 방어선 붕괴와 남한산성 기마전
3. 전라 병사 김준룡의 광교산 전투와 기마전
4. 맺음말

## 1. 머리말

후금의 누르하치는 임진왜란 중에 조선과 명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광해군의 친후금정책으로 후금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인조반정에 성공한 반정공신들이 승명반청의 외교 정책으로 전환한바, 두 번의 호란을 자초하게 되었다. 특히 인조 5년(1627) 1월 13일 청나라 태종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공한 것이 정묘호란이다. 1월 27일, 인조는 조정의 분조에 의하여 강화도로 들어가고, 세자가 전주로 이동했는데, 그해 3월 형제의 맹약을 조건으로 정묘화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은 단기간에 끝났다.

정묘호란 후에 인조 정부는 서북방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수도 서울의 방어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정부의 논의는 도체찰사와 도체찰부사를 두어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visiting professor, Hongik University), E-mai : hongdoo1@hanmail.net, Tel : 010-3358-5307

전국적인 지휘체계를 갖추는 한편으로 평안, 황해 양도에도 특별히 도원수와 부원수를 파견하여 양서(兩西)의 군사를 통합지휘토록 하였다. 그리고 강도를 보장으로 삼고, 남한산성은 강도를 응원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특히 정묘호란 후 반정공신들은 명나라 척계광의 『연병실기(練兵實記)』의 거기보법(車騎步法)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총을 가진 포수와 활을 쏘는 사수 사이에 대포를 도열하여 청나라 팔기병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 같은 전술체계를 갖추기 전에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성을 지키는 수성 전술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청나라 팔기병이 성을 지나서 군사를 휘몰아 6일 만에 수도 한양에 도착하는 동안 성밖 기마전은 한 번도 없었다.<sup>1</sup> 다만 병자호란 기간 중 전라 병사 김준룡의 광교산 전투와 평안도 군병의 금화 전투에서 기마전이 전개되었을 뿐이다.<sup>2</sup>

인조 14년(1636) 12월 20일, 전라 감사 이시방은 근왕(勤王)의 명을 받고 6,000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그달 29일에 전라 병사 김준룡과 함께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이듬해 1월 2일에 양지에 도착한 이시방은 김준룡을 선봉장으로 삼아 군사 2,000명을 이끌고 먼저 진군하게 하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1월 4일 수원과 용인 사이에 있는 광교산으로 진출한 김준룡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남한산성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주력군 5,000명을 이끌고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백양고라가 아군에 의해 전사함으로써 청군은 순식간에 전열이 와해되었고, 김준룡부대가 이 틈을 타서 일제히 반격을 가하여 청군을 대파하였다. 이 전투는 병자호란 중에 청군과 싸운 최대의 전투이자, 최초의 대승으로 기록된다. 이때 김준룡의 부대는 본대인 이시방으로부터 군량과 무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수원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철수 도중에 많은 군사를 잃었다.

당시 이시방은 김준룡의 부대가 수원으로 철수했다는 소식을 패전에 의한 퇴각으로 잘못 알고 1월 7일에 휘하군을 이끌고 공주 방면으로 철수하였다.<sup>3</sup> 그런데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병사 김준룡에 대한 평가는 광교산 전투의 패배를 이끈 중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배한 중죄인으로서 왕명의 처단을 받

1 이홍두, 2020, 『한국 기마전 연구』, 도서출판 헤안.

2 『承政院日記』 仁祖 15年 3月 丁卯.

3 許穆, 『眉叟記言』 別集, 卷17, 丘墓文贈左贊成金公神道碑銘.

아야 하는데, 도망하여 행적을 알 수 없다는 비방은 후방에서 대기하다 겁을 먹고 도망친 전라 감사 이시방의 모함이었다.

그동안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팔기병을 상대로 한 기마전과 기병전술에 대해서는 노영구와 최형국 및 이홍두의 연구가 있다.<sup>4</sup> 노영구의 연구는 단순히 기마전이나 기병전술에 더하여, 화약무기의 발달에 따른 전술의 시대적 변화상을 짚어 내었다. 그리고 최형국은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를 통해서 조선군에서 운용된 기병의 전략과 전투사에 대해서 마상무예라는 미시적 관점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이홍두는 「청나라의 조선침공과 기마전」에서 두 번의 호란 때 조선군이 청나라 팔기병을 상대로 수성전술을 계속 사용해 패배한 것은 인조반정 공신들이 북방 유목민족에 상대할 수 있는 병제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홍두는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에서 전술의 변화에 따른 기병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허태구는 17세기 전반기의 수성(守城) 중심의 방어전술을 연구하였는데,<sup>5</sup> 여기서는 기동력이 뛰어난 청나라 팔기병을 성을 지키는 수성전으로 상대하였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그리고 두 번의 호란에 대한 개설적인 연구는 유재성의 저서가 있다.<sup>6</sup> 그러나 기존의 연구 중 광교산 전투와 기마전을 주제로 하는 논문은 현재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도 한성의 방어선이 조기에 무너져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된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산성 관군의 북문 밖 기마전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전라 병사 김준룡의 광교산 기마전을 살펴보고, 아울러 전투를 지휘한 김준룡의 전공을 축소 왜곡된 부분을 복원코자 한다.

4 노영구, 2002, 「조선후기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영구, 2002,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 13.

노영구, 2016, 『조선후기의 전술-「병학통」을 中心으로』, 도서출판 그물.

최형국, 2013,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도서출판 헤안.

이홍두, 2002,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군사사연구총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홍두, 2010, 「청나라의 조선침공과 기마전」, 『역사와 실학』 42.

5 허태구, 2009, 「병자호란의 정치 군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유재성, 1986, 『병자호란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 2. 수도 방어선 붕괴와 남한산성 기마전

### 1) 조선군의 수성전(守城戰)과 수도 방어선 붕괴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는 1636년(인조 14) 12월 1일, 기병 중심의 12만 8,000명의 조선 원정군을 심양에 집결시켰다.<sup>7</sup> 그리고 압록강을 도하할 때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하루의 차이를 두고 심양을 출발하였다.<sup>8</sup> 따라서 여기서는 청군이 압록강을 도하한 12월 8일부터 남한산성에 도착한 15일까지의 양국 기마전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12월 8일 저녁 압록강에 도착한 좌익군은 청북방어사 임경업이 병력 3,000여 명을 거느리고 맹렬한 포격을 가하자, 12월 9일 백마산성을 지나 안주-평양-황주-평산을 거쳐 한성으로 직진하여 12월 15일에 남한산성 서쪽 판교에 진출하였다. 또한 12월 10일 압록강을 도하한 청 태종의 본군은 의주-용천-곽산-선천-정주 등에 소수의 병력을 잔류시키고, 12월 14일에 안주에 도착하였다. 당시 평안 병사 유림이 3,000여 명의 병력으로 안주성을 방어하자, 청 태종은 안주성을 지나 한양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유림이 영변부사 이준을 안주성에 잔류시키고 자신은 평양 방향으로 남진하면서 청군을 추격하였다.

12월 8일 벽동에 도착한 우익군은 창성-삭주-귀성-태천을 거쳐 12월 14일에 영변의 철옹산성을 포위하면서 최초의 성 밖 기마전이 전개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당시 양국 간의 기마전을 설명하고 있다.

부원수 신경원이 철옹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적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병 수백 기를 성 밖으로 보내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조금 있었다. 아군이

7 유재성, 1986, 『병자호란사』, 132~133쪽. 선봉대는 기병 6,000기, 좌익군은 기병 3만 기, 본군은 기병 3만 기와 보·기혼성군 4만으로 총 7만 명, 우익군은 기병 1만 2,000기와 보·기혼성군 1만 명으로 총 12만 8,000명이다.

8 선봉대와 좌·우익군은 12월 2일 심양을 출발하여 12월 8일 압록강을 도하하였고, 태종이 직접 지휘하는 본군은 12월 3일 심양을 출발하였다. 한편 기병 6,000기로 청나라 선봉부대는 12월 8일 압록강을 도하한 후 불과 6일 만인 14일에 한성의 양철평(良鐵坪: 현재 불광동)에 도착하였다.

조그만 이익을 탐내 곧장 물러나 돌아오지 않다가 적의 대군이 별안간에 닥쳐와 아군이 이미 적병의 뒤에 있게 되니 혹은 피살되고 혹은 스스로 도망쳐 숨었다. 적이 철옹성을 포위한 지 여러 날이 되어도 성이 험준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자 거짓으로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신경원이 척후장 곽산 군수 정빈의 말을 믿고 청군을 추격하였다. 그러나 적병이 향산동 어귀에 숨어 있다가 군사를 풀어 신경원을 사로잡았다.<sup>9</sup>

위 사료는 부원수 신경원이 철옹산성 성 밖으로 기병을 출격시켜 수십 명을 살상했지만, 청나라 팔기병의 거짓 후퇴를 간파하지 못하고 추격하다가 기습을 받아 아군이 전멸하고, 신경원은 포로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부원수 신경원은 기병 500여 기를 성의 동문 밖으로 출격시키자, 좌익군의 대장 예친왕 도도는 원정군의 정예를 숨기고 빈약한 자를 선봉에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철옹산성의 기병대는 다수의 청나라 군사를 살상할 수 있었다.

한편 청나라 좌익군은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철옹성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지만, 철옹산성의 방어태세가 견고하여 산성에 대한 정면공격을 중지하였다. 그리고 거짓으로 주력군을 안주 방면으로 퇴각시키면서 조선군을 성 밖으로 유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청나라 팔기군이 가장 잘하는 위장도주전술에 철옹산성 군사가 감쪽같이 걸려든 셈이다.

부원수 신경원은 성 안의 군사를 모두 모아 남쪽을 향해 청군을 추격하였으나 완전히 패배하였다. 즉, 겨우 한 번의 위장 전술에 맥없이 속고 그것을 기뻐하며 용감하게 전원이 추격한 것은 신경원이 지휘자의 자질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나라 좌익군은 군사를 산성 남방 40리 지점에 매복하여 산성의 기병을 기습한 다음, 조선군을 섬멸하고 신경원을 포로로 잡았다.<sup>10</sup>

한편 조선에서는 청나라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침공하자, 의주·안주·평양·황주·평산 등 변방 요지의 방어병력을 인근의 산성으로 이동시켜 이를 거점으로 청군의 남하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따라서 서북 국경지역의 방어군은 각기

9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25, 仁祖朝故事本末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

10 이홍두, 2010, 『청나라의 조선침공과 기마전』, 『역사와 실학』 42, 263~264쪽.



〈그림 1〉 조선의 방어계획(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322쪽에서 인용)

지정된 산성으로 들어갔다. 이는 청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남한산성과 강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 한성의 방어선 확보에 충분한 시간을 벌려는 방어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청군은 이들 산성에 소규모의 병력을 잔류시켜 조선군을 성안에 묶어 놓은 상태에서 주력군은 수도 한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남하하였다.

청군의 선봉대는 12월 8일, 압록강을 건넌 후 불과 6일 만인 12월 14일에 한성 근교의 양철평(불광동)에 진출하여 한성과 강화도를 잇는 도로를 차단하였다. 청군의 신속한 남진과 강화도-한성 간의 도로 봉쇄조치는 조선 측의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군은 강화도-한성-남한산성을 연결하는 수

도권 방어태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해서 방어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sup>11</sup> 즉 12월 14일 개성 유수가 적병이 이미 소도를 지났다고 보고하자,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을 강도로 보내고,<sup>12</sup> 인조는 동현로(銅峴路: 울지로)를 지나 수구문으로 도성을 빠져나가 전곶(箭串: 살곶이, 뚝섬)-마장리-송과를 거쳐 이날 밤 2경(10시 전후) 무렵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sup>13</sup>

12월 15일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신한 인조의 대가가 새벽(5경쯤)에 산성을 출발하여 강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산길이 얼어붙어 미끄러워 말이 걷지 못하자, 인조는 말에서 내려 걸었으나, 끝내 도착할 수 없음을 알고는 성으로 돌아왔다.<sup>14</sup> 이때 김류와 이성구가 사세가 급박해지는데, 장차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서 거듭 강도로 갈 것을 요구했지만, 인조는 끝내 듣지 않았다.<sup>15</sup>

한편 최명길의 지연작전에 말려들어<sup>16</sup> 홍제원에서 진군을 멈추고 있던 청군의 선봉부대는 12월 15일 오후, 조선 국왕의 남한산성 입성 사실을 알고 그 뒤를 추격하였다. 그리고 한성과 강화도 간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기병 2,000여 기를 배치하고 주력군은 무악재로부터 한성을 우회하여 뚝섬과 신천 나루를 거쳐서 판교에 진을 쳤는데, 이것은 삼남(三南)의 길을 끊기 위함이었다.<sup>17</sup>

## 2) 남한산성군의 성 밖 기마전

1636년(인조 14) 12월 16일에 판교에 도착한 선봉대는 군사가 4,000여 기의 소

11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348쪽.

12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乙酉.

13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49쪽.

14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49쪽. 12월 14일 저물 무렵에 대가가 경복궁을 출발하여 그날 밤 초경이 지나서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김류가 상에게 강도로 피신하기를 권하자, 홍서봉과 이성구는 찬동하고, 이홍주는 반대하였다. 김류는 고립된 성에 계시면 외부의 구원도 없고, 말의 풀과 양식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인조가 김류에게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하문하자, 김류가 과천과 금천을 경유하는데, 경기병으로 과천과 금천의 들을 가로질러 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고 하여 성문을 나섰다(『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甲申).

15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乙酉.

16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甲申.

17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丁亥.

수 병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장거리 행군을 거듭하여 지쳤기 때문에 적극 공격을 하지 않고 부대를 남한산성 서쪽 정면에 분산 배치하였다. 그리고 산성에 사자를 보내 화의를 제기하면서 기병 1백여 기를 산성 서문에 접근시켜 탐색 작전을 시도하였다.

한편 청나라 좌익군은 12월 9일 의주 백마산성을 지나 안주-평양-황주를 거쳐 12월 18일 한성에 입성하였다.<sup>18</sup> 좌익군은 기병 6,000기를 삼각산으로 진출시키고, 주력군 2만 4,000기는 19일 아침, 전곶(뚝섬)-신천-삼전도를 거쳐 남한산성 동·서·남방 일대로 접근하여 포위망을 구축하였다.<sup>19</sup> 따라서 여기서는 1636년(인조 14) 12월 15일부터 1637년(인조 15) 1월 30일까지의 남한산성군과 산성을 포위한 청군 간에 전개된 기마전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남한산성의 조선 정부와 청군은 12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화의를 진행했는데, 청군 측에서는 세자를 볼모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 측에서는 청군의 요구를 거부하고 적병을 공격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즉 인조는 12월 16일부터 전국에 교서를 반포하여 도원수와 부원수 및 각 도의 감사·병사에게 근왕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구원하도록 명령을 내리고,<sup>20</sup> 청군을 공격할 계책을 논의하였다.

논의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승지 정광경은 적이 소수의 병력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잠복하고 있는바, 지금 출병하여 친다면 형세상 반드시 한 곳으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공격하면 생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비국 당상 최명길은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호령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구원병이 혹시 온다 해도 지휘할 사람이 없으므로 경성에 주둔한 심기원으로 하여금 여러 도의 병력을 지휘해 구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좌의정 홍서봉은 십왕자(十王子)가 주둔한 곳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날래고 건장한 포수를 뽑아서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영의정 김류는 성을 굳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18 당시 한성에는 유도대장 심기원이 병력 6,000을 거느리고 한성을 방어했는데, 청군이 한성으로 진격하자, 병력을 삼각산으로 이동하여 배치했기 때문에 청군은 한성을 무혈로 입성하였다.

19 최초로 남한산성의 판교에 당도한 청군의 선봉부대는 기병 4,000여 기에 불과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장거리 행군을 거듭한 관계로 피로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 선봉부대는 적극 공격하지 않고 선봉 후속부대가 도착한 후 동시다발로 공격을 하였다.

20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丙戌.

마초와 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항복하게 될 것이니, 장사들이 좌우에서 호위하면서 날랜 말로 달려서 강도로 갈 것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비국 당상 장유는 현재의 계책으로는 화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적병이 여러 곳에 매복하고 있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적이 운제(雲梯)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볼 때 오늘 밤에 존망이 결정될 것이니, 경계가 허술한 남쪽 포루(砲樓)에 포수를 배치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어 기습을 단행하라고 하면서 화친하자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하였다.<sup>21</sup>

12월 18일 산성의 방어군과 청나라 군사가 처음으로 접전하였다. 즉 판교에 진출한 청의 선봉대는 10여 명, 또는 20여 명의 소수병력을 단위로 하여 성의 각 처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당시 북문수비군 대장 이서는 부장 원두표와 포수 7~8명 및 군사 40여 명을 북문으로 출격시켜 팔기병 4기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12월 19일에도 남문 수비대장 구굉과 군관 이성익이 출격하여 청군 20여 기를 사살하였다.<sup>22</sup>

그러나 소수의 전과에 의지해 성의 수비에만 전념하면서 성 밖의 구원 병력이 오지 않으면 남한산성은 고립하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방어전술보다는 기병을 성 밖으로 출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즉 대군의 후속 부대가 지형이 평탄한 남쪽의 남문 밖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적이 문루에 개미처럼 붙어서 올라올 수도 있으며, 성문을 부수고 진입하거나 성문에 불을 지르고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 밖 기마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김신국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신이 비국의 직책에 있는데 소수의 적을 사로잡는 것은 적을 물리치는 대계에서 보면 무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이현(梨峴)이 적에게 점령당하였는데, 이곳은 남방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신의 생각에 이현을 빼앗아서 점거할 수 있다면 삼남으로 가는 길이 절로 소통되고 그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지니, 이것이 실로 숨통을 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안에서 반드시 접응하는 조치가 있고 난

21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丁亥.

22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54쪽.

연후에야 외방의 병력이 믿고서 진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저들의 요새를 빼앗아 점거한다면 적들이 그 곳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성안은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sup>23</sup>

나) 이식이 아뢰기를, “기병 50여 기를 출격시키면 적진을 돌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안의 말이 굶주리며 서 있는 지 며칠이 되어 모두 앞으로 도살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장수를 정하고 군마를 지급한 다음 유병(遊兵)을 삼아서 출격시키면 외로(外路)가 소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성첩을 지키는 것이 허술해진다고 염려하면서 마대(馬隊)를 출격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정에서 용력 있는 사람마저도 속수무책으로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은 근간을 버리고 지엽(枝葉)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홍주일이 아뢰기를, “근래 포수들이 적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아서 성안의 인심이 배로 고무되었으니 실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사를 이루기는 어려우니 반드시 한쪽의 길을 뚫어 숨통을 틔움으로써 구원병으로 하여금 전진할 수 있게 한 후에야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24</sup>

위의 사료 가)는 성에 고립된 남한산성의 유일한 활로는 성 밖의 근왕병이 청군을 압박하여 포위망을 풀어 주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요충지 이현을 탈환하여 삼남으로 통하는 길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료 나)는 성 밖으로 기병을 출격시켜 요충지를 확보하면 구원군과 소통할 수 있는데, 조정에서 산성의 방어력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기병의 출격을 반대한바, 이것은 근간을 버리고 지엽을 쓰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가)와 나)를 종합하면 남한산성의 조선군이 자력으로 청군의 대병력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 성 밖으로 기병을 출격시켜 구원군과 연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당시 남한산성에는 성 밖으로 출격할 수 있는 기병의 전투력은 어느 정

23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己丑.

24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己丑.

도였을까. 사료 나)를 통해서 볼 때 그동안 성을 지킨 주력군은 포수였으며, 기병은 보조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병이 주력군이었다면 당시 산성에서는 기병의 기동력을 이용해 성 밖으로 척후병을 파견했을 것인데, 당시 남한산성 군대는 북병과 척후를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아서 적병의 다소를 파악조차 못하였다.<sup>25</sup>

특히 적의 진지를 빼앗으려면, 400기 이상의 기병이 필요하며, 반드시 정예 군사를 차출해야 하기 때문에 성안의 방어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적이 만약 대병력으로 공격해 오면, 패배할 수 있다고 걱정할 것은 대규모 성 밖 기마전을 전개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함에 따라 성안의 군사와 구원하러 올라오는 근왕병의 연락이 단절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화친이 결렬된 12월 18일 이후부터 포수 7~8명과 기병을 한 단위로 한 소부대로 성 밖 기마전을 적극 전개했는데, 성 밖으로 출전할 때마다 청나라 팔기병 10여 기를 체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성의 험준한 곳을 지키는 일은 사대부의 종들로 대신하고, 성첩을 지키던 군사 중 어영청의 포수와 기병으로 결사대를 조직한 다음, 성 밖 기마전에 출전시켰다. 그런데 기동력이 뛰어난 팔기병도 한 번의 포성을 들으면 달아나서 숨기에 급급한 것을 보고 성 밖 기마전에 화포부대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sup>26</sup>

다만 북문수비군대장 이서는 청나라 팔기병의 용병술을 본 후, 성 밖 기마전에서 정면으로 교전하는 것을 피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 후에 즉시 성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남한산성에는 모두 12개의 성문이 있는바, 성문 한 개마다 100여 기 혹은 50여 기의 병사를 내보내 교전하되, 성 위에서 크게 북을 치면 이후에는 전진하지 않고 즉시 성 안으로 귀환케 하였다.<sup>27</sup>

12월 20일, 청군 진영과 남한산성의 조선군 진영은 화의교섭을 재개하였지만, 화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규모 전투는 계속되었다. 12월 21일, 서문 수비군인 어영별장 이기축의 50여 병력이 출격하여 청군 10여 기를 사살하였으며, 동문

25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戊子.

26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庚寅.

27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庚寅.

수비대장 신경진의 100여 기를 성 밖으로 출격하여 청군 수백 기를 사살하고 무기와 군마를 노획하였다.<sup>28</sup>

12월 22일, 청군은 5,000여 명의 대군을 산성 4대문에 각각 1,000여 명을 배치하고 일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즉 청군의 각 부대는 산성 근처까지 접근하여 화포 사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운제·당차 등 공성기구를 앞세워 각 성문을 돌진하였다. 그러나 산성군도 청군 부대에 화포와 시석(矢石)을 퍼부어 성문의 돌파를 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성군은 북문에서 20여 명, 동문에서 30여 명, 서문과 남문에서 각각 20여 명의 팔기병을 사살하였다.<sup>29</sup> 이날의 전투에서 청군의 100여 명이 전사하였으나, 산성군의 사상자는 10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면 기동력이 뛰어난 청나라 팔기병의 사상자가 왜 이와 같이 많았을까. 그것은 적이 여러 곳에 주둔하였지만, 군사 수가 많은 곳도 30여 명 미만이며, 산세가 험준하여 팔기병은 그들의 장기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마전과 관련하여 4대문의 지형을 살펴보면 남문과 서문 방면은 경사가 심해 팔기병이 접근할 수가 없고, 동문 밖은 산골짜기가 조밀하게 중첩되어 상황을 살피기에 불편하며, 북문 밖은 지세가 험준하지만 시야를 가리는 곳이 없으니, 기마전을 전개하기에 가장 적합하였다.<sup>30</sup>

그런데 12월 23일, 청군이 1만여 명을 투입하여 산성의 4대문을 공격하자, 남한산성군은 청군이 공격대형을 갖추기 전에 성 밖으로 출격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인조가 친히 독전한 북문 수비군이 많은 청군을 살상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sup>31</sup>

당시 남한산성에는 1만 4,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던바,<sup>32</sup> 성 밖의 구원군이 도착

28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55쪽.

29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56쪽.

30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壬辰.

31 이 전투에서 조선의 산성군은 8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청군 측의 사상자는 최소한 200여 명에 이르렀었다.

32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甲午. 인조가 산성에 입성할 당시에는 광주진관(여주·이천·양근·지평·파주)의 5개 고을에서 약간의 군사가 도착하였다. 그리고 京軍인 어영청·총융청·훈련도감군을 합하여 1만 3,800명의 방어병력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문무백관 200여 명, 서리 100여 명, 백관의 노비 300여 명을 합하여 산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1만 4,300여 명에 달했다(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52쪽).

하지 않으면, 성은 고립되어 청나라 대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12월 26일, 강원도 근왕병 원주영장 권정길은 김단산(남한산성 밖 1km 지점)에 진출하였다. 남한산성에서는 근왕병이 청군의 배후를 공격하여 산성과 외부의 통로를 열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근왕병은 27일 청군에 패배함으로써 기대가 무너졌다. 또한 이때 충청·전라·경상도의 근왕병이 남한산성 인근 수원의 광교산에 진출했지만, 이들 대부분의 부대가 청군의 공격을 받고 패배하거나 중간에서 형세를 관망함으로써 남한산성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sup>33</sup> 따라서 성 밖 근왕병이 도착하여 안과 밖에서 협공할 기약이 없자, 산성의 군대가 성 밖으로 출격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27일, 독전어사 황일호 등이 국왕을 청대할 때 우부승지 한형길 등이 입시하여 기습 공격할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한 전술은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적의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 버린다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야습을 하고, 내일은 군사를 성 밖으로 출격시키며, 밤에 실행하는 야습은 네 개의 성문에서 동시에 출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성에서 청군의 정세를 관찰한 결과 부대배치에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즉 큰 진영은 동문과 남문 및 북문에 모여 있고, 동문 망월대의 적은 모두 남문으로 가고, 서문의 적은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본진에 배치한 군사는 모두 말먹이는 사람과 약간의 군사이고, 그곳의 복병은 조선 사람이 대부분이며, 많은 골짜기 가운데 중요 통로에는 모두 기병을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치는 청군의 위장전술이 내재해 있다. 다시 말해서 본진의 군사 중 대부분은 말먹이는 군사와 조선 사람의 포로이고, 골짜기 요새지에 기병을 배치한 것은 서문 쪽으로 산성의 군사를 유인하여 기마전을 전개할 속셈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산성의 군대는 먼저 정찰병을 보내 청군의 복병 위치를 알아낸 뒤에 출격한 병사가 진격하여 적진을 유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우부승지 한형길은 “야습할 때 적의 복병이 된 우리나라 사람과 뒤섞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자, 동부승지 이경중이 “비록 조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랑캐에 투항하고

33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58쪽.

서 그들의 호령을 듣는다면, 이 같은 자는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4</sup> 그러나 남한산성 군대는 외부의 군사와 협력도 없이 무모한 출격을 감행함으로써, 청군의 역습으로 크게 패배하였다.

결국 12월 29일, 남한산성이 고립무원에 빠진 상황에서 도체찰사 김류는 북문 맞은편 상사창리 방면의 청군 진영을 상대로 기병의 출격을 결정하였다. 당시의 양국 기마전을 『인조실록』의 사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29일 김류가 동서남북 네 성의 장수를 불러 명하기를, “북문 아래 적의 진영이 매우 엉성하니, 각각 정예군을 내어 격파하라.”고 하였다. 그때 사대문(四門)을 지키는 장수가 그 계책이 잘못된 것을 역설했는데, 김류가 듣지 않고 친히 장졸을 거느리고 북문에 앉아 대장의 깃발과 북을 세우고 병기를 휘두르면서 싸움을 독려하였다. 성 아래에는 개울이 있었다. 그런데 오랑캐의 기병이 좌우에 매복한 채 걸으려는 고군 남쪽 4, 5백 보 거리로 몰려가서 군사와 소·말을 약간 머물러 주둔시켜 놓고 유인하였다. (중략) 우리 군사들이 그들의 소와 말을 취하는데도 적들은 못 본 체하고 있다가, 우리 군사가 소나무 울타리 밖으로 모두 나온 뒤에야 비로소 적이 말을 채찍질하여 나는 듯이 돌격해 들어오고 북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곧장 우리 군사의 앞뒤를 끊었다. 이에 우리 군사는 총 한 방,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한 채 순식간에 짓밟혀 죽은 자가 거의 2백 명이고 신성립·지여해·이원길 등도 모두 죽었는데, 오랑캐 군사로 죽은 자는 다만 두 사람뿐이었다.<sup>35</sup>

위 사료는 12월 29일, 도체찰사 김류가 남한산성 북문 맞은 편 상사창리 방면의 청군 진영에 출격하였으나, 적의 위장전술에 걸려 참패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김류가 북문 아래 적의 진영이 매우 엉성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과적으로 청군의 위장전술에 속아서 출병했다가 전군이 패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날 청군은 남한산성 4개 성문 밖을 포위하여 조각만한 땅도 빈 곳이 없을 정도

34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丁酉.

35 『仁祖實錄』 卷33, 14年 12月 己亥;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25, 仁祖朝故事本末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

였다. 특히 북문 밖에는 가장 많은 적병을 배치했는데, 가파른 산기슭 좌우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군사를 매복하였다. 여기서 청군의 기병이 개울의 좌우에 매복했다고 하는데, 개울의 좌우 지명은, 북문 밖 왼쪽은 금암동이고, 오른쪽은 마근동이다.<sup>36</sup>

그때 김류 휘하의 어영군 300명이 일제히 성문을 내려가 앞을 다투어 적에게 나가자, 좌우의 북병이 일제히 기습하여 어영군을 섬멸하였다. 즉 어영군은 북문 밖으로 출병하여 기마전을 전개하려고 평지에 진을 쳤다. 그런데 적이 상대하여 싸우려 하지 않자, 김류는 청군의 진영을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군은 북문 아래 계곡에 기병을 매복시키고, 북문의 바로 맞은편에는 몇 명의 군사와 우마를 풀어 두고 주력군은 동문 아래 가지리로 철수시켰다. 이를 청군의 기만전술로 간파한 4개 성문의 장수는 김류의 출격명령을 반대하였으나, 김류는 출격을 고집하면서 병력 300여 명을 산성 북문 밖으로 진격시켰다. 날이 저물 무렵 체찰사 김류가 성 위에서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오라고 전령을 보냈다. 그 때 갑자기 적의 기병이 후방에서 아군을 공격하였다.<sup>37</sup>

한편 성 밖으로 출격한 남한산성의 선봉대 100여 명은 청군 진영으로 접근하여 포로와 우마를 거두어들였으나, 매복하고 있던 청나라 기병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후속부대 200여 명이 소나무 울타리를 벗어나 청군의 작전지역인 평지로 포로와 우마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청군의 포위망 속으로 완전히 진입하게 되었다. 이때 북문 쪽 계곡에 매복한 기병이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자, 가지리 방면으로 이동해 있던 청나라 기병이 정면에서 질풍같이 돌진해 왔다. 어영군은 청나라 기병에 맞서 혼전을 벌였으나, 화약이 부족하여 끝내 청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별장 신성립·지여해·이원길 등 300여 명의 군사가 모두 전사하였다.

### 3. 전라 병사 김준룡의 광교산 전투와 기마전

1636년(인조 14) 12월 8일 압록강을 도하한 청군의 선봉대가 6일 만에 한양 도성

36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庚申.

37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己亥.

외곽 양철평(불광동)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강화도와 수도를 연결하는 길을 끊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12월 16일, 각도의 감사와 병사<sup>38</sup>에게 근왕병을 이끌고 남한산성 구출작전에 참여하도록 군령을 내리고, 기전(畿甸)에 당도한 도원수 김자점과 부원수 신경원에게도 급히 달려와서 구원토록 하였다.

한편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은 산성과 외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6일 동안 남한산성의 4개 성문과 통하는 주요 교통로에 수십 명의 기병을 배치하여 산성군과 외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2월 26일, 강원도 원주 영장 권정길의 근왕병이 검단산에서 패배하고, 충청·경상도의 근왕병도 대부분 패배하거나, 중도에서 전진하지 않고 형세를 관망함으로써 남한산성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sup>39</sup>

그런데 전라 병사 김준룡은 12월 17일 남한산성에 출병하라는 유지를 받고, 각 군영의 병사를 모아 이듬해 1월 4일 광교산<sup>40</sup>에 진출하여 진을 치고, 1월 6일까지 3일간 청군과 기마전을 전개하였다.<sup>41</sup> 따라서 여기서는 김준룡의 부대와 청나라 팔기군 간의 기마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당시 기마전의 실상을 엿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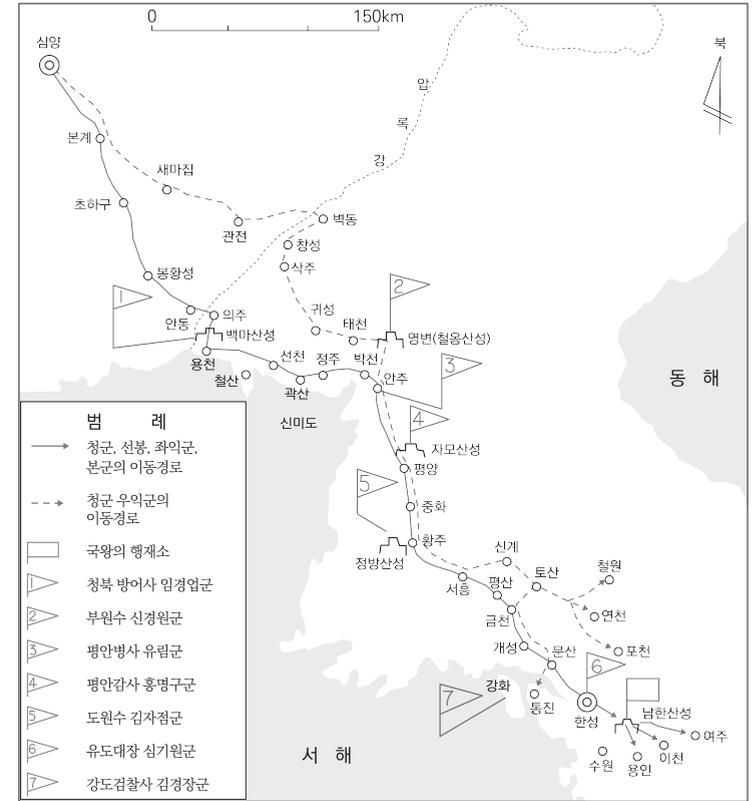
전라 병사 김준룡이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뽑아서 방진을 만들어 사면이 모두 밖을 향하게 하고 양식은 진의 중앙에 두어 적을 만나면 장차 싸울 계획으로 삼았다. 광교산에 친 진의 위치는 남한산성과 매우 가까웠다. 이때 적병과 여러 차례 접전하여 승리하였으며, 밤마다 횃불을 들고 포를 쏘아 남한산성에 들리게 하였다. 적병이 날마다 침범하여 왔으므로 살상자가 대단히 많았고 적장 백양고라가 죽었다. 하루는 적병이 산과 들에 가득히 몰려와서 먼저 전방에 있는 병영을 침범함으로 호준포를 연달아 발사하였다.

38 하삼도의 감사와 병사는 다음과 같다. 공청 감사 정세규, 공청 병사 이외배, 전라 감사 이시방, 전라 병사 김준룡, 경상 감사 심연, 경상 좌병사 허완, 경상 우병사 민영 등이다(『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庚寅).

39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58쪽.

40 광교산은 남쪽으로 수원시, 동북쪽으로 성남시 분당구, 동쪽으로 용인시 수지구, 북서쪽으로 의왕시가 자리 잡고 있다. 광교산의 정상 이름은 시루봉으로 수원과 용인의 경계에 있다.

41 『承政院日記』 仁祖 15年 2월 壬辰.



〈그림 2〉 병자호란시기 청군의 남진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350쪽에서 인용함)

화살과 돌이 비가 오듯이 떨어졌지만 아군의 진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후 2시경에 적병이 산 북쪽으로부터 후면을 엄습하여 광양 현감 최택이 놀라서 무너지니 김준룡이 급히 군사를 독려하여 힘껏 싸웠다. 날이 저무니 적이 정을 쳐서 병졸을 거두며 소리치기를, “내일을 기다려 결전하자.”고 하였다. 김준룡이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다 되고 군량이 떨어졌으니 내일 다시 싸우면 반드시 위험할 것이다.” 하고, 곧 말을 타고 수원으로 퇴진하니 군사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김준룡은 이것이 죄가 되어 파직되었다.<sup>42</sup>

42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25, 仁祖朝故事本末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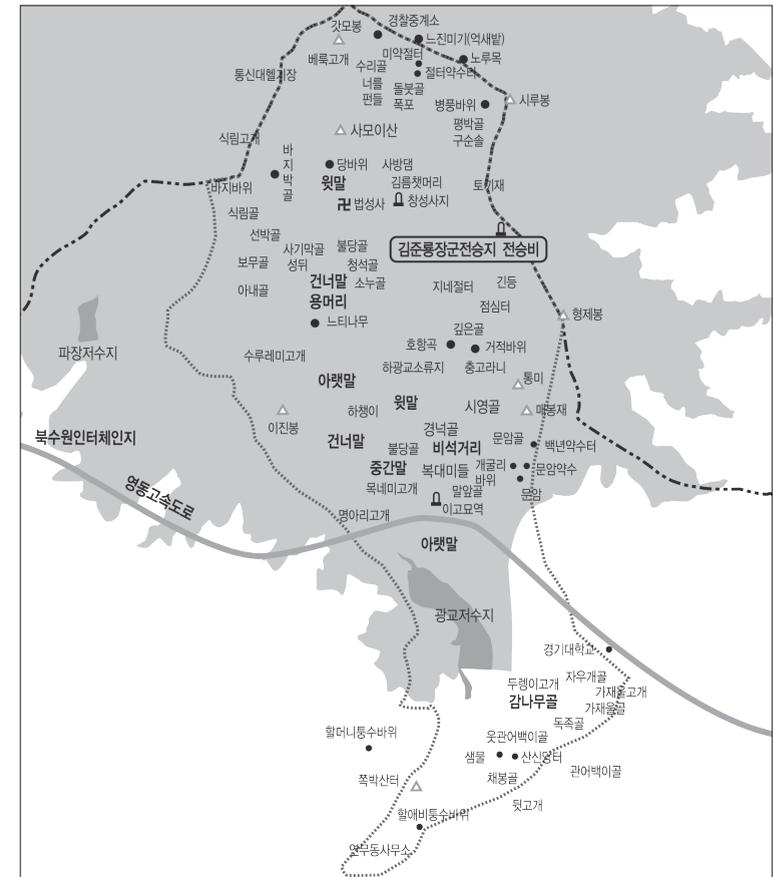
위 사료에서 전라 병사 김준룡이 수원 광고산에서 방진을 치고, 청나라 기병과 접전하여 적장 백양고라(白羊高羅)<sup>43</sup>를 죽이는 전과를 올렸지만, 수원으로 철수하던 도중에 역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것 때문에 파직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기마전의 양상은 백양고라가 죽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김준룡은 남한산성과 연락을 취하려고 군사 2,000명으로 광고산 동쪽 산림과 경사가 심한 곳(현재 용인시 수지구의 남쪽으로 추정)에 진을 쳤다. 청나라 군사는 기병이 주력군이기에 때문에 평탄하고 넓은 지형이 아니면 기병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 부대 배치였다.

한편 청나라 장군 백양고라는 기병 2,000기를 광고산 동쪽 일대(현재 용인시 수지구의 북쪽으로 추정), 즉 김준룡 부대보다 북쪽에 배치하여 남한산성과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주력군 5,000기를 이끌고 김준룡 부대의 좌우 측면으로 총공격을 감행한 듯하다.<sup>44</sup> 이때 김준룡은 보병들의 거마창(拒馬槍) 끝이 밖을 향하는 사각형의 방진을 편성하여, 그 중앙에 양식을 쌓아 두도록 하였다.<sup>45</sup> 다시 말해서 기병을 상대하는 방진이 무너지면 식량을 잃기 때문에 방진의 대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청나라 팔기병의 피해가 매우 컸을 것이다.

또한 보병대의 중앙에 포수를 배치했는데, 연달아 발사하는 호준포로 인해 청나라 팔기병의 대열이 무너지고 기동력이 크게 약화되자, 측면에 배치한 아군의 기병이 적진으로 돌격하면서 연속으로 활을 쏘았을 것이다. 이때 적장 백양고라가 아군에 의해 전사하자, 청군은 순식간에 전열이 와해되고, 김준룡의 부대가 이틈을 타서 일제히 반격을 가하여 청군을 크게 격파한 것으로 보인다.<sup>46</sup>

43 이때 전사한 패장 백양고라는 지위가 높은 청나라 장수로서 전투를 잘해서 전공을 많이 세웠다. 따라서 누루하치가 사위로 삼아 중히 여겼던 인물이다.  
 44 許穆, 『眉叟記言』 卷17, 記言 別集 丘墓文.  
 45 이흥두, 2010, 『청나라의 조선침공과 기마전』, 『역사와 실학』 42, 270쪽.  
 46 許穆, 『眉叟記言』 卷17, 記言 別集 丘墓文.



〈그림 3〉 광고산 기마전의 추정지역

그런데 백양고라의 부대가 패배하자, 청군은 원정군의 본군과 우익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본군은 몽고병 파달리(巴達禮)의 보·기병 3만과 한병(漢兵) 공유덕(孔有德)의 보·기병 1만이며, 우익군은 경중명(耿仲明)의 보·기병 1만<sup>47</sup>을 지칭한바, 보·기병 총 5만 명이 안개 낀 새벽을 틈타 사망으로 기습하여 들과 산에 청군이 가득하였다. 적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자, 김준룡은 사방 방어진을 편성하고 부대를 4면에 배치하였다.<sup>48</sup>

47 공유덕과 경중명은 명나라를 배반하고 청나라에 항복한 장수이다(『仁祖實錄』 卷34, 仁祖 15年 2月 壬申).  
 48 許穆, 『眉叟記言』 卷17, 記言 別集 丘墓文.

이때 김준룡의 병력은 숫자에서 열세였다. 청나라 파달리와 공유덕 및 경중명이 지휘하는 경기병 수만 기가 여명을 틈타 측면에서 아군에게 활을 쏘며 공격했는데, 당시는 조준점을 이동시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았다. 그 형세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듯 하였다. 즉 뛰어난 활 솜씨와 기마술, 그리고 강력한 활로 무장한 경기병대가 아군의 주변을 돌며 화살을 날렸다.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팔기병을 상대로 응사하다가는 화살을 소진하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체력을 소모하거나, 대형이 허술해질 위험이 컸다. 따라서 대부대의 팔기병을 본 아군의 장병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전라 병사 김준룡이 군사들 앞에서 장검을 잡고 맹세하고는 화살이 쏟아지는 곳에 서서 죽기로 싸울 뜻을 보이자, 군사들이 모두 죽을힘을 다해 싸웠다. 청군이 진격과 퇴각을 반복하여 하루 종일 양군이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면 김준룡이 휘하의 군사 2,000명으로 5만의 청나라 군사를 상대한 기병전술은 무엇일까. 그것은 청군이 5만의 보·기혼성군이었지만 기병이 주력군인 사실을 간과하고 산 쪽의 계곡과 험한 지형에 방어진을 구축함으로써 기병의 기동력을 약화시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계곡과 험준한 산악지형은 청나라 기병에게는 필패 지역으로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평탄하고 넓은 지역이 아니면 청나라 팔기병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밀집대형의 약점은 언제나 측면과 후면이므로 청군의 경기병이 김준룡 부대의 이곳을 노렸다. 즉 아군의 좌영으로 돌격하면서 한편으로 날랜 경기병이 아군의 후방에 있는 고개를 몰래 넘어가 상봉을 먼저 점거하고는 화살을 비가 오듯 쏟아냈다. 김준룡이 기병 수백 기를 출격시켜 앞을 다투어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지금 바로 충신이 나라에 보답할 때이다.” 라고 하니, 전투에 임했던 군사들이 모두 일당백으로 싸웠다.

그때 청나라 군사 중에 갑옷을 입고, 깃발을 잡고 있던 자가 봉우리 위로 말을 타고 올라가더니 큰 깃발을 세우고 군사들에게 호령하자 군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김준룡이 그자를 가리키며 또 말하였다.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적들이 몰려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독려하여 총포를 일제히 발사하니, 깃발을 들고 군사들에게 호령하던 자와 좌우에 서 있던 추장들 가운데 함께 탄환에 맞아 죽은 자가 여러 명이었고, 청나라 군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즐비하여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반면에 아군의 전사자는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sup>49</sup> 그러나 오후 2시경에 청군이 경기병을 아군의 후방으로 우회시켜 높은 봉우리 정상을 빼앗아 점거하자 그곳을 수비하던 아군의 병사가 패배하여 장차 지탱하기가 어려운 형세가 되었다.

그런데 밤 2시경이 되었을 때 김준룡이 군중을 검열하니 포탄과 군량은 이미 다 떨어졌음을 알았다. 따라서 날이 밝으면 청군이 반드시 들이닥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부대를 이동하여 군사를 휴식케 하려고 횃불을 피워서 마치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밤에 몰래 퇴각하였다. 아침이 되어 청군이 몰려왔는데, 보루(堡壘)가 비었어도 복병이 겁나서 감히 추격하지 못하였다.

한편 김준룡 부대의 군사들은 후퇴하는 동안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청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허기져 굶고 피로가 겹쳐 차례로 주저앉았다. 본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김준룡은 군사를 이끌고 수원으로 퇴진했는데, 이때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김준룡은 이것이 죄가 되어 결국 파직되었다.

그동안 김준룡의 광교산 전투는 병자호란 중에 청군과 싸운 최대의 전투이자, 최초의 대승이었다. 그렇다면 당시는 왜 김준룡을 패전의 주체로 인식하였을까. 그것은 인조정권의 관료들과 전라 감사 이시방이 삼전도의 굴욕을 그에게 덮어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다음의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가) 공청 감사 정세규, 공청 병사 이의배, 전라 감사 이시방, 전라 병사 김준룡, 경상 감사 심연, 경상 좌병사 허완, 경상 우병사 민영 등에게 하유하기를, “적병이 남한산성을 포위해서 위협한 지 지금 7일째로, 상하 군신이 고립된 성에 의지하여 위급하기가 한 올의 터력과 같은 급박한 형세라는 것을 경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들으니, 서북의 장수들도 모두 병력을 이끌고 이미 기전에 도착했다고 한다. 경은 밤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앞뒤에서 합세하여 공격하여 기어이 적을 소멸시키고 위급한 군부를 구하라. 그리고 오늘 여러 곳에 보낸 유지는 시일이 지체될 염려가 없지 않으니, 경은 아주 급하게 전송하라.”고 하였다.<sup>50</sup>

49 許穆, 『眉叟記言』 卷17, 記言別集 丘墓文.

50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12月 庚寅.

나) 강원 감사 조정호의 장계가 들어 왔는데, 건치(乾雉) 4수(首)를 올렸다.

그 장계에 “춘천 영장 권정길이 군사를 거느리고 검단산에 주둔하면서 여러 차례 싸워 많이 이겼는데, 갑자기 청나라 군사가 뒤를 엄습하는 바람에 무너졌고, 조정호는 현재 용진에 주둔하면서 흩어진 군졸을 수습하여 북병(北兵)을 기다렸다가 연합작전으로 진격할 계획이다.”고 하였다.<sup>51</sup>

다) 남병사 서우신과 함경 감사 민성휘가 군사를 합쳐 양근의 미원에 진을 쳤는데, 군사가 2만 3,000 정도였다. 평안도 별장이 800여 기병을 거느리고 안협에 도착하였다. 경상 좌병사 허완은 군사를 거느리고 쌍령에 도착했는데, 교전하지도 못하고 군사가 패하여 죽었으며, 우병사 민영은 한참동안 힘껏 싸우다가 역시 패하여 죽었다. 충청 감사 정세규가 진군하여 용인의 험천에 진을 쳤으나 적에게 패하여 생사를 모른다고 하였다.<sup>52</sup>

위 사료 가)는 인조가 충청 감사 정세규 등에게 남한산성의 적을 소멸시켜 군부를 구하라는 하유이고, 나)는 강원 감사 조정호가 장계를 올려 전투 상황을 전한 내용이며, 다)는 도원수 심기원이 장계를 보내 구원병이 대부분 패배했음을 말하고 있다. 가), 나), 다)를 종합해 볼 때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가 근왕의 명을 내리자, 전국의 감사와 병사 및 영장 등이 군사를 이끌고 기전에서 청나라 팔기병과 교전하였으나, 전라 병사 김준룡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배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준룡의 상급자였던 전라 감사 이시방은 청나라 팔기병이 두려워 김준룡을 구원하러 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준룡이 공을 세운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여 전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또한 종사관 박서도 이전에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인조에게 김준룡을 비방하는 말을 올렸다. 결국 김준룡이 죄를 받게 되자, 대신 이성구와 최명길이 전투에서 승리한 상황에 대하여 극구 설명하면서 “전공은 많고 사실상 죄는 없다.”고 아뢰었다. 이 때문에 이시방은 귀양을 가고 김준룡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up>53</sup>

51 『仁祖實錄』卷34, 仁祖 15年 1月 丙午.

52 『仁祖實錄』卷34, 仁祖 15年 1月 乙卯.

53 許穆, 『眉叟記言』卷17, 記言別集 丘臺文.

#### 4. 맺음말

이상에서 병자호란시기 남한산성과 광교산의 기마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수도 한성의 방어선 붕괴와 남한산성 군대의 성 밖 기마전 및 전라 병사 김준룡의 광교산 기마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병자호란 때 청나라 팔기병에게 패배한 것은 정묘호란 후, 보병 중심 전술체계를 기병 중심의 전술체계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조반정 세력의 ‘승명반정’의 외교정책 실패, 청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 평산 이북의 변방 방어력을 인근의 산성으로 이동시켜 이를 거점으로 청군의 남하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적 실패, 12월 26일 강원도 근왕병 원주 영장의 검단산 패배, 27일 충청·전라·경상도의 근왕병이 수원 광교산에 진출했지만 이들 근왕병 대부분이 패배하거나, 중간에 형세를 관망한 사실, 남한산성군의 북문 기마전의 패배 등이 병자호란을 패전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수도 한성의 방어선 붕괴와 남한산성 군사의 성 밖 기마전의 패배는 임진왜란 때의 보병 중심 전술체계를 여진족 중심의 기병 중심 전술체계로 전환하는 때를 실기한 것이 기마전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한편 전라 병사 김준룡의 광교산 기마전은 전략·전술적 양상이 승패를 좌우한 바, 그 대체적인 양상은 부대 배치와 보병과 기병의 유기적 관계가 핵심이다. 김준룡은 남한산성과 최단거리인 광교산의 산기슭에 진을 치기 전에 먼저 척후병을 멀리 보내서 정찰을 하고, 부대를 정돈하여 대열을 유지하면서 행군을 하였으며, 체찰사 종사관 박서가 죽산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자, 임금을 구원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기병이 열세한 김준룡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형의 이점을 용병에 활용하였다. 기병이 보병과 싸울 때 산림과 경사지, 소택, 험준한 지형과 마주치면, 신속히 그와 같은 지형에서 이탈해야 한다. 이러한 곳은 기병으로서의 필패 지역이므로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은 병법의 기본에 해당한다. 만약 기병이 보병과 전투를 한다면 평지를 전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청나라 군사는 병력이 대규모라는 것을 믿고 무모한 전투를 시작하였다. 자기 군의 병력 규모가 적군보다 월등히 클 때는 험한 지형이나 장소에서 싸워서 안 된다는 것 역시 병법의 기본이다. 반면에 김준룡은 휘하의 군사 2,000명으로 청나라 보 기혼성군 5만 명을 상대로 교전한바, 청나라 팔기병의 뛰어난 활 솜씨와



〈그림 4〉 충양공김준룡전승지 전승비

마상무예 및 기동력에 밀려 패배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다. 그러나 청나라 군사 중 기병이 주력군인 사실을 간과하고 산림이 우거진 계곡과 험한 지형에 방어진을 구축함으로써 팔기병의 기동력을 약화시켰으며, 그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김준룡의 다양한 기병전술과 기마전에 대한 높은 전술적 이해 및 대규모 팔기병 부대의 취약점을 간과하여 지형의 이점을 용병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양상의 광교산 기마전 승리는 조선 후기 군제개혁을 한층 심화시켰다. 즉 현

종 11년(1670)에는 정초청(精抄廳)의 기병군단(騎兵軍團)을 설치케 하였고, 숙종 8년(1682)에는 지방에 설치된 특수기병대인 친기위(親騎衛)와 정초군을 합하여 금위영(禁衛營)을 창설케 하였다. 이것은 곧바로 정조 때 말을 타고 적을 무찌르는 마상무예의 체계화로 이어졌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강화와 북벌을 실현하기 위해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 친위부대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당시 장용영에서는 기마전을 위한 마상무예를 훈련하는 한편으로 『무예보통지』의 편찬과 간행을 주도하였다. 특히 정조가 청나라 팔기병과의 기마전을 전제로 편찬한 『무예보통지』는 북벌을 준비하는 중에 만들어진 18가지 동작의 『무예신보』에 마상무예 여섯 가지를 추가하여 만들었다.

중전에는 김준룡의 광교산 기마전을 패배한 전쟁으로 이해하였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 승리한 전쟁으로 이의를 제기해 보았다. 이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공과를

평가할 때 군사적 측면과 정치 당파적 측면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따라 그 해답이 달라질 수 있다. 김준룡의 광교산 기마전은 병자호란 중에 청군과 싸운 최대의 전투이자, 최초로 승리한 전투였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다만 전투 후반에 청군은 일단 철수했다가 아군을 진지로 유인한 다음, 기습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이때 김준룡의 부대는 탄환이 이미 다 떨어졌고, 군량미도 고갈되어 야음을 틈타 광교산에서 평지로 내려왔는데, 이때 청나라 팔기군에게 기습을 당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전라 감사 이시방이 이끄는 후방의 본대 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군사들이 흩어지자 김준룡 부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투고일 2022년 4월 30일 심사일 2022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0일

## 참고문헌

### 자료

『인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연려실기술』; 『미수기언』.

### 논문

- 강건작, 2005, 『무기와 전술』, 윌커뮤니케이션.
- 노영구, 2016, 『조선후기의 전술-『병학통』을 中心으로』, 도서출판 그물.
- 서태원, 1999,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도서출판 혜안.
- 심승구 외, 1998,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 이홍두, 2020, 『한국 기마전 연구』, 도서출판 혜안.
- 임용한, 2001, 『전쟁과 역사-삼국편』, 도서출판 혜안.
- 유재성, 1996,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前篇』, 국방군사연구소, 323쪽.
- 유재성, 1986, 『병자호란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최형국, 2013,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도서출판 혜안.
- 노영구, 1997, 「선조대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노영구, 2002,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 13.
- 노영구, 2002, 「조선후기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기인, 2000, 「18세기 북벌론과 대청방어전략」, 『군사』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이민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연구」, 『한국사론』 34, 서울대 국사학과.
- 이원순, 1985, 「임진·정묘왜란시의 조선포로 노비문제」,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 이홍두, 2000, 「조선 초기 야인정벌과 기마전」, 『군사』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이홍두, 2002,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군사사 연구총서』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이홍두, 2008, 「병자호란 전후 江都의 鎭堡 설치와 관방체계의 확립」, 『인천학연구』 9.
- 이홍두, 2010, 「청나라의 조선침공과 기마전」, 『역사와 실학』 42.
- 이홍두, 2020, 「병자호란 이후 전술의 변화와 기병대 창설」, 『한국 기마전 연구』, 도서출판 혜안.
- 최소자, 1990, 「중국측에서 본 丁卯·丙子兩役」, 『한국문화연구원논집』 57.
- 허태구, 2009, 「병자호란의 정치 군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요약

이 연구는 병자호란시기 남한산성과 광교산의 기마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1636년(인조 14) 12월 8일 압록강을 도하한 청군의 선봉대는 12월 14일, 한성의 양철평(현재 불광동)에 진출하여 서울과 강화도를 잇는 도로를 차단하였다.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다음 날 새벽에 강화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선봉대가 12월 15일에 남한산성 서쪽 판교에 진출함으로써 강화도 진출이 무산되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인조는 12월 16일 전국의 감사와 병사에게 근왕병을 이끌고 남한산성 구출작전에 참여토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기전(畿甸)에 모인 전국의 근왕병들이 전라 병사 김준룡(金俊龍)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하였다. 한편 외부의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남한산성의 산성군은 도체찰사 김류가 남한산성 맞은편 상사창리 방면으로 300여 기의 기병을 출격시켰다. 그러나 패배하여 별장 신성립 지어해 이원길 등 300여 명의 군사가 전멸하였다.

김준룡은 1637년(인조 15) 1월 4일 수원부 광교산에 진출하여 진을 쳤다. 그런데 진을 친 지형은 병력의 숫자가 열세했기 때문에 광교산 동쪽 산림이 울창하고 경사가 심한 지형을 선택하였다. 결국 김준룡의 보병대가 발사하는 호준포 공격으로 청나라 군대의 대열이 무너지자, 측면에 배치한 아군의 기병이 연속으로 활을 쏘았다. 이때 적장 백양고라가 전사하였다. 따라서 청군은 순식간에 전열이 와해되고, 김준룡의 부대가 이 틈을 타서 일제히 반격을 가하여 청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그런데 백양고라가 패배하자, 청군은 5만 명의 지원을 받아 일부의 경기병으로 아군의 후방을 쳤다. 그리고 높은 고지를 빼앗아 점령하자, 그곳을 수비하던 아군의 병사가 후퇴하였다. 김준룡은 포탄과 군량이 다 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밤 2시에 수원으로 퇴각했는데, 이때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결국 김준룡이 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준룡은 대신 이성구와 최명길의 변호로 패장의 불명예를 벗어났으며, 모함했던 전라 감사 이시방은 귀양을 갔다.

**주제어** : 남한산성, 광교산의 기마전, 강화도, 호준포 공격, 김준룡, 적장 백양고라, 전라 감사 이시방, 최명길

## ABSTRACT

### The Cavalry Battle at Namhan Fortress and Gwanggyo Mountain during the Qing's Invasion of Joseon in 1636

Yi, Hong-Du

This study examines the cavalry battle of Namhan Fortress and Gwanggyo Mountain during the Qing's Invasion of Joseon in 1636..7. On December 8, 1636 (king Injo 14th year), the vanguard of the Qing's army that crossed the Apruk..river advanced to Yangcheolpyeong (now Bulgwang..dong) in Hanseong on December 14 and blocked the road connecting Seoul and Ganghwado..island. King Injo evacuated in a hurry to Namhan Fortress and tried to go to Ganghwado..island at dawn the next day. However, the advance into Ganghwado..island was dissipated by Qing's vanguard advancing to Pangyo, the west of Namhan Fortress on December 15th.

King Injo, who was placed in a fight alone and unaided situation, ordered the provincial governors and military to participate in the Namhan Fortress rescue operation on December 16, leading guards soldiers. However, all the guards soldiers gathered in Gijeon(畿甸) were defeated except for Jeolla military Kim Jun..ryong. Meanwhile, the fortress army of Namhan Fortress, which could not receive external military help, was sortied by Dochechalsa Kim Ryu with 300 cavalry troopers in the direction of Sangsachang..ri opposite Namhan Fortress. However, they were defeated and about 300 soldiers including Byeoljang Shin Seong..rip, Ji Yeo..hae, and Lee Won..gil were annihilated.

Kim Jun..ryong advanced to Suwon..bu Gwanggyo mountain and encamped on January 4, 1637 (king Injo 15th year). However, since the number of his troop was inferior in the terrain where he encamped, he chose the lush and steep terrain

to the east of Gwanggyo mountain. Eventually, when the ranks of Qing's forces collapsed in the Hojunpo attack fired by Kim Jun..ryong's infantry, the friendly cavalry placed on the flanks fired in succession. At this time, the enemy general Baekyanggora was killed. As a result, the Qing's army was disbanded in an instant, and Kim Jun..ryong's unit took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counterattack in unison, greatly defeating the Qing's army. However, when Baekyanggora was defeated, Qing's army, supported by 50,000 men, struck the rear of our army with some light cavalry. And when the high ground was seized and occupied by the enemy, the friendly military that was guarding the place retreated. Kim Jun..ryong, recognizing the fact that shells and military supplies had run out, retreated to Suwon at 2 pm, and at this point, all his soldiers scattered and fled. In the end, Kim Jun..ryong was convicted for that. However, the conspirator Jeolla provincial governor Lee Shi..bang went to exile, and instead owing to the defense of Lee Seong..gu and Choi Myeong..gil, Kim Jun..ryong escaped the disgrace of being a defeated general,

**Key words** : Namhan Fortress, the cavalry battle of Gwanggyo Mountain, Gwanggyo Mountain, Ganghwado-island, the Hojunpo attack, the enemy general Baekyanggora, he conspirator Jeolla provincial governor Lee Shi-bang, Choi Myeong-gil

# 제암리 학살사건의 기억과 계승(Ⅰ)

: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조성운\*

1. 머리말
2. 일제하의 기억 : 왜곡과 은폐,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3. 해방 이후의 기억 : 학살 이미지의 확대와 강화
4. 결론

## 1. 머리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통계청에서 2019년 2월 26일 발표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3·1운동을 대표하는 단어 나 이미지는 유관순(43.9%),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14.0%), 독립·해방·광복(9.6%), 구국·독립·항일운동(8.1%), 태극기(7.4%)의 순이었다.<sup>1</sup> 이 조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인들은 유관순을 3·1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이미지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 탄압이며 학살사건으로

\* 동국대학교 대우교수(Dongguk University), E-mai : choseongwoon@hanmail.net, Tel : 010-4726-1686

1 문화체육관광부, 2019,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13쪽.

알려진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응답은 0.1%<sup>2</sup>에 불과하여 한국인들은 제암리학살 사건을 3·1운동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응답률이 이와 같이 낮은 것은 한국인들이 이 사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이 3·1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史實)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이 사건을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학살’의 대표적 이미지로 확대·강화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암리학살사건이 이와 같은 이미지로 기억되게 된 원인과 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비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암리학살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946년과 1959년에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이 건립되었다. 특히 1959년에 건립된 기념탑은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3·1운동순국기념탑’이라는 제자(題字)를 보내 올 정도였다. 그리고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사태가 발생하자 제암리학살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해 안치가 이루어졌고, 제암리학살사건 터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었다. 또 1993년에는 제암리3·1정신교육관이 개관되고, 2001년에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이 개관되었으며, 2016년에는 기념관에 학예팀이 신설되어 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1968년에는 종교법인 다카다 마바(高田馬場) 교회의 목사 오야마 레이(尾山命仁)가 ‘한국제암교회소타사건사죄위원회’를 조직, 모금을 통하여 제암리에 속죄교회를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제암리3·1운동유족회’에 해오기도 하였다.<sup>3</sup> 따라서 일본 내에서도 제암리학살사건의 잔학상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모임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암리학살사건은 한일 양국에서 기억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각종 오류와 과장, 그리고 ‘탄압과 학살’이라는 이미지로만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방 이후 이 사건을 종교적·정치적·외교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연구가

2 문화체육관광부, 2019,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16쪽.

3 「3·1유족회서 거부」, 『경향신문』 1968년 3월 2일.

상당히 진척<sup>4</sup>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기억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독교와 천도교의 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본고는 제암리학살사건의 오류와 과장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탄압과 학살’이라는 기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계승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1961년까지로 제한할 것이다. 이는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반공과 민족주의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시도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일제의 처리 과정, 그리고 민족운동세력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활용했는가를 살피고, 해방 직후 신문 기사의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그 기억이 강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일제하의 기억 : 왜곡과 은폐,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조선소요사건총계일람표(朝鮮騷擾事件總計一覽表)』(1919년 4월 盡日調)와 『조선소요사건경과개람표(朝鮮騷擾事件經過概覽表)』에 따르면 일제는 3·1운동이 시작된 3월 1일부터 군대를 동원하였고 발표는 3월 3일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4월 20일까지 거의 매일 보고되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표 보고가 없는 날은 7일에 불과

4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동례, 1981,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 뿌리깊은 나무; 김선진, 1983, 『제암·고주리의 3·1운동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이덕주, 1997,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정민, 1997, 「제암리교회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1997, 「제암리교회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성주현, 2001,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수원문화사연구회; 김승태, 2008, 「일제의 제암리교회 학살·방화사건 처리에 관한 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지영, 2008, 「제암리학살사건의 전개와 성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근, 2015,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수원역사문화연구』 5, 수원박물관; 신효승, 2018, 「일제의 제암리학살사건과 미국 선교사 기록의 형성 과정」, 『학림』 41, 연세사학연구회; 홍민지, 2019, 「역사교육방법론연구-제암리학살사건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였다.<sup>5</sup> 최초의 사망자는 3월 3일 황해도 수인<sup>6</sup>과 평남 안주군, 평남 강서군에서 발생하였다.<sup>7</sup>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에서는 3월 6일 개성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4월 27일 파주군에서 2명<sup>8</sup>이 사망한 것까지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매일신보』에도 보도되었던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가 『조선소요사건총계일람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조선소요사건경과개람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측의 기록을 이용할 때 주의가 요청된다.

참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시위는 54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상해를 입은 3월 10일의 평남 맹산군 맹산읍의 시위였다고 일제는 기록하고 있다.<sup>9</sup> 그런데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이 기록보다 훨씬 많은 수의 희생자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총독부의 기록보다 희생자가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일제는 3·1운동 초기부터 무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조선소요사건총계일람표』에는 일본 측의 사상자의 수를 군대, 헌병, 경찰,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로 보아 군대, 헌병, 경찰 등이 3·1운동을 진압하는 데 동원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암리학살사건에 관한 일제 측의 최초 보고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919년 4월 16일 저녁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가 일본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이다. 이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수원군 발안장에서 15일 오후 2시 내지 3시 사이에 약 400명이 군 집하여 소동하여 일단 해산시켰으나 다시 예수교도가 폭행하려는 차에 군 경 협동으로 진압하여 폭민 사망자 32명, 부상자 약간, 그때 불이나 가옥 28동이 불탔다.(천도교회당, 예수교회당 포함)<sup>10</sup>

5 이양희, 2013, 「일본군의 3·1운동 탄압과 대응-『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19쪽.  
 6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騷擾事件總計一覽表』(1919년 4월 盡日調), 55쪽.  
 7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騷擾事件總計一覽表』(1919년 4월 盡日調), 65쪽.  
 8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騷擾事件總計一覽表』(1919년 4월 盡日調), 1~18쪽.  
 9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騷擾事件總計一覽表』(1919년 4월 盡日調), 68쪽.  
 10 「密第102號 其201 第2號 朝督第107號 電報譯」(大臣계 발신자 조선군사령관 4월 16일 오후 10시 0분 발,

그리고 4월 17일과 4월 22일에는 이를 정리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수원군 향남면 4월 15일 오후 2시 동면 발안장에서 군중 약 400명이 불온한 상황이 있으므로 동지 주재 순사가 이리타(有田) 보병 중위와 협력하여 해산시켰다. 동군 동면 15일 오후 3시 동면 제암리(발안장 서남 약 15町에 있음) 야소교회 당에 교도 30여명이 집합하여 불온한 상황이 있으므로 척후병사가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폭거로 나오므로 부득이 발포했다는 취지의 급보를 접하고 수비병 및 주재순사 1명, 순사보 2명이 현장에 출장하여 해산시켰다. 그 때 발포 및 방화에 의해 사상자와 소실된 가옥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약 20명
2. 부상자 1, 2명으로 예측됨
3. 소실 가옥 18동 가운데 천도교회당 1동, 야소교회당 1동이 있음<sup>11</sup>

(1)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기보(제50) 15일 동면 제암리에서의 소요 속보는 다음과 같다.

1. 출동 인원은 보병 11명, 순사 1명, 순사보 1명으로서 지휘관은 이리타(有田) 보병 중위이다.
2. 척후병은 야소교회당에 폭민이 집합(전보에 30명으로 되어있음은 약 300명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자 곧 해산을 명령하였는데 그들이 투석 폭행으로 나오므로 발포한바 그 총성에 의하여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수비대가 곧 현장으로 급행하여 발포로 해산시켰다.
3. 죽은 자는 20명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나 부상자 1명은 도주하여 행방 불명이다.
4. 소실 가옥은 28호(전보에 18동으로 되어 있으나 강풍으로 인하여 밤에 연소하여 28호가 되었다).<sup>12</sup>

4월 17일 오전 7시 25분 차(김승태, 2008, 「일제의 제암리교회 학살·방화 사건 처리에 관한 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19~420쪽 재인용)

11 「騷密第343號:秘受04620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五十報)」(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12 「騷密第421號:秘受04656號 獨立運動二關スル件(第五十一報)」(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4월 17일 보고는 4월 16일 보고를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보이나 4월 22일 보고는 4월 17일 보고에 비해 수정되었다. 즉 제암리교회에 모인 주민의 수를 3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 수정하였고, 출동한 군대와 경찰의 수를 명확히 하면서 순사보는 2명이 아니라 1명이었다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부상자 1명이 도주하였으며, 밤새 강풍이 불어 소실된 가옥이 18동에서 28동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4월 17일에는 제암리교회에 모였던 “주민들이 불온하여 척후병사가 해산시키려 하자 불응하고 폭거로 나오자 발포하였다.”는 것을 “야소교회당에 폭민이 집합한 것을 발견하자 곧 해산을 명령하였는데 그들이 투석, 폭행으로 나오므로 발포”하였고, “그 충성에 의하여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수비대가 곧 현장으로 급행하여 발포로 해산”시켰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암리교회에 모인 주민들은 일제 군대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불온하므로 척후병이 해산을 명하였으나 폭거 혹은 투석, 폭행하였으므로 발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는 고지마(兒島) 경무총장, 조호지(淨法寺) 사단장, 오노(大野) 참모장, 아마모토(山本) 참모 등과 회의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도 제암리 주민이 다음과 같이 저항하므로 살육하였다는 것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사실을 사실로서 처분하면 아주 간단하겠지만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毒筆을 휘두르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虐殺, 放火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제국의 입장은 심히 불이익이 된다. 한편으로는 조선 안에 暴民을 增長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압에 종사하고 있는 將卒들에게 疑惑의 念을 불러일으키는 不利가 있으므로 저항했으므로 살육한 것으로 하여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밤 12시에 산회하였다.<sup>13</sup>

13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 編, 2007,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 3, 岩波書店, 245쪽.

결국 일제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도 대외정책 및 3·1운동 진압에 동원된 일본 군대와 헌병, 경찰 등의 사기를 고려하여 조선인이 투석, 폭행하였기 때문에 살육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일신보』는 이러한 조선주둔군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원방면의 형세가 험악한 것은 기보와 같거니와 또 지나간 15일에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야소교당 교도가 봉기하여 폭행을 하였으므로써 보병과 및 경관은 출동하여 군중 편에 사상자 20명을 내었으며 또 이러한 중에 어디서 불이 나서 10여 호를 소실하였더라.<sup>14</sup>

그리고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京城日報)』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는 15일 동지 야소교회당에서 다수의 교도가 모여 소요에 나서려 하기 때문에 보병 및 경찰관은 바로 출동하여 그들에게 해산을 명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고 폭행을 마음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발포한 결과 폭민측에 사망자 20명을 내고 혼란 때문에 수십 호의 가옥이 소실되었다.<sup>15</sup>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선총독부의 제암리학살사건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군지역 3·1운동에 대해 일제는 하세베(長谷部) 대위 일행은 4월 2일부터 6일까지, 쓰무라(津村) 소장 일행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소요범인’ 검거에 종사하여 51개 마을에서 803명을 검거하고 1,200여 명을 방면하였다.<sup>16</sup>

14 「又復暴動 사상자가 이십명 가옥 십여호 소실」, 『매일신보』 1919년 4월 19일.

15 「水原尙不穩 耶蘇教徒結合して騷擾」, 『京城日報』 1919년 4월 19일(국학자료원, 1977, 『3·1運動』 2, みずぎ書房, 310~311쪽).

16 「檢擧八百名 水原の暴民」, 『京城日報』 1919년 4월 22일.

특히 헌병특무조장인 쓰무라는 하사 이하 6명, 경찰관 4명, 후루야 기요다케(古屋清威) 수원경찰서장이 이끄는 경찰서원 7명, 보병 15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수원군 일대에서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들은 제암리학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암리학살사건은 아리타 중위가 이끌던 진압부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하세베 대위 부대, 쓰무라 헌병특무조장 부대, 아리타 중위 부대 등을 파견하여 수원군지역의 3·1운동을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리타 중위 부대에 의해 제암리학살사건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암리학살사건은 기독교회당이 불에 타고 그 안에서 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에 대해 기독교 세계인 미국과 유럽은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버그홀츠(L. J. Bergholz) 미국 총영사는 “4월 15일 서울에서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15개 마을이 불탔으며, 주민 가운데 몇몇이 총살당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집도 먹을 것도 없이 이웃 산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끈질기게 나도는 가운데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11개 교회가 불탔다는 정보<sup>18</sup>를 얻어 커티스(R. S. Curtice) 영사에게 수원 부근의 마을이 소실되고 주민은 학살되었다는 소문의 진위를 조사,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9</sup> 커티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저의 1919년 4월 23일자 보고서 제35호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 기 총영사관의 커티스 영사를 제암리에 출장시켜 일본군이 촌락을 불태웠고 30명을 학살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들어온 소식에 따라 일본군은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마을 교회에 모이도록 하여 교회 내에서 35명을 학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5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10명이며 천도교인이 25명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교회 안에 갇힌 남편을 구하려던 부인 2명도 노상에서 사살되었습니다.<sup>20</sup>

이에 대해 노블 선교사와 헤론 스미스 목사는 하세가와 총독과의 면담에서 “노블 박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진실이라고 말한 후 제암리 사태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관련 부대의 장교와 사병들은 처벌되었다<sup>21</sup>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결국 조선총독은 미국 측의 항의가 있자 비로소 학살의 진상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인정 대상은 미국정부였으며,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선인이 투석, 폭행하였으므로 죽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도된 것 중 하나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천도교가 발행한 『천도교회월보』의 다음 기사이다.

동년 4월 15일 본구 관내 향남면 제암리 전교사 안중환 외 김홍렬, 김기훈, 김기영, 안경순, 김성렬, 홍순진, 안중린, 김기세, 안운순, 안상용, 안정옥, 안종정, 안중화, 김세열, 안자순, 안호순 제씨는 그곳 즉 야소교당에서 무고히 敎의 혐의로 燒殺을 당하고 곳곳마다 고초에 있었다.<sup>22</sup>

또 다른 기사는 “수원 부근에 잊지 못할 ‘제암리’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코리아).<sup>23</sup>라는 질문을 게재한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그리고 1923년 『조선일보』가 수원수비대의 해산을 보도하면서 “대정 8년(1919년-인용자)에 세계의 이목을 놀래이던

17 강덕상 편, 『騷密第745號, 1919년 4월 23일, 特別檢擧班의 行動에 關한 件 報告(通牒)』.

18 「제암리만행사건에 대해 서울 주재 프랑스영사관 부영사 Mr. E. Gallois가 주일 프랑스대사 Mr. Bapst 및 본국 외무성 Mr. Pichon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김승태, 1997,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8쪽).

19 「제암리만행사건에 대해 서울 주재 프랑스영사관 부영사 Mr. E. Gallois가 주일 프랑스대사 Mr. Bapst 및 본국 외무성 Mr. Pichon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김승태, 1997,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8쪽).

20 「주서울 미국총영사 보고」(김승태, 1997,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9쪽).

21 「주서울 미국총영사 보고」(김승태, 1997,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21쪽).

22 「천도교 수원교구 약사」, 『천도교회월보』 1926년 11월호, 30쪽.

23 「應接室」, 『동아일보』 1929년 12월 20일.

독립만세의 소리가 널리 동서에 들림을 따라 수원에서도 대대적으로 시위하던 것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으나 이때에 불시로 수원 일경에 위엄을 보이려고 해체하였던 수비군은 다시 조수 밀리듯이 들어와서 가진 것을 다하던 수원수비대<sup>24</sup>라 하여 ‘가진 것을 다하던 수원수비대’라는 표현으로 제암리학살사건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 보도된 이 세 기사는 일제하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천도교회월보』의 기사에는 학살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동아일보』의 기사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堤岩里’라는 한자를 답해 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고, 『조선일보』는 ‘가진 것을 다하던 수원수비대’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철저히 기사를 검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서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향남면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는 일본군이 그 마을의 기독교 신자 35명 전원을 교회로 소집했다. 그런 다음 일본군은 문을 잠그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일본군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총살했다.<sup>25</sup>

이 기록은 당시 수원군 음덕면장 김준현이 1919년 4월 23일 윤치호를 방문하여 전한 것으로 35명이 학살당하였다는 것이다. 음덕면장 김준현이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므로 당시 수원군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자 35명’이 학살당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카션 켄달(Cartion W. Kendal)의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The Truth about Korea)』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리고 윤치호는 조합교회의 목사인 와다세가 수원사건(제암리학살사건-인용자)의 피해자에게 밀 200가마를 기부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 허가 신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경기도는 신청을 허가하면 감리교와 장로교도 신청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와다세 목사의 끈

24 「수비대를 해산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에 새로 두었던 수원수비대」, 『조선일보』 1923년 3월 24일.

25 『윤치호일기』 1919년 4월 23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질긴 청원으로 피해자들 가운데 조합교회 신자들에게만 밀을 나누어 준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청이 허가하지 않았던 이유를 일본군과 헌병이 수원에서 자행한 끔찍한 일은 비밀에 부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sup>26</sup> 이는 조선총독부가 3·1운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마련한 민심수습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즉 조선총독부는 수원군지역에서 부상자 치료, 급식, 소실된 집의 복구 등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1919년 4월 20일, 23일, 25일에 『매일신보』의 기사로 보도<sup>27</sup>된 바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와다세 목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시위 피해자의 구제는 조선총독부가 전담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하고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의 개입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치호는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대외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은 없으나 자신의 일기에서는 “정의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오늘 『서울프레스』에서 영국인이 암리차르에서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를 일본인이 수원에서 보여 준 잔인한 행위와 비교하며 이렇게 주장하였다. “인도인 500명을 기관총으로 살해한 이 학살에 비하면, 30명도 채 안 되는 비열하고 체제 반항적이고 살인죄를 저지른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은 양호한 편에 속한다.” 기고자가 진짜로 정의의 사도라면, 두 사건을 모두 비난했어야만 한다. 그 작자는 더러운 인도인이거나 비열한 벨기에인 타입의 독일인임에 틀림없다.”<sup>28</sup>고 하여 제암리학살사건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은 이 사건을 자주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1919년 4월 24일 ‘일본군 한국인 학살 일본 총독부 기독교인 살해 및 교회 방화 보도 진상 조사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도쿄와 고베에서 각각 발행되던 영자지 『저팬 어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와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에도 보도되었다. 그리고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가 1919년 7월 발간한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 뉴웰 마틴(Newell Martin)이 1919년

26 『윤치호일기』 1919년 4월 28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27 조성운, 2005, 『『매일신보』에 나타난 경기지방의 3·1운동과 일제의 대응-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453쪽.

28 『윤치호일기』 1920년 4월 27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9월 발간한 『일본의 한국기독교인 박멸시도(Japan's Attempt to Exterminate Korean Christians)』 등은 제암리학살사건을 서구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29</sup> 특히 『상하이 가제트』는 「朝鮮에 있어서의 일본도덕관념의 퇴폐」에서 수원사건, 즉 제암리학살사건은 전쟁행위가 아니었다면서 고의로 행한 잔인한 학살행위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① 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졌는가, ② 총독의 명령에 반하여 행하여졌는가, ③ 총독은 여사한 행위가 자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알릴 명령의 발포를 태만히 하였음에 의한 것인가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sup>30</sup> 그러나 이와 같은 서양인의 기록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탄압과 학살보다는 기독교 탄압이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세력들은 제암리학살사건을 항일투쟁에 적극 이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에 학살당한 시체 앞에 앉아 있는 어린이의 사진이 ‘대한의 누이야 아이야’라는 제목으로 소개<sup>31</sup>되는 등 민족운동세력이 우리 민족과 민족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독립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大韓人の大勇을 兄弟 中에서 發現하였나니 身에 二十六處의 傷處를 生하고도 屈치 아니 하였고, 同胞를 위한 犠牲을 兄弟들이 가장 만히 하였나니 水原, 朔州, 安州 等地의 虐殺, 焚火事件은 生각할 때 마다 毛骨이 悚然합니다.<sup>32</sup>

水原 花樹里 우거진 풀밭히 無道의 불에 재만 남을 時, 罪업슨 너의 두 다리가 野蠻한 倭兵의 거즈 론 손 미테 찌여짐을지금 내가 본다.

29 김승태, 1997,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1~114쪽. 이 논문에는 부록으로 이 기록들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30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道徳觀念의 頹廢」, 『상하이 가제트』 1919년 6월 5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31 이 사진은 ‘水原郡載南里日兵無故刺殺女孩其母及兩弟特來相哭’라는 제목으로 『朝鮮女子泣告世界婦女書』에 수록되어 있다.(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소장)

32 「農村 兄弟에게 寄하는 書」, 『獨立新聞』 1920년 3월 1일.



<그림 1> 大韓의 누이야 아이야(『獨立新聞』 1920년 3월 1일)

세 마디 銃소리에 스러진 어린 세 兄弟의 魂이여, 너의 부르짖는 소리가, 또 너의 사랑하던 늙으신 祖父의 痛哭하는 소리가 지금 내 귀를 울린다. 오직 너를 生命 가치 알던 너의 어머님 目前에서 녹쓰른 槍 霰해 쫓겨 죽은 어린 同生아, 지금 최후의 「어머니」를 찾날 너의 絶叫가 너의 어머니의 마즈막 祈禱와 함의 나의 가슴을 쓰린다. 아아 ……<sup>33</sup>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 사료집』에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一) 堤巖里 虐殺事件. 日本 中慰(尉)爲名者 一人이 軍隊를 領率하고 水原郡 堤岩里에 來호야 諭示 糶 事件이 有호니 耶蘇敎人과 天道敎人은 禮拜堂에 會集호라 糶이 敎人 三十三名이 會堂에 모힌즉該中尉가 一言半辭의

33 「大韓의 누이야 아우야」, 『獨立新聞』 1920년 3월 1일.

諭告가 업시 禮拜堂 門戶를 封鎖하고 三次號令에 兵丁이 禮拜堂으로 擁圍하고 窓戶로 實彈射擊함이 一少婦가 乳孩를 窓戶로 出하며 我는 死거니와 幼孫나 救하라 哀願하니 日兵이 卽時 短鎗으로 幼孩의 頭腦를 斫殺하고 會堂內의 人員이 擧皆死傷에 至함이 日兵이 會堂에 放火하며 被傷된 洪某는 出窓逃走하다가 日兵에게 銃殺을 當하고 康某의 妻는 火起함을 見하고 慌劫하여 衾으로 身을 裹하고 牆下에 隱하였더니 日兵이 女學徒로 認하고 亦 刃으로 斫殺한 後에 衾으로 覆고 燒火하였스며 洪婦人은 救火하려 來하다가 亦 銃殺을 當하며(其兩 幼兒도 當夜에 日兵에게 打殺을 當함) 一少婦(十九歲)는 其夫를 救코져 會堂에 來하다가 亦 被殺하였스니 是日에 會堂內에서 死한 者가 二十二人이오 會堂庭에서 死한 者가 六人이오(會堂內의 屍體의 腥臭는 數日間을 亘하니 內外人이 其觸鼻를 不堪하더라) 當日에 日兵이 堤巖里 全部에 放火하여 三十一戶가 全燒하고 또 附近 八面 十五村에 放火하여 燒失한 家屋이 三百十七戶오 死亡者가 三十九이오 失所人口가 一千六百人이며 其後多日間에 火燒와 銃鎗과 毆打에 被殺한 者가 千餘人이며 倉卒間에 孤兒 寡婦가 山谷間으로 奔竄하야 哭聲이 衝天하며 箇中에 精神病에 罹한 者도 有하며 亂刺血衣로 扶老携幼하고 東西에 摟屑하며 構木藉草하야 風餐露宿한 慘狀은 目不忍見이며 此를 視察한 外國人의 撮影한 寫眞이 有하니 其 事實은 確實하거니와 盖 教人을 招集하고 諭示가 업시 虐殺함은 何等惡毒이며 會堂과 村落에 放火하야 猝地에 人民으로 乞丐를 作함은 何等 強暴이며 幼兒 少婦라도 虐殺不鑿하며 是는 何等 殘忍이며 其 事實을 隱蔽하니 是 何等詐僞노 都是 教人을 憎惡함으로 由하야 此等 蠻行을 敢行하야 恐喝威脅하랴 함이라 此虐殺事件에 對하야 其光景을 視察한 外國人의 記事를 附之于左 · 西國人 某가 視察할 時에 村民을 遇하야 其 虐殺한 理由를 問한즉 村民이 答하기를 被燒人들은 村內에서 示威運動等事가 無하고 市場日에 示威運動을 하였스며 若 有罪하다 하면 該村에 基督教人이 多한 罪뿐이며 或 日人이 言하기를 憲兵 一人의 被殺과 分遣所의 被燒의 復讐라 하나 此亦 不然함은 分遣所가 該村에서 二十餘里外에 在한즉 何必 該村에만 對하야 復讐的 行動을 興理가 有하리오 또 一日本警吏에게 問하즉 言하기를 火災는 不良鮮人의 放火로 全村을 燒却

함시오 銃殺된 者는 擧皆 該村의 不逞輩로 捕縛할 際에 抵抗한 緣故라함 一高等官吏는 言하기를 日人이 無抵抗인 韓人을 射擊하야 數名의 死傷者를 生한 後에 憲兵이 被殺되얏스니 我思에는 二種의 事實이 此變을 惹起하얏도다 一은 遠方이지만은 憲兵의 被殺됨과 二는 耶蘇教人을 憎惡함에서 出함이라 하더라.<sup>34</sup>(밑줄은 인용자).

이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암리학살사건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 개최된 워싱턴회의에 제출한 독립청원서에도 ‘학살과 잔해(殘害)’라는 제목의 항목을 설정하였다.<sup>35</sup>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군 중위가 ‘야소교인과 천도교인’을 제암리 교회에 집합시켰으며, 모인 인원은 33명이고,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 22명, 교회당 마당에서 죽은 사람은 6명이라는 점과 일본군이 8면 15촌락에 방화하였으며, 전 소된 가옥이 317호, 사망자가 39명, 피살자가 천여 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一少婦가 乳孩를 窓戶로 出하며 我는 死거니와 幼孫나 救하라 哀願하니 日兵이 卽時 短鎗으로 幼孩의 頭腦를 斫殺”라 하여 일병이 짓밟이까지 척살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과장이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 신문기사에 반영되었다.

또 중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여자읍고세계부녀서(朝鮮女子泣告世界婦女書)』<sup>36</sup>에는 「村民被害後該村經大火燒燬之慘景(村民被害後該村經大火燒燬之慘景)», 「女學生某氏奉幹部密命從漢城赴水原途次, 「水原郡載南里日兵無故刺殺女孩其母及兩弟特來相哭」, 「水原華水里被日兵縱火後某西人前往調查災況即被日警搪塞可知韓情真相之不易外出也」, 「水原華水里全村五百戶人畜什器悉被日兵火燒所餘者惟若干土缸耳」, 「喪子喪夫家屋被焚之老姑少婦相對號哭於灰燼中

34 「7. 朝鮮基督教會에 對한 日本의 壓迫」,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35 김정인, 2018, 「3·1운동, 죽음과 희생의 민족서사」, 『정신문화연구』 41-4, 한국학중앙연구원, 113쪽.

36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之慘狀」 등의 제암리 학살 당시의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이처럼 『조선여자애고 세계부녀서』에서 보이듯이, 이 외의 독립운동세력도 이 사건을 강조함으로써 독립운동에 우리 민족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하 제암리학살사건은 일제의 왜곡과 은폐, 그리고 기독교 탄압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암리학살사건은 ‘학살’이라는 이미지로 채색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과의 연관성이 망각되는 단서를 마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세력이 이 사건의 ‘탄압과 학살’의 이미지를 독립운동에 활용하였던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3. 해방 이후의 기억 : 학살 이미지의 확대와 강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기독교 측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세력은 이 사건을 한국민족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학살’의 이미지로 정형화시켜 갔다. 이러한 ‘탄압과 학살’의 이미지는 해방 이후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고,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항일투쟁에서 찾으려는 정치세력의 전략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각 정치세력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대한의열당의 문현승(文賢承)은 자신이 “가장 비장(悲壯)한 수원사건의 최초의 선동자(煽動者)의 한 사람이었다.”<sup>37</sup>고까지 말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신과 박선업(朴善業), 신순석(申順錫), 김노석(金露石) 등은 3월 2일 남문 밖 시장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원지역 3·1운동의 연구에 따르면 3월 2일 수원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진술은 잘못된 기억이거나 허언이라 할 수밖에 없다.<sup>38</sup>

37 「天人共怒할 倭種鬼行 石油부러 燒殺한 水原事件 大韓義烈黨主였던 文賢承氏談」, 『大邱時報』 1946년 3월 1일.

38 해방 직후 좌우익을 망라한 정치세력에게 35년간의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 형성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일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

한편 1946년 3월 1일은 해방 이후 최초의 삼일절로 전 민족적으로 기념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신탁통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에 기인하여 좌우익이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sup>39</sup> 이는 기념행사는 개최하는 좌우익이라는 주체가 기념되는 대상의 현재적 의미를 달리 파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수원군지역에서도 1946년 3·1운동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1946년 2월 20일 삼일운동기념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이하영(李夏榮), 홍면옥(洪冕玉), 부위원장 박승극(朴勝極), 박지명(朴志明), 김노적을 선임한 후 총무부, 선전부, 재무부, 사업부, 동원부, 조사연락부 등을 설치하였다.<sup>40</sup> 그런데 이하영, 홍면옥, 박승극, 박지명은 1945년 12월 23일 수원군장에서 개최된 수원군인민위원회대표대회에서 선임된 의장단이였다. 이 대회는 위원장 박승극의 개회로 개최되어 이하영, 홍면옥, 박지명, 박승극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여운형, 허헌, 김구, 김두봉, 김일성, 박헌영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였다.<sup>41</sup> 이하영은 수원 삼일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였고, 국채보상운동과 기호흥학회에 참여하여 실력양성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에는 목사로서 진남포의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박승극, 홍면옥, 변기재, 박지명 등과 함께 수원군 인민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수원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42</sup> 홍면옥은 1919년 수원군 사강면 3·1운동을 주도하여 12년을 복역한 후 교육사업에 진력하다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였다.<sup>43</sup> 그리고 박승극은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수원군 최초의 3·1운동 기념행사는 좌익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원지역에서는 제암리학살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비위원회(建碑委

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문현승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9 해방 직후 3·1운동 기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임종명, 2009, 「탈식민시기(1945.8~1948.7) 남한에서의 3·1의 소환과 표상」,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최선웅, 2009, 「3·1운동 기념 의례의 창출과 변화」,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이연숙, 2017, 「해방 직후 좌우익의 역사 만들기와 기념투쟁」, 『역사연구』 32, 역사학연구소; 임경석, 2018, 「해방 직후 3·1운동 역사상의 분화」, 『사람』 63, 수선사학회.

40 「三一記念行事 水原大會 體育大會와 演藝의 밤 등」, 『중앙신문』 1946년 2월 25일.

41 「군정협력의 제안건 결의 수원인민위원회대표대회성황」, 『중앙신문』 1945년 12월 26일.

42 김권정, 2015, 「이하영의 민족운동 연구」, 『수원역사문화연구』 5, 수원박물관 참조.

43 「洪冕玉翁 被檢」, 『자유신문』 1946년 11월 12일.

員會)를 조직하여 사건 발생 당일인 1946년 4월 16일<sup>44</sup> 수원군 민주주의민족전선 이하 각 사회단체 대표 및 유가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추도식 및 건비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아펜젤러가 참석하여 추도사를 하였으며, 기념비에는 박세영(朴世永)의 추도시에 이주홍(李周洪)이 글을 썼다.<sup>45</sup> 시를 쓴 박세영은 고양(현 서울시 공덕동) 출신이며, 이주홍은 합천 출신으로서 일제시기 박승극과 함께 카프에 참여하여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념비에 건립에 참여한 것은 박승극과의 인연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박세영은 수원 출신의 별나라사 사장으로 사회주의계열의 어린이운동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안준식<sup>46</sup>과 배재고보의 동창이었고, 박승극도 배재고보를 중퇴하였기 때문에 학연도 작용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아펜젤러가 참석한 것은 목사였던 이하영과의 관계가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해방 직후 제암리학살사건을 비롯한 수원군지역의 3·1운동 기념 사업은 좌익세력이 선점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는 등 좌익세력을 탄압하면서 수원군지역의 좌익세력은 약화되고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1월 16일 방화수류정 위에 ‘대한민국독립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제막식에는 대통령 대리 신성모와 국회의장 신익희, 문교부장관 안호상이 참석하였다.<sup>47</sup>

44 일제의 문서와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은 4월 15일이다.

45 「三一運動 堤岩洞事件 記念碑 建立」, 『光州民報』 1946년 5월 4일; 「堤岩洞事件記念塔」, 『자유신문』 1946년 5월 4일. 박세영의 시는 다음과 같다. 밑줄 친 ‘한민’은 본래 ‘인민’이었는데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가 이 비를 남로당이 세웠다며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향남면 서기 송현목과 제암리 거주 안씨가 ‘인’을 ‘한’으로 고쳐 파손을 막았다고 한다.(<http://cafe.daum.net/doodolnet/ERyF/22?q=%EB%B0%95%EC%84%B8%EC%98%81%20%EC%A0%9C%EC%95%94%EB%A6%AC%EA%B8%B0%EB%85%90%EB%B9%84>)

비바람 지나 간 지 스물여섯 해  
두령바위 들꽃엔 이슬이 방울방울  
불에 타고 총 칼에 쓰러진  
임들의 한 맺힌 넋이드노  
조국을 찾으려던 장한 그 뜻  
이제 거례의 산 힘 되었기에  
왜놈은 망하고 한민의 나라 섰으며  
거친 밤 촉새 되어 울던 노래 그치라

46 박태일, 2018, 『수원의 어린이 문학가 안준식의 삶과 문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최종성과 보고서』, 수원시 정연연구원 참고.

47 「嗚呼라! 선열이시여, 이땅에 獨立왔소이다. 水原訪花隨柳亭에서 記念碑 除幕」, 『자유신문』 1949년 1월 18일.

이는 3·1운동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 수립 이후 수원군지역의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이 선점한 3·1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독립’이라는 용어로 치환하여 기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국학생육상경기연맹에서는 중앙신문사 후원으로 1946년 3월 1일 3·1운동 기념 제1회 전국전문대학대항 서울-수원 간 역전경기대회를 개최<sup>48</sup>하기로 하고 역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회장 金億兼 고문 金承植 黃大國 심판장 崔仁浩
- 총무 黃大善 朴贊圭 金赫鎭 姜尙雅(普專) 출발원 孫基禎
- 도중심판원 金恩培 南昇龍 孫基禎 李德元(普專)
- 결승심판원 鄭商熙 金煥民 安榮植 金源權 安浩然 安炳祿(普專)
- 시계원 白龍基 羅鍾榮 南昇龍 金道鎭 金銀式(世專) 朴弼煥(延專)
- 제1일 郭錫根 金鍾元 鄭晦根(惠專)
- 제2일 馬鳳玉 李相相 朴用中(京師)
- 제3일 柳春根 朴肝贊(京師) 金錫鍾 朴在浩
- 제4일 金斗仁 朴弼煥(延專) 문동성(普專)
- 제5일 金裕澤 李鍾祿 韓聖鉉 金光洙(惠專)<sup>49</sup>

이 대회 우승은 2시간 32분 31초의 기록으로 보성전문학교가 우승하였다.<sup>50</sup> 이렇게 수원이 해방 직후 전문학교 역전경기의 중점이 될 정도로 수원은 가장 대표적인 항쟁지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다. 1962년에는 고색국민학교에서 출발하여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탑을 돌아가는 3·1절 경축 제1회 화성군·읍마라톤대회가 개최되어 태장면이 우승하였다.<sup>51</sup> 이 마라톤대회는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1982

48 「專門大學驛傳競技 3월 1일 서울-수원간」, 『중앙신문』 1946년 2월 21일.

49 「專門大學 驛傳競技 役員 決定」, 『중앙신문』 1946년 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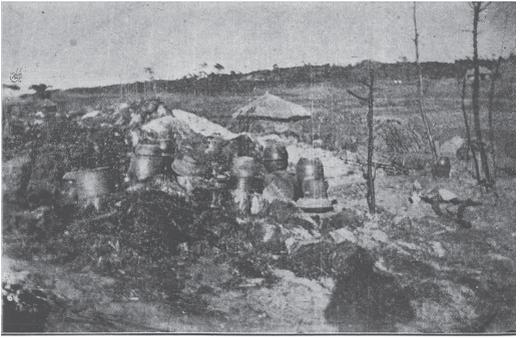
50 「慶祝驛傳競技盛況 優勝은 普成專門軍」, 『중앙신문』 1946년 3월 2일.

51 「기미년 학살의 마을 두령바위에 새봄은 오다」, 『동아일보』 1962년 3월 1일; 「3·1절 경축 마라톤 화성군민 축진회서」, 『경향신문』 1962년 3월 1일; 「태장면팀 우승 3·1절 경축 마라톤」, 『경향신문』 1962년 3월 5일.

년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문제가 발생하자 수원공설운동장을 출발하여 제암리를 왕복하는 코스로 다시 개최되었다.<sup>52</sup> 이와 같이 마라톤은 수원군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기능하였다.

한편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이루어졌다. 1946년부터 1961년까지 신문에 보도된 것은 <표 1>과 같다.

<표 1> 1945~1950년대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

번호	신문명	일자	제목	내용
①	동아일보	1946. 2.26.	삼일운동의 회상(중)	<p>우리의 사상은 그들이 발표한 수자의 몇십배, 몇백배에 달하였던 것이니 수원 같은 데서는 군대가 출동하여 야소교예배당에 수많은 군중을 한데 몰아 가두고서 불을 질러 태워버린 참살사건을 비롯하여 선천, 정주, 강서, 수안 등에서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살해당한 참혹한 예는 얼마든지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행한 가지가지 만행이란 이루다 어찌 기록할 수 있으랴</p> 
②	중앙신문	1946. 2.27.	水原 朝巖里事件	

52 「마라톤 재건에 불이 붙었다」, 『경향신문』 1982년 2월 25일.

번호	신문명	일자	제목	내용
②	중앙신문	1946. 2.27.	水原 朝巖里事件	  <p>당시 대표적 참화를 입은 것은 수원지방이다. 기미년 4월 15일 오후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교회당에 소교인과 천도교인 30여명이 모여 있었다. 그때 일병 중위가 지휘하는 일소대가 교회당을 포위하고 총질을 하였다. 교회당 안에 있던 한 부인이 어린애를 안고 밖으로 나오며 자신은 죽을 터이니 어린애는 살려달라고 하였다. 당연한 모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병은 바로 그 어린애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말았다. 교회당 안의 사람을거의 다 살해하고 또는 중상을 입힌 후일병은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 불을 끄러 온 동네 부인, 남편을 구하러 온 또한 부인, 그리고 젓먹이 어리아이 두 명도 피해 주린 악귀는 사살하고 말았다. 교회당에서 타죽은 사람은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 6명이다. 일병은 인접한 집 한 采巖里 촌락에 불을 질러 31호가 불타버렸다. 다음 부락 다음 부락에 불을 질러 8면 15부락 317호가 연소하고 불을 피해 나오는 부락민에 총질을 하고 또는 폭행을 함부로 하여 죽은 사람만 천여 명을 넘었다. 목숨이 붙은 사람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기아에 올랐다. 수원지방 일대는 사람으로 차마 못볼 참화를 입었다. 이밖에도 이와 같은 참화를 일일이 기록할 것도 없다.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대구에서는 시위 행진에 참가한 2만 3천명 가운데 일병의 발포로 112명이 피살되었고 평남 대동군에서도 시위 행렬 중에 즉사자 42명을 내었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피를 뿌린 항쟁사다.</p>

번호	신문명	일자	제목	내용
③	동아일보	1946. 2.28.	三一運動 秘話	이밖에 독립만세를 불렀다 하여 수원 발안장터 등 전선 각지 시골을 동리 채 태워버린 곳이 많은데 불타버린 가옥이 5천여 호나 된다.
④	동아일보	1946. 3.1.	偉大한 愛國至情 元漢慶博士 己未年 回顧談	나는 그 당시에 연희전문학교 교수였었는데 수원사건 즉 제암리라는 촌락의 주민들이 독립운동을 밀어붙였다는 구실로 일인들이 전부락민을 예배당에 몰아넣고서 석유를 끼얹어 불을 질러 학살한 포악무도한 사실을 듣고 울분을 억누르니 못하여 당시 경성 주재 미국 부영사 커티스, 테일러 양씨와 함께 현지를 세밀히 조사한 뒤 경성으로 돌아와서 외국인간에 구제사업을 일으키어 식량, 의료 등을 보내주었다.
⑤	동아일보	1946. 3.15.	三一運動의 史的 意義	위선 수원 어떤 곳에서는 만세를 부르자 일본군인이 와서 자기네가 할 말이 있으니 기독교예배당에 모이라 함에 그 동리의 남녀노약이 모여들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쏘아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 수원의 삼괴, 황해도 의 수안, 평남의 강서, 평북의 정주 등지의 참상이 제일 심하였다.
⑥	경향신문	1950. 3.1.	三一節을 앞두고 떠오르는 피의 記錄 當時의 學生代表 康基德氏談	당시 수원학살사건은 민족 만대에 잊을 수 없는 뚜렷한 怨恨의 하나일 것이니 우리는 결심에 결심을 다하여 금후의 민족발전을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우리민족의 分裂은 참으로 통탄할 바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⑦	동아일보	1953. 3.1.	殉國人士 7,509명 113여만 명이 동원 결기	수원군하 일촌에서 독립선언운동시 왜병분견소에 주둔하고 있던 군병의 총탄에 다수의 사상자가 속출함에 분격한 애국동포들이 일본인 헌병 1명을 습격하고 왜병분견소를 소각하였던 바 그 중 1명이 다수의 군병을 인솔하고 제암리에 와서 혼시가 있으니 기독교인은 교회에 집합하라고 말한 후 삼십여명이 교회당에 운집하자 일본인 중위 1명이 교회의 문을 봉쇄하고 휘발유를 뿌려 교회를 포위하고 방화하여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총(1줄 안보임)검으로 刺殺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여 口실내에서 燒死者 22명, 庭門에서 6명을 내었고 그후 계속 제암리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면서 8개면 15개 동리에 3일간에 걸쳐 방화하여 소각 가옥 317호, 피해자 1,600명, 피살자 수십명을 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원 부근앞에서 보았듯이 “수원 부근에 잊지 못할 ‘제암리’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코리언).”라고까지 기억되던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보도가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는 많지 않다. 이 기사들은 일본군과 경찰이 제암리교회당

에 모이도록 한 사람들에게 대해 다양하게 보도하였다. ②만이 예수교인과 천도교인이라 정확하게 보도하였으며, ①, ④, ⑤, ⑦의 기사는 제암리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였다. ①은 수많은 군중, ④는 전 부락민, ⑤는 그 동리의 남녀노약, ⑦은 기독교인이라 보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전동례와 1970년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구술조사한 김선진은 15세 이상의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문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⑦은 기독교인이라 특정하여 천도교인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박계주가 그의 소설 『진리의 밤』에서 “삼일운동 때 수원 제암리예배당에 삼십여 명의 교인이 갇혀 일본군대에게 방화당하고 살육<sup>53</sup>당하였다고 쓴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학살당한 사람의 수이다. ②와 ⑦은 교회당에서 타죽은 사람은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 6명, ④와 ⑤는 학살당한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으나 문맥상 전부락민이 학살당한 것으로 썼다. ②와 ⑦의 기록은 앞 절에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한일관계사료집』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살당한 사람의 수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20여 명부터 37명까지 거론되고 있다.<sup>54</sup> 세 번째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군지역 3·1운동의 피해상황이다. ②는 제암리 사망자와 가옥 손실을 포함한 수원군지역의 사망자가 천여 명을 넘으며, 가옥이 8개면 15부락 317호가 불탔다고 하였으며, ⑦은 제암리 사망자와 가옥 손실을 포함하여 8개면 15개 동리에서 가옥 317호가 불탔고, 수십 명의 피살자와 1,6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일관계사료집』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해방 직후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신문보도는 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록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⑥은 ‘민족만대의 잊을 수 없는 뚜렷한 원한(怨恨)’이며, ‘민족발전’의 한 동력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도와 함께 각 신문에서는 제암리학살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53 「眞理의 밤」, 『경향신문』 1949년 1월 9일.

54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2001,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참조 바람.

보도하였다. ①의 사진은 『동아일보』 1950년 3월 1일자에도 보도되었다. 특히 『동아일보』 1950년 3월 1일자에는 이 사진을 “수원사건에 참가하였던 우리 애국지사들이 총살형을 당하는 순간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설명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1907년 의병을 처형하는 사진이다.<sup>55</sup> ②의 사진 (상)에는 “왜병의 포학이 가장 심했던 수원 조암리의 참담한 광경”, (중)에는 “황량한 폐허가 된 곳에 아버지를 잃은 두 어린이가 울고 있다. 부친은 병(왜병-인용자)에게 찢리어 □생이 되었고 3형제 중에 한 동기도 왜병의 칼끝의 이슬이 되었다. 두 어린이가 부친과 한 동기의 시체 옆에서 그침 없는 설움”, (하)에는 “서울서 연락의 명령을 받고 수원으로 향하여 가던 어린 여학생을 왜병은 무참하게 학살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②는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모두 제암리가 아닌 조암리로 기록하여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편 (상)은 『Japanese Atrocities in Korea』가 원전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1920년 10월 7일)에도 실려 있다. (중)은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독립신문』(1919년 8월 29일)에 실려 있다.

한편 해방 직후 국사교과서에도 일찍부터 제암리학살사건이 수록되었다.<sup>56</sup> 또 다음의 두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도 제암리학살사건은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는 일제 식민통치의 만행을 논증하는 중요한 논거로 제시되었다.

① 수원학살사건이라는 것은 3월 15일 이(수원-인용자) 부근에서 일본병 1명이 타살된 것을 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을 기만하여 ‘훈시’가 있다는 명목으로 교회당에 감금하고 석유를 붓고 불을 붙여 불을 피해 뛰쳐나오는 인민들을 총살하였다. 이날 학살된 수는 약 30여 명에 달했다. 그 후 3일간에 걸쳐 학살, 방화가 계속되어 수십 명이 학살되고 4백여 가옥이 소실되었다.<sup>57</sup>

55 박환은 이 사진은 1907년 사진으로 파악하였다.(박환, 2019, 『사진으로 보는 3·1운동 현장과 혁명의 기억과 공간』, 민속원, 474쪽)

56 해방 이후 교과서의 제암리 학살사건 서술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연구(조성운, 2002,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제암리 학살사건의 서술 변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참고 바람.

57 朝鮮歴史編纂委員會 編, 朝鮮歴史研究會 譯, 1954, 『朝鮮民族解放闘爭史』, 三一書房, 217쪽.

② 그 안에 수원군 堤巖里, 狩川里, 花樹里 등의 대학살사건은 대표적인 것으로 4월 15일 일본군은 수원 제암리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을 전부 교회당에 집합시키고 그들을 포위하여 전원을 다치는 대로 총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가에 불을 놓아 이를 전부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는 당시 수원군에서만도 애국적 인민 996명을 학살하고, 889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365명을 검거, 투옥하고 많은 가옥을 소각시켜 버린 것이다.<sup>58</sup>

②는 ①보다 제암리학살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나 수촌리(水村里)를 수천리(狩川里)로 잘못 표기했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교회당에 집합시켰다고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기술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도 정주와 맹산 등 북한지역에서 있었던 일제의 학살행위보다는 제암리학살사건을 일제 식민통치의 만행을 논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인정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②의 책은 저자인 이나영(李羅英)이 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의 기관지였던 『민주조선(民主朝鮮)』에 연재하였던 것을 초고로 출판한 것<sup>59</sup>이라는 점에서 1956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던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암리학살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삼일혁명기」가 1947년 개봉되었다. 이는 이 시기 독립운동을 다룬 상업영화의 제작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59년까지 독립운동을 다룬 상업영화는 <표 2>와 같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제작된 상업영화 52편 중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1편으로서 전체 상업영화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방이라는 민족적 감격과 희열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친일 이력이 있던 영화인들이 해방 공간에서 면죄부를 받기 위해 속죄를 위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했다.<sup>60</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작된 「삼일혁명기」는 “한몫 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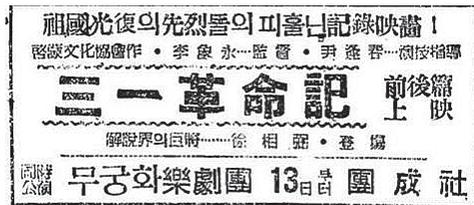
58 李羅英, 1961, 『朝鮮民族解放闘爭史』, 新日本出版社, 288쪽.

59 李羅英, 1961, 『朝鮮民族解放闘爭史』, 新日本出版社, 1~2쪽.

60 정상우, 2018, 「해방 이후 1950년대 독립운동의 영화적 재현」,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73~74쪽.

〈표 2〉 해방 이후 1950년대 독립운동을 다룬 상업영화 목록<sup>61</sup>

개봉연도	제목	감독	각본	현존자료
1946 (총 8편 중 3편)	자유만세	최인규	전창근	시나리오, 필름 일부
	安重根史記	이구영	방익석	
	삼일혁명기	윤봉춘	방익석, 이구영	시나리오
1947 (총 11편 중 3편)	윤봉길의사	윤봉춘	윤봉춘	
	불멸의 밀사	김영순		
	죄 없는 죄인	최인규	최인규	
1948 (총 22편 중 4편)	유관순	윤봉춘	윤봉춘	시나리오
	조국의 어머니	윤대룡		
	애국자의 아들	윤봉춘	안석영	
	심판자	김성민	김성민	
1949 (총 11편 중 1편)	안창남	노필	김정혁	필름 일부



『삼일혁명기』 상영 광고(『동아일보』 1947년 1월 11일)

위해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로 혹평을 받기도 하였다.<sup>62</sup>

그러나 『삼일혁명기』는 3·1운동에 대한 최초의 영화(원작 방익석, 각색 이구영, 감독 윤봉춘)로서 16mm 무성영화이며 상하 2편으로

제작되었다. 극영화라기보다는 세미다큐멘터리였으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제암리사건을 모티브로 한 듯하다. 「어느 고요한 마을」이라는 배경 속에 김 전도사와 궤 참봉에 의해 3·1운동이 일어나고 이튿날 일본 헌병이 예배당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불을 질러 학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김 전도사는 옥사하고 이후 영화는 식민지 말기까지의 중요한 독립투쟁사건을 나열하고, 식민지 말기 학병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인 김 전도사의 아들 김만중이 산골로 피신했다가 궤 참봉을 만나

61 정상우, 2018, 「해방 이후 1950년대 독립운동의 영화적 재현」,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72~73쪽에서 재작성하였다.  
62 정상우, 2018, 「해방 이후 1950년대 독립운동의 영화적 재현」,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76쪽.

고 사람들을 조직하여 경관들과 싸우다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끝을 맺는다.<sup>63</sup> 이 영화는 계몽문화협회의 두 번째 작품이었고, 박성환(朴城煥) 외 2천 명의 엑스트라가 출연하였다.<sup>64</sup>

또한 제암리학살사건 당시 순국한 안종후의 아들 안동순은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을 1970년대에 제작하여 2009년에 공개하였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매년 제암리학살사건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거행하는 삼일절기념식에서 제암리학살사건을 형상화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제암리학살사건을 주제로 한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순국제암29선열유족회는 1972년 5월 24일부터 1개월간 경기도 일원에서 현충사당 건립 기념 연극을 공연(羅素雲 연출)하였다.<sup>65</sup> 1980년 6월 27~28일 양일간 청소년극단 혜성은 창립공연으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두령바위」(나소운 극본, 박기선 연출)를 공연하였다.<sup>66</sup>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성(城)은 제암리학살사건을 주제로 한 연극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김성열 작)을 1998년에 공연하였고, 2007년에는 「아, 제암리 만세」(김성열 작)를 공연하였다. 2009년에는 뮤지컬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을 한일합동으로 공연하였다. 2010년에는 무용극 「제암리 불꽃」을 공연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제암리학살사건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말 이래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극단 성은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선정되어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기도 내 20여 개 중학교에서 마당극 형태의 연극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을 순회 공연하여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sup>67</sup>

#### 4. 맺음말

이상에서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억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

63 정중현, 2007, 「3·1운동 표상의 문화정치학」, 『한국민족문화연구』 23, 264쪽, 주)49.  
64 「광고」, 『한성일보』 1947년 5월 7일.  
65 「사당 건립 기념 연극 두령바위 공연」, 『경향신문』 1972년 5월 24일.  
66 「27, 28 양일간 두령바위 공연」, 『경향신문』 1980년 6월 23일.  
67 「제암리 학살」 소재 연극 도내 20개교 순회공연, 『경기일보』 2013년 5월 13일.

지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일제는 이 사건의 실상과 본질을 은폐, 왜곡하려 하였으나 서양인 기독교 선교사와 외교관에 의해 이 사건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사건을 『한일관계사료집』에 수록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을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세계에 알리는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양인 선교사와 외교관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기독교회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들의 증언을 보도한 외국의 신문들은 제암리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보도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각종 신문은 『한일관계사료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보도를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였다. 특히 기사와 함께 관련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일제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신문보도는 해방 이후 한국인의 제암리학살사건 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제암리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보도한 신문도 있었으며, 기독교인이라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인 장소가 예배당이라는 점, 해방 직후 최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동아일보』가 기독교인이라 한 보도, 박계주의 소설 『진리의 밤』에서도 기독교인이라 한 점, 영화 『삼일혁명기』에서도 교회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학살한 점 등 해방 직후 제암리학살사건을 묘사한 기록들은 제암리에서 학살당한 인물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을 점차 강화해 갔다. 또한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수요목기의 일부 국사교과서에서도 교회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을 강화하는 데 모자람이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학살’의 이미지만을 남기게 되었고, 그 ‘학살’이 3·1운동이라는 우리 민족의 ‘저항’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한국인의 기억에서 약화되거나 사라져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반공과 반일민족주의에서 찾으려 하였고,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데 제암리학살사건만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

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 없이 이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소비하였던 정치권의 행태가 제암리학살사건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제암리학살사건의 현장인 제암리교회를 성역화하려던 한국 기독교와 일본의 일부 기독교세력의 ‘사죄’와 관련된 일련의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제암리학살사건을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학살이라는 이미지를 확대,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투고일 2022년 4월 7일 심사일 2022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 참고문헌

### 〈고문헌 및 신문〉

『경기일보』; 『京城日報』; 『경향신문』; 『大邱時報』; 『獨立新聞』; 『동아일보』; 『매일신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앙신문』; 『光州民報』; 『한성일보』; 『윤치호일기』.

### 〈논문 및 단행본〉

- 李羅英, 1961, 『朝鮮民族解放鬪爭史』, 新日本出版社.
-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 編, 2007,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 3, 岩波書.
- 김승태, 1997,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성주현, 2001,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 조성운, 2005, 「『매일신보』에 나타난 경기지방의 3·1운동과 일제의 대응-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 임중명, 2009, 「탈식민시기(1945.8~1948.7) 남한에서의 3·1의 소환과 표상」,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최선웅, 2009, 「3·1운동 기념 의례의 창출과 변화」,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학회.
- 이양희, 2013, 「일본군의 3·1운동 탄압과 대응-『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권정, 2015, 「이하영의 민족운동 연구」, 『수원역사문화연구』 5, 수원박물관.
- 이연숙, 2017, 「해방 직후 좌·우익의 역사 만들기와 기념투쟁」, 『역사연구』 32, 역사학연구소.
- 임경석, 2018, 「해방 직후 3·1운동 역사상의 분화」, 『사람』 63, 수선사학회.
- 정상우, 2018, 「해방 이후 1950년대 독립운동의 영화적 재현」,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 홍민지, 2019, 「역사교육방법론연구-제암리학살사건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자료 및 사이트〉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朝鮮騷擾事件總計一覽表」(1919年 4月 盡日調), 「密第102號 其201 第2號 朝督第107號 電報譯」, 「騷密第343號 秘受04620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五十報)」.

朝鮮歷史編纂委員會 編, 朝鮮歷史研究會 譯, 1954, 『朝鮮民族解放鬪爭史』, 三一書房.

문화체육관광부, 2019,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요 약

본 연구는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 탄압이자 학살사건으로 알려진 제암리학살사건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했는가를 사건 발생 이후부터 1961년까지를 대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일제는 이 사건의 실상과 본질을 은폐, 왜곡하려 하였으나 서양인 기독교 선교사와 외교관에 의해 이 사건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사건을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세계에 알리는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서양인 선교사와 외교관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기독교회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들의 증언을 보도한 외국의 신문들은 제암리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보도하는 등 사건의 진상보다는 기독교 탄압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각종 신문은 관련 사진을 포함한 기사를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강조하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신문보도는 해방 이후 한국인의 제암리학살사건 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보도는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해갔다. 또한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수요목기의 일부 국사교과서에서도 교회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학살’의 이미지만을 남기게 되었고, 그 ‘학살’이 3·1운동이라는 우리 민족의 ‘저항’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한국인의 기억에서 약화되거나 사라져 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반공과 반일민족주의에서 찾으려 하였고,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데 제암리학살사건만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 없이 이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소비하였던 정치권의 행태가 제암리학살사건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제어** : 3·1운동, 제암리, 학살, 기독교, 천도교, 반공, 반일민족주의,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사건

## ABSTRACT

### Memory of the Jeam-ri Massacre and Succession I

: From liberation to the 1950s

Cho, Seong Wo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orean people remembered and inherited the Jeamri murder case, which is a representative suppres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gainst the March 1st Movement and known as the massacre, from the time the incident occurred to 1961.

The Japanese tried to hide and distort the reality and nature of the case, but the facts of the case were known to the world by Western Christian missionaries and diplomats,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sed this case as a material to inform the world of the cruelty and barbarism of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as the incident became known to the world, Western missionaries and diplomats continued to emphasize that the site of the incident was a suppression of Christianity, and foreign newspapers reported their testimony that the slaughtered people were Christians in the incident.

Even after liberation, various newspapers stimulated anti-Japanese sentiment by emphasizing the cruelty and barbar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through articles including related photos. These newspaper reports became the basis for Koreans' perception of the Jeamri murder case after liberation. These reports strengthened the perception that the victims of the Jeamri murder were Christians. In addition, some national history textbooks in the syllabus and the first syllabus also used the expression "church hall" to reinforce that the victims of the Jeamri murder were Christians.

In this process, only the image of "killing" was left in the Jeamri murder case,

and the fact that the “killing” was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resistance” of the Korean people, which is the March 1st Movement, seems to have weakened or disappeared from the memory of Koreans. The military forces, who seized power with the May 16 military coup in 1961, tried to find their legitimacy in anti-communism and anti-Japanese nationalism, and used this case politically in that there was nothing more well-known than the Jeamri murder case. This was the same after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distortion incident in 1982.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behavior of the political circle, which consumed it as a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without proper efforts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Jeamri murder case after liberation, created a distorted image of the Jeamri murder.

**Key Word** : March 1st Movement, Jeam-ri(提岩里), Massacre, Christianity, Cheondogyo, Anti-Communism, Anti-Japanese Nationalism, Japanese History Textbook Distortion

## 가상 정책 유형 선호와 유료화 찬반의 관계

: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중심으로

조한라\* / 조용준\*\* / 정가형\*\*\*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함의

### 1. 서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찬반 토론이 뜨거웠다. 그러나 연합뉴스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의 무임승차 제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sup>1</sup>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에 경로우대를 위해 도입된 ‘노인승차권’ 지급제도가 발전한 것으로, 지하철을 개통한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의 100%를 할인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제도는 경로효친사상에

\*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Researcher,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Researcher,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dave@suwon.re.kr)

1 「[팩트체크] 새 정부에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줄어든다?」, 『연합뉴스』, 2022년 3월 25일(<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54475>).

2 석재은·정경희·김용하·이윤경, 2005,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노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다.<sup>3</sup> 그리고 교통약자의 범주에 속하는 노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sup>4</sup>

하지만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주범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지목받으면서,<sup>5</sup>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현 제도를 유지하되 재원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sup>6</sup> 그 이유는 도보 외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지하철이며,<sup>7</sup>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이동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8</sup> 특히,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은 노인가구의 경우 생활비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운임보조를 받지 않은 가구에 비해 12~15% 소비 여력이 증대한다는 효과<sup>9</sup>와 함께 사회활동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는 의료비 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즉, 이동권 및 사회활동 보장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제도 시행 이후

3 허준영·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4 조용준·정가형·김현아·이미진·이상훈, 2021, 「노인 연령인식 및 제도관련 여론조사」, 『정책현안TF 이슈매거진』 8호, 수원시정연구원.  
 5 신성일·이진학, 2021,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서울연구원.  
 6 노시학·정은혜, 2012,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3), 45~58쪽; 조용준·정가형·김현아·이미진·이상훈, 2021, 「노인 연령인식 및 제도관련 여론조사」, 『정책현안TF 이슈매거진』 8호, 수원시정연구원.  
 7 노시학·양은정, 2011, 「서울시 이동가능 고령인구의 주요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4), 545~557쪽.  
 8 Metz, D., 2003, "Transport policy for an ageing population", Transport Reviews, 23, pp.375~386; 노시학·정은혜, 2012,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3), 45~58쪽.  
 9 설윤·이재민, 2021, 「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변화 분석 -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를 중심으로 -」, 『교통연구』 28(4), 65~82쪽.  
 10 노시학·양은정, 2011, 「서울시 이동가능 고령인구의 주요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4), 545~557쪽.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인 인구의 특성 변화 및 노인소득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등)의 확충 등 노인복지정책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본다.<sup>11</sup> 그리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와 같은 경로우대제도의 이용이 확대될수록 청장년층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고 세대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2</sup> 또한, 형평성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 다양한 교통수단 중 철도는 일부 할인, 지하철은 무임승차, 시내버스는 할인제도가 없는 등 교통수단에 따라 무료이용 근거와 할인율이 다르고, 지역별로도 지하철이 있는 도시와 없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논의들은 2003년에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변경에 따른 정책적 저항 때문에 김해시 민자 도시철도를 제외하고는 논의만 무성할 뿐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에는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7만 4,853명(전체 인구의 6.9%), 2015년 9만 9,750명(전체 인구의 8.4%), 2021년 13만 7,075명(전체 인구의 11.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뿐만 아니라 정책변화에 대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적자발생분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sup>15</sup> 이는 곧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며<sup>16</sup>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올

11 석재은·김용하·임정기, 2015,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69, 291~321쪽.  
 12 허준영·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13 석재은·김용하·임정기, 2015,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69, 291~321쪽.  
 14 KOSIS, 2022,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15 신성일·이진학, 2021,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서울연구원.  
 16 임유진, 2021, 「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29(2), 53~73쪽.

바르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라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성을 갖춘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sup>1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통합과 노인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0세 미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가상 정책 유형별 선호도와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 찬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 2. 이론적 논의

### 1) 노인 무임승차제도

우리나라의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도록 권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sup>18</sup>는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유사하게 노인에 대한 교통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연금수급대상연령(65세)이 되면 국철, 버스, 지하철, 트램 모두 피크시간 외 무료이며, 고속버스 및 국내 항공료도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의 대상에게 철도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나 시간대 별 할인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sup>19</sup> 벨기에는 여성 60세, 남성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 철도와

17 송기욱, 2011, 「김해시 민자 도시철도 노인요금제도 개선방안」, 『경남발전』 5, 75-88쪽.

1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9 석재은·김용하·임정기, 2015,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69, 291-321쪽.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노인은 50% 할인 적용받을 수 있다.<sup>20</sup> 캐나다는 소득 보충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은 45~54 CA\$, 일반노인의 경우 120 CA\$를 지불하고 1년 동안 버스 패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sup>21</sup> 즉, 캐나다의 경우에는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버스 패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본인부담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1〉 국가별 노인 교통요금 할인제도 현황

국가	대상	내용
영국	연금수급대상연령 (현재 65세 이상)	국철, 버스, 지하철, 트램 : 피크시간 외(09:30-23:00) 무료 고속버스 : 50% 할인, 금·토 30% 할인
프랑스	일정수준 소득 이하 65세 이상 노인 및 노동불가 60세 이상 노인	국영철도 : 교통체증시간 제외 50% 할인 버스 : 지역에 따라 20~80% 할인 또는 무료
네덜란드	65세 이상 노인	철도 : Pass 60 소지자 편도 40%, 왕복 45% 할인, 7일간 무료이용 국가노선버스 : Pass 65 소지자 50% 할인
독일	여성 60세, 남성 65세 이상에게 경로우대증 발급	철도 : 경로우대증(Senioren Pass) 소지자 50% 할인
벨기에	여성 60세, 남성 65세	철도, 버스 : 저소득층 무료이용, 일반 노인은 50% 할인
캐나다	65세 이상 소득보충급여를 받는 노인	버스 패스 프로그램(1년) - 저소득층 : 45~54 CA\$ 지불 - 일반노인 : 120 CA\$ 지불

출처 : 석재은 외(2015), 문제웅(2018), 신성일 외(2021) 참조.

해외의 노인 교통할인 정책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처럼 일정 연령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보다는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할인율)을 달리하거나 혼잡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만 할인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버스요금 및 항공권에 대해서도 할인하고 있으며, 동일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로 정책의 차이가 있었다. 즉,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문제웅, 2018, 「민간 도시철도 무인수송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신성일·이진학, 2021,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서울연구원.

## 2) 선행연구 검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 왔던 것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사례 검토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둘째,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22</sup> 즉,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sup>23</sup>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용실태 및 노인 이동실태를 확인하는 연구,<sup>24</sup> 노인 무임승차제도 이용의 결정요인을 확인<sup>25</sup>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실증적 연구 중 일부는 해당 노선의 운영적자를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sup>26</sup> 넷째,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손실금액 또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추정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즉, 고령화 추세와 연간 손실금액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손실금을 추정하거나,<sup>27</sup>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연령을 상향하거나 시간대별 탄력운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경우 손실금액을 추정하여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확인

22 석재은·정경화·김용하·이윤경, 2005,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엄기복·이금자, 2007, 「노인교통이용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복지행정논총』 17(2), 115~137쪽; 노시학·양은정, 2011, 「서울시 이동가능 고령인구의 주요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4), 545~557쪽; 노시학·정은혜, 2012,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3), 45~58쪽; 허준영·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23 석재은·정경화·김용하·이윤경, 2005,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엄기복·이금자, 2007, 「노인교통이용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복지행정논총』 17(2), 115~137쪽.

24 노시학·양은정, 2011, 「서울시 이동가능 고령인구의 주요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4), 545~557쪽; 송기욱, 2011, 「김해시 민자 도시철도 노인요금제도 개선방안」, 『경남발전』 5, 75~88쪽.

25 허준영·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26 이해령·송기욱, 2022,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의식변화 연구-부산과 김해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2(1), 83~93쪽.

27 이재훈·박지훈·박진호·전병관·최의평·박정수, 2016, 「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 698~709쪽.

하고자 한 연구,<sup>28</sup> 1990~2016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노인가구의 소득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up>29</sup>

이러한 연구 중 노인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패턴을 분석한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비용 전가 등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sup>30</sup>을 고려한다면 세대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sup>31</sup>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 연령층의 인식이 반영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에 대한 선호와 노인 무임승차제도 찬반 의견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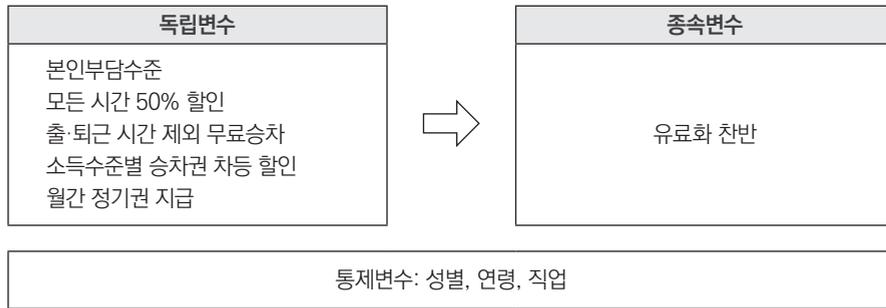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가상 정책 유형 선호도 수준을 확인하고, 가상 정책 유형의 선호도가 유료화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8 신성일·이진학, 2021,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 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서울연구원.

29 설윤·이재민, 2021, 「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변화 분석-지하철 노인 운임보조를 중심으로-」, 『교통연구』 28(4), 65~82쪽.

30 허준영, 2016, 「세대 간 통합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31 김지연·김시곤·문제웅, 2017,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개선 방안: 신분당선 사례」,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7(6), 1009~1015쪽.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견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수원시민의 가상 정책 유형별 선호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수원시민의 가상 정책 유형별 선호도는 유료화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EMBRANIN에 조사 의뢰하여,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585명이 응답하였다. 60세 미만 응답자 550명 중 유료화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7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8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 수 산정은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sup>32</sup> 로지스틱 회귀분석 양측검정, Odd Ratio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한 결과, 필요한 최소 사례 수는 414명이었다. 따라서, 사례 수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pp.1149~1160.

## 3) 측정도구

종속변수인 유료화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발생하는 운영기관의 적자 최소화를 위한 유료화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⑤ 모르겠음/관심 없음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⑤ 모르겠음/관심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고 더미변수로 변환하여(반대=0, 찬성=1) 연구모델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가상 정책 유형 변수는 총 5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 부담수준은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유료화로 전환할 시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응답 범주는 ① 0% : 지불의사 없음, ② 30% 수준 : 400원, ③ 50% 수준 : 650원, ④ 70% 수준 : 900원, ⑤ 100% 수준 : 1,250원이다. 그리고 모든 시간 50% 요금 할인,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 할인,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은 ① 매우 좋지 않음~⑤ 매우 좋음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직업은 통제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고, 나이는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자료 그대로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직업은 비슷한 직군끼리 재분류한 후 더미변수로 변환 후 연구모델에 투입하였다.

〈표 2〉 측정도구 요약

변수		질문	측정
종속 변수	유료화 도입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발생하는 운영기관의 적자 최소화를 위한 유료화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미변수 (반대=0, 찬성=1)
독립 변수	가상 정책 유형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유료화로 전환한다면 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속변수 (① 0% : 지불의사 없음 ~ ⑤ 100% 수준: 1,250원)
		모든 시간 50% 요금 할인 정책 선호도 평가	연속변수 (① 매우 좋지 않음 ~ ⑤ 매우 좋음)

변수	질문	측정	
독립 변수	가상 정책 유형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 정책 선호도 평가	연속변수 (① 매우 좋지 않음 ~ ⑤ 매우 좋음)
		소득수준에 따라 승차권 차등 할인 정책 선호도 평가	연속변수 (① 매우 좋지 않음 ~ ⑤ 매우 좋음)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 정책 선호도 평가	연속변수 (① 매우 좋지 않음 ~ ⑤ 매우 좋음)
통제 변수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더미변수 (여자=0, 남자=1)	
	연령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연속변수 (① 10대 ~ ⑤ 50대)	
	직업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더미변수 (회사원=0, 학생·주부=1, 전문직·공무원=1, 자영업·프리랜서=1)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over Analysis, Chi-Square Test)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료화 찬반 의견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둘째, 수원시민의 가상 정책 유형별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하였다. 셋째, 수원시민의 가상 정책 유형별 선호도가 유료화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허용오차(Tolerance) 범위는 .725~.927로 기준값 1을 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역시 1.078~1.501로 기준값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 4.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 총 480명 중 남자는 186명(38.7%), 여자는 294명(61.3%)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103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00명(20.8%), 20대 97명(20.2%), 30대 95명(19.8%), 10대 85명(17.7%) 순서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5.46세(S.D=12.91)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학생·주부 187명(39.0%), 회사원 185명(38.5%), 전문직·공무원 62명(12.9%), 자영업·프리랜서 46명(9.6%)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80)

변수		N	%
성별	남자	186	38.7
	여자	294	61.3
연령대 (M=35.46, S.D=12.91)	10대	85	17.7
	20대	97	20.2
	30대	95	19.8
	40대	100	20.8
	50대	103	21.5
직업	회사원	185	38.5
	학생·주부	187	39.0
	전문직·공무원	62	12.9
	자영업·프리랜서	46	9.6

### 2) 유료화 찬반 의견분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료화 찬반 의견분포는 <표 4>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480명 중 유료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38명(70.4%), 반대한다는 의견이 142명(29.6%)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

료화 찬반 의견은 남자의 경우 찬성 113명(60.8%), 반대 73명(39.2%)이었고, 여자는 찬성 225명(76.5%), 반대 69명(23.5%)으로 여자 응답자의 유료화 찬성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유료화 찬성 반대 응답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허준영·정준화<sup>33</sup>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남자들은 자신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유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유료화 찬반 의견은 10대의 경우 찬성 61명(78.8%), 반대 24명(28.2%)이었고, 20대는 찬성 83명(85.6%), 반대 14명(14.4%), 30대는 찬성 74명(77.9%), 반대 21명(22.1%), 40대는 찬성 59명(59.0%), 반대 41명(41.0%), 50대는 찬성 61명(59.2%), 반대 42명(40.8%)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에서 유료화 찬성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와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유료화 반대의견이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유료화 찬성 반대 응답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허준영의 연구<sup>34</sup>에서 경로우대제도 유지에 대해 노년층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는 우호적이었으며, 청년층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직업에 따른 유료화 찬반 의견은 회사원의 경우 찬성 130명(70.3%), 반대 55명(29.7%)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주부는 찬성 139명(74.3%), 반대 48명(25.7%), 전문직과 공무원은 찬성 42명(67.7%), 반대 20명(32.3%), 자영업과 프리랜서는 찬성 27명(58.7%), 반대 19명(41.3%)으로 확인되었다. 학생과 주부가 유료화 찬성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과 프리랜서는 반대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에 따른 유료화 찬성 반대 응답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3 허준영·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34 허준영, 2016, 「세대 간 통합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료화 찬반 의견 분포(N=480)

변수		전체		찬성		반대		x2
		N	%	N	%	N	%	
		480	100	338	70.4	142	29.6	
성별	남자	186	100	113	60.8	73	39.2	13.614***
	여자	294	100	225	76.5	69	23.5	
연령대 (M=35.46, S.D=12.91)	10대	85	100	61	78.8	24	28.2	25.764***
	20대	97	100	83	85.6	14	14.4	
	30대	95	100	74	77.9	21	22.1	
	40대	100	100	59	59.0	41	41.0	
	50대	103	100	61	59.2	42	40.8	
직업	회사원	185	100	130	70.3	55	29.7	4.624
	학생·주부	187	100	139	74.3	48	25.7	
	전문직·공무원	62	100	42	67.7	20	32.3	
	자영업·프리랜서	46	100	27	58.7	19	41.3	

\* p<.05, \*\* p<.01, \*\*\* p<.001

### 3) 정책변수의 특성

정책변수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가상 정책 유형중 본인 부담수준의 평균은 2.88점(S.D=.972)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유료화로 전환한다면 통행료의 30~50%는 노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시간 50% 할인’ 정책은 평균 3.14점(S.D=1.033),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는 평균 3.27점(s.d=1.189),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은 평균 3.05점(S.D=1.342), ‘월간 정기권 지급’은 평균 3.25점(S.D=1.160)으로 나타났다. 즉, ‘출·퇴근시간 제외 무료승차’와 ‘월간 정기권 지급’ 정책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정책변수의 특성(N=480)

변수	최소	최대	M	S.D	
가상 정책 유형	본인 부담수준	1	5	2.88	.972
	모든 시간 50% 할인	1	5	3.14	1.033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	1	5	3.27	1.189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	1	5	3.05	1.342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	1	5	3.28	1.160

#### 4) 차이분석

유료화 찬반 의견에 따른 가상 정책 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인 부담수준에 대한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의 평균은 2.34점(SD=1.01), 유료화를 찬성하는 집단의 평균은 3.01점(SD=.86)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시간 50% 할인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의 평균은 3.24점(SD=1.04), 유료화를 찬성하는 집단의 평균은 3.01점(SD=1.02)으로,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에서 모든 시간 50% 할인 정책에 대해 더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의 평균은 3.94점(SD=1.01), 유료화를 찬성하는 집단의 평균은 2.99점(SD=1.14)으로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의 평균이 찬성하는 집단의 평균보다 약 1점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의 평균은 3.10점(SD=1.35), 유료화를 찬성하는 집단의 평균은 3.04점(SD=1.33)으로,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에서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에 대해 더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간 정기권 지급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반대하는 집단의 평균은 3.63점(SD=1.02), 유료화를 찬성하는 집단의 평균은 3.14점(SD=1.18)으로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가상 정책 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료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상 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6> 유료화 찬반 의견에 따른 가상 정책 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N=480)

변수		M	S.D	t
본인 부담수준	반대	2.34	1.01	-.787***
	찬성	3.01	.86	
모든 시간 50% 할인	반대	3.24	1.04	1.316
	찬성	3.01	1.02	

변수		M	S.D	t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	반대	3.94	1.01	8.940***
	찬성	2.99	1.14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	반대	3.10	1.35	.470
	찬성	3.04	1.33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	반대	3.63	1.02	4.305***
	찬성	3.14	1.18	

\* p<.05, \*\* p<.01, \*\*\* p<.001

#### 5)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유료화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종속변수의 범주가 명목척도이면서 2개의 확률 선택적 유형( $\beta_0$  = 유료화도입 반대,  $\beta_1$  = 유료화도입 찬성)이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og \left[ \frac{P(\text{유료화 도입 찬성})}{1 - P(\text{유료화 도입 찬성})} \right] = 3.693 - .087 \times \text{남자} - .034 \times \text{연령} - .324 \times \text{학생·주부} \\ - .390 \times \text{전문직·공무원} - .281 \times \text{자영업·프리랜서} \\ + .837 \times \text{본인부담수준} + .012 \times \text{모든 시간 50\% 할인} \\ - .801 \times \text{출퇴근시간 제외 무료승차} \\ + .092 \times \text{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 \\ - .232 \times \text{월간 정기권 지급}$$

유료화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상 정책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hi^2$ 를 확인한 결과  $\chi^2=126.053(p<.001)$ 으로 모형은 적합하였고, Nagelkerke  $R^2$ 를 통해 확인한 모형의 설명력은 37.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상 정책 유형과 유료화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계는 '본인부담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유료화 도입에 찬성할 오즈(Odds)는 131%씩 증가하였다(p=.000). 그리고 '출퇴근시간 제외 무료승차'가 1단위 증가할 때 유료화 도입에 찬성할 오즈(Odds)는 55.1%씩 감소하며(p=.000), '월간 정기권 지급'이 1단위 증가할 때 유료화 도입에 찬성할 오즈(Odds)는 20.7%씩 감소하였다(p=.039). 즉, '본인부

답수준'을 높게 응답할수록 유료화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출퇴근시간 제외 무료승차'와 '월간 정기권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유료화에 반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료화 도입에 찬성할 오즈(Odds)는 55.4% 낮았고(p=.001),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 유료화 도입에 찬성할 오즈(Odds)는 3.4%씩 감소하였다(p=.001). 즉, 여자가 남자보다 유료화 도입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유료화 도입에 반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상 정책 유형 중 모든 시간 50% 할인,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과 통제변수 중 직업은 유료화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연구모형 분석(N=480)

변수		B	S.E	Exp(B)
개인 특성	상수	3.693***	.924	40.181
	남자(기준변수 : 여자)	-.807**	.250	.446
	연령	-.034**	.010	.966
	학생·주부(기준변수 : 회사원)	-.324	.300	.723
	전문직·공무원	-.390	.394	.677
	자영업·프리랜서	-.281	.406	.755
가상 정책 유형	본인 부담수준	.837***	.149	2.310
	모든 시간 50% 할인	.012	.123	1.013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	-.801***	.128	.449
	소득수준별 승차권 차등할인	.092	.098	1.096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	-.232*	.112	.793
-2 Log 우도		434.270		
$\chi^2$		126.053***		
Cox & Snell R <sup>2</sup>		.266		
Nagelkerke R <sup>2</sup>		.379		

\* p<.05, \*\* p<.01, \*\*\* p<.001

##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60세 이하 수원시민의 설문조사 응답자료 480부를 활용하여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가상 정책 유형 선호도 수준을 확인하고, 가상 정책 유형의 선호도가 유료화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응답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유료화하는 것에 여성의 찬성 응답이 많았고, 10~30대에서 유료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sup>35</sup> 다른 선행연구에서 여성과 비교해 남성이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sup>36</sup>을 볼 때,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향후에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상 정책 유형에 따른 선호도 수준은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에 대한 선호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특정 목적 외에는 지하철을 탈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sup>37</sup>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만으로도 이동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료요금인

35 노시학·정은혜, 2012,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3), 45-58쪽.

36 허준영·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37 송기욱, 2011, 「김해시 민자 도시철도 노인요금제도 개선방안」, 『경남발전』 5, 75-88쪽.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sup>38</sup>과 같이 이동권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무직에 비해 근로자인 노인이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빈도가 높다고 보고된 것처럼<sup>39</sup>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면 무임승차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등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훼손될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에 대한 선호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자체가 비경합적 소비(Non-rival Consumption)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즉, 출·퇴근 시간이 아닌, 지하철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도 다른 승객들의 편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등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수원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여러 도시에서 교통체증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만 할인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가상 정책 유형 중 ‘본인 부담수준’이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60세 미만 수원시민이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지하철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더 많이 할 의향이 높을수록 유료화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공정담론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공정(Fairness)의 개념은! 관점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 제도를 활용한다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에 게도 수용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8 노시학 정은혜, 2012,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3), 45~58쪽.

39 허준영·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40 석재은·정경희·김용하·이윤경, 2005,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로우대 정책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노인 친화적인 교통정책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대기시간, 대중교통까지의 도보거리,<sup>41</sup> 노인을 위한 특별 교통서비스의 역할,<sup>42</sup> 대중교통 정보 및 유니버설디자인<sup>43</sup>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수원시 모집단 분포에 맞게 할당 표집하여 노인 집단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투고일 2022년 4월 3일 심사일 2022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41 Wong, R., Szeto, W., Linchuan Yang, Y. & Wong, S., 2018, "Public transport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elderly mobility", *Transport Policy*, 63, pp.73~79.

42 Fengming, S., Michael, G. & Bell, B., 2009, "Transport for older people: Characteristics and solutions",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25(1), pp.46~55.

43 Shiau, T. & Huang, W., 2014, "User perspective of age-friendly transportation: A case study of Taipei City", *Transport Policy*, 36, pp.184~191.

## 참고문헌

- 김지연 · 김시곤 · 문계웅, 2017, 「도시철도 무임소송제도 개선 방안: 신분당선 사례」,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7(6), 1009~1015쪽.
- 노시학 · 양은정, 2011, 「서울시 이동가능 고령인구의 주요 통행패턴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45(4), 545~557쪽.
- 노시학 · 정은혜, 2012,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3), 45~58쪽.
- 문계웅, 2018, 「민간 도시철도 무인수송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재은 · 정경희 · 김용하 · 이윤경, 2005,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 김용하 · 임정기, 2015,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69, 291~321쪽.
- 설윤 · 이재민, 2021, 「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변화 분석 - 지하철 노인 운임 보조를 중심으로-」, 『교통연구』 28(4), 65~82쪽.
- 송기욱, 2011, 「김해시 민자 도시철도 노인요금제도 개선방안」, 『경남발전』 5, 75~88쪽.
- 신성일 · 이진학, 2021,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 · 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서울연구원
- 엄기복 · 이금자, 2007, 「노인교통이용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복지행정논총』 17(2), 115~137쪽.
- 이재훈 · 박지훈 · 박진호 · 전병관 · 최의평 · 박정수, 2016, 「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 698~709쪽.
- 이혜령 · 송기욱, 2022,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의식변화 연구-부산과 김해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2(1), 83~93쪽.
- 임유진, 2021, 「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29(2), 53~73쪽.
- 정태석, 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 사회』 132, 12~46쪽.
- 조용준 · 정가형 · 김현아 · 이미진 · 이상훈, 2021, 「노인 연령인식 및 제도관련 여론조사」, 『정책현안IF 이슈매거진』 8호, 수원시정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2014,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 허준영, 2016, 「세대 간 통합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허준영 · 정준화, 2021, 「경로우대제도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6, 131~150쪽.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지하철 3호선'을 세류역까지 연장 공약」, 『기호일보』 2022년 4월 24일(<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382>).
- 「[팩트체크] 새 정부에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줄어드냐?」, 『연합뉴스』 2022년 3월 25일(<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5447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KOSIS, 2022,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pp.1149~1160.
- Fengming, S., Michael, G. & Bell, B., 2009, "Transport for older people: Characteristics and solutions",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25(1), pp.46~55.
- Metz, D., 2003, "Transport policy for an ageing population", *Transport Reviews*, 23, pp.375~386.
- Tzay-An, S & Wen-Kuan, H., 2014, "User perspective of age-friendly transportation: A case study of Taipei City", *Transport Policy*, 36, pp.184~191.
- Wong, R., Szeto, W., Linchuan Yang, Y. & Wong, S., 2018, "Public transport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elderly mobility", *Transport Policy*, 63, pp.73~79.

## 요 약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찬반 분포와 가상 정책 유형 선호도 수준을 확인하고, 가상 정책 유형의 선호도가 유료화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480부의 자료를 교차분석,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무임승차제도 유료화에 대한 찬반 분포는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상 정책 유형 중에는 ‘월간 정기권 지급’과 ‘출·퇴근시간 제외 무료승차’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본인 부담수준’, ‘출·퇴근시간 제외 무료승차’, ‘월간 정기권 지급’ 선호도가 무임승차제도 유료화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 제외 무료승차’, ‘월간 정기권 지급(Ex. 월 30회)’ 제도를 활용한다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에게도 수용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경로우대, 무임승차제도, 이동권, 노인, 세대통합, 지속가능성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rtual policy type preference and charging pros and cons

Cho, Halla / Cho, Yongjun / Jeong, Gahyung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opinions of Suwon citizens on the senior free ride program. As this welfare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subway for nearly 40 years, the academic discussion o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has been maintained. In this study, the public survey was conducted in 2021 to determine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program. Using this survey data, analysis methodologies such as cross-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ender and ag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the distribution of a response to the program. Among virtual policies presented in this study, ‘partial payment’, ‘free ride except for congested hours’, and ‘Introduction of monthly pass’ factors were effective in the pros and cons of the program. For preference of the virtual policy, ‘Introduction of the monthly pass’ and ‘free-ride except for congested hours’ had the high preferred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resent policy.

**Key words** : seniority preference, senior free ride program, mobility rights, the elderly, generation integration, sustainability

#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과 정책방향\*

김숙희\*\* / 김형준\*\*\* / 임혜진\*\*\*\*

1. 서론
2. 문헌고찰
3. 수원시 보행 교통사고 현황 분석
4.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현황
5.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6.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
7. 결론 및 향후과제

## 1. 서론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로 나타났다.<sup>1</sup> 또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23.1%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보행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2017~2019년) 수원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사망 교통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차대사람 사고로 나타나 차대사람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 본 연구는 SRI-기본-2021-09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와 제86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Senior 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Researcher,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dukkubi0512@suwon.re.kr, 031-220-8070)

\*\*\*\*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 R&DB센터 대리(Assistant manager, ITS Korea)

1 도로교통공단, 2020, 「2020년판(2018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2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차대사람 사고의 경우 횡단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또한,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보행 교통사고 발생 비율 중 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수원시 시간대별 보행 교통사고는 22~02시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20~02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다. 따라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으므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자 안전도 개선을 위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도 보행 안전성 개선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확대를 위해 향후 도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보행 안전성 개선을 위해 보행 이용여건 현황 분석 및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적정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보행교통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을 위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용자 만족도와 선호도 분석을 통해 스마트 보행안전 서비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수원시 내 확대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4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 2. 문헌고찰

### 1)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개요<sup>5</sup>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보도를 보행하거나 도로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차량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상에 설치된 인공지능 기반의 인프라 및 운영·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주로 보행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과 학교 앞에 중점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일반 보행자와 교통약자, 스마트폰 이용자의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감소, 적신호 시 보행자 횡단보도 잔류비율 감소, 차량 정지선 위반건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1〉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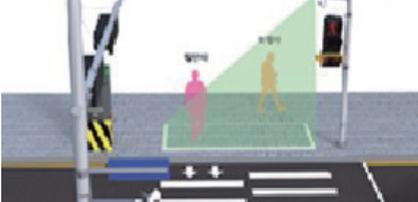
구분	내용
목적	- 횡단보도에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도입으로 일반보행자와 교통약자들의 횡단보도 보행 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서비스	-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스쿨존, 실버존 등)
기대 효과	- 일반보행자와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 저시력자), 스마트폰 이용자의 횡단보도 보행 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발생 감소 - 횡단보도 시인성 상황에 따른 보행자 무단횡단 및 적신호 시 보행자 횡단보도 잔류비율 감소 - 차량 정지선 위반건수 감소

### 2)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유형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으로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횡단보도 유도등, LED 바닥신호등, 집중조명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보행자 자동인식 장치, 스마트폰 차단 등이 있다.

5 스마트 서울 포털(<http://smart.seoul.go.kr>).

〈표 2〉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유형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횡단보도 유도등	LED 바닥신호등									
										
집중조명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table border="1"> <tr> <td data-bbox="605 899 656 957">녹색 점등</td> <td data-bbox="664 899 723 957"></td> <td data-bbox="731 899 1020 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을 위해 좌우 진압을 실시해요</li> <li>•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li> </ul> </td> </tr> <tr> <td data-bbox="605 964 656 1022">녹색 점멸</td> <td data-bbox="664 964 723 1022"></td> <td data-bbox="731 964 1020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하오니 다음신호를 기다려주세요.</li> <li>•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주세요.</li> </ul> </td> </tr> <tr> <td data-bbox="605 1030 656 1088">적색 점멸</td> <td data-bbox="664 1030 723 1088"></td> <td data-bbox="731 1030 1020 1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합니다. 차도로 진입하지 마세요.</li> <li>• 신속히 보도방향으로 이동하세요</li> <li>• 무단횡단은 위험합니다.</li> </ul> </td> </tr> </table>	녹색 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을 위해 좌우 진압을 실시해요</li> <li>•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li> </ul>	녹색 점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하오니 다음신호를 기다려주세요.</li> <li>•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주세요.</li> </ul>	적색 점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합니다. 차도로 진입하지 마세요.</li> <li>• 신속히 보도방향으로 이동하세요</li> <li>• 무단횡단은 위험합니다.</li> </ul>
녹색 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을 위해 좌우 진압을 실시해요</li> <li>•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li> </ul>								
녹색 점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하오니 다음신호를 기다려주세요.</li> <li>•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주세요.</li> </ul>								
적색 점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합니다. 차도로 진입하지 마세요.</li> <li>• 신속히 보도방향으로 이동하세요</li> <li>• 무단횡단은 위험합니다.</li> </ul>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스마트폰 차단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과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있다.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은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안전속도를 지키게 하는 교통안전시설이며,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신호,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단속장비(CCTV 등)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시설이다.

횡단보도 관련 시스템으로는 횡단보도 유도등, LED 바닥신호등, 집중조명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스마트폰 차단이 있다.

횡단보도 유도등은 횡단보도 옆에 LED 유도등을 설치하여 야간·악천후 시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LED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앞쪽에 LED를 매립 설치하여 보행 신호를 녹색, 적색으로 표출하는 장치이다. 집중조명시설은 횡단보도부 및 보행자 대기지역에 주변보다 밝고 색상이 다른 조명을 설치해 운전자가 멀리서도 횡단보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이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는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신호(차량·보행 등)와 경고안내방송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신호기 시스템이며,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는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차단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진입 시 자동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차단 또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보행자의 휴대폰 사용을 막는 스마트폰 앱이다.

### 3)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국내 운영사례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과 보행 사망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행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보행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서울특별시<sup>6</sup>에서는 도시 내 보행 안전성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감지센서 기반 보행자 안전 감지 및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서행운전 및 정지선 준수를 유도하는 횡단보도로 소개하고 있다. 도입 목적으로는 보행자 및 차량 감지 시스템 및 정보통신기술(ICT) 교통신호를 기반으로 무단횡단 억제, 제한속도 및 정지선 준수 유도 등이 있다.

6 서울특별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http://www.smart.seoul.go.kr/>).

부산광역시<sup>7</sup>는 2015년부터 관내 글로벌 스마트시티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하여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개선하고 있다. 도입 목적으로는 횡단보도 보행 안전성 개선 및 교통단속시스템의 자동화이다.

부산광역시<sup>8</sup>의 스마트 보행시스템도 서울특별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부산 내 도입된 스마트 보행시스템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교통신호 준수를 유도하는 시스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통한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신호위반 무단횡단 경고방송,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통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및 신호연동 안전차단바 작동시스템, 보행자 감지기를 통한 보행자 감지 및 보행신호 연동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차량정지선 단속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위반 차량 감지 및 단속,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통행량과 통행속도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sup>9</sup>는 2020년부터 지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학원가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을 스마트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하여 횡단보도로 접근하는 우회전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음성과 알림판으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효과분석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운영 기간 전·후의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정지선 정지비율과 우회전 통과시간 등 운전자 행동변화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후 보행자 횡단 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정지 비율이 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입 전보다 23.2% 증가한 수치로, 보행 안전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sup>10</sup>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5-1 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7 부산광역시 글로벌 스마트 시티(<http://www.k-smartcity.kr/>).

8 부산광역시, 2020, 「광안리 스마트타운 조성으로 '한 번 더' 도약하다」.

9 세종특별자치시, 2020, 「스마트 횡단보도로 우회전 사고 막는다」.

10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https://www.smartsejong-lab.co.kr/>).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분야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은 크게 3개의 핵심 목표를 확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선체험을 통한 이용자 측면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이용자 행태변화 분석 등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이용자 수용성 및 효율성 검증이다. 세 번째 목표는 서비스 전·후 평가 및 분석,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8개의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서비스를 정의하였다. 8개의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서비스 중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는 횡단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스쿨존/실버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서 각종 IoT/ICT 검지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행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시간을 조절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 안전을 제고시키는 서비스라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는 스마트 LED 바닥 경광등, 과속방지턱 및 카메라 등의 설치로 운전자 감속을 유도하는 감속유도장치, 스마트 횡단보도 알리미, 스피커를 위한 스마트폰 알림 및 경고창 등이 있다.

#### 4)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국외 운영사례

미국<sup>11</sup>에서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스마트 횡단보도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횡단보도와 표지판에 점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점멸등이 점멸되는 체계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운영 중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보행자 및 횡단보도 시인성을 개선함으로써 보행 안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성 시스템으로는 도로 상에 설치되는 활주로형 점멸등,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는 블라드 또는 보행자 횡단 버튼, 태양광 판넬을 활용한 A/C 전원공

11 Ruichen, LED Solar Powered Pedestrian Crosswalk Signs in United States(<https://www.rctrffic.com/application/solar-traffic-sign/led-solar-powered-pedestrian-crosswalk-signs-in-united-states.html/>).

급 장치, 시스템 제어장치, 표지판 점등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sup>12</sup>에서는 국내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LED 바닥신호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보행자의 횡단보도 접근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국내 운영사례와 달리, 중국에서는 자동차 정지선 앞쪽 부분에도 활주로형의 LED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LED 바닥신호등은 중국 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보급 중인데, 중국 정부는 도입을 통해 도시 내 미래형 디자인의 교통시설을 도입하여 도시 내 미적 감각을 제고함과 동시에 운전자 및 보행자로 하여금 야간시간대와 기상악화 등의 조건에서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스페인에서도<sup>13</sup>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사례와 유사하게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스마트 횡단보도로 운영 중이다. 항시 LED 점멸등이 점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 시에 LED 점멸등이 점멸되어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보행자 횡단 시 횡단보도의 점멸등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양 끝단에 위치한 보행 표지판도 같이 점멸되어, 운전자의 횡단보도와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함으로써 보행 안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영국<sup>14</sup>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보다 한층 더 똑똑해지고, 개선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횡단보도인 Starling Crossing을 도입하였다. Starling Crossing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행자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신호를 변경하는 반응형 도로시스템을 말한다. Starling Crossing은 교통상황 및 보행자 유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형태를 바꿔가며 운영하고 있다. Starling Crossing은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방향 카메라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여 보행자 교차로의 패턴, 레이아웃, 구성, 크기 등이 교통상황에 맞게 그 형태를 변경하며 운영하는 횡단보도 시스템이다.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 Starling Crossing

12 Kunshan, China-gov A smart crosswalk with intelligent sensors and luminous road tiles(<https://www.facebook.com/KunshanCity/posts/a-smart-crosswalk-with-intelligent-sensors-and-luminous-road-tiles-recently-made/2173461142964917/>).

13 STEPVIAL, Smart Pedestrian Crossing in Vic(<https://www.stepvial.com/en/smart-pedestrian-crossing-in-vic/>).

14 Alice Morby, Camille Walala creates multicoloured pedestrian crossing for London(<https://www.dezeen.com/2016/09/23/camille-walala-multicoloured-pedestrian-crossing-london-design-festival-2016/>); Lauren RO, Smart crosswalk reacts to cars and pedestrians in real time(<https://conpaper.tistory.com/61966>).

이 보행자를 인지하여 횡단보도를 도로상에 구현하여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면 횡단보도가 없어진다. 또한, 기본석된 보행 통행 수요 산출결과를 토대로 보행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보행 통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횡단보도 폭을 넓혀서 운영하고 있다.

〈표 3〉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국외 운영사례

미국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	중국 쑤저우 LED 바닥신호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활주로형 횡단보도	영국 Starling Crossing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는 스톱비족(스마트폰과 줌비의 합성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보행하는 사람을 말함)에 대한 보행 안전성 개선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자를 엄격히 처벌하는가 하면,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도로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보행 안전성 개선을 시도하는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내 일부 주<sup>15</sup>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는 도로 횡단 시 전자책,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보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최초 적발 시에는 15~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75~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여 보행 시의 모바일기기를 보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횡단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위반 시에는 8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태국<sup>16</sup>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를 구축하였다. 중국 충칭시와 태국 방콕시의 까셋삿대학교에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구축되어 있는데, 보행 시의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보행자들과의 상충 및 스마트폰 이용 시 이동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체와 상충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 5) 선행연구

박제진 외<sup>17</sup>는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행하였고,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집중조명시설이 설치된 22개소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교통사고 6건이 증가하였지만, 야간 교통사고는 31건 감소하여 22.4%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집중조명시설의 설치비용과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을 분석한 결과, B/C는 12.8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집중조명시설의 설치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과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창환과 전은수<sup>18</sup>는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검토를 통한 관련 법체계 구축을 위

15 "Honolulu targets 'smartphone zombies' with crosswalk ban", Reuters, 2017년 7월 29일.

16 Lisa Fadiccio, There's a city in China with its own street lane for people who can't stop staring at their phones(<https://www.businessinsider.com/phone-lane-in-chinese-street-2014-9>)(<https://www.businessinsider.com/phone-lane-in-chinese-street-2014-9>).

17 박제진·박주천·하태준, 2008,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6(2), 25~33쪽.

18 모창환·전은수, 2015,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지침 등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안전 법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행자 안전 개선방안으로 보행자의 법적 권리 강화, 고령보행자를 위한 실버존 규제 강화 및 보행 규제 적합화, 생활권 도로에서 보행권 회복을 위한 법체계 합리화, 보행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 발생 후 보행자 신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량규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안광은 외<sup>19</sup>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횡단보도 투광기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포착 시야를 개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고속 충돌에 의한 사고 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사고 감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즉각적인 현장통제가 가능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부재하며, 보행 관련 연구는 법·제도 및 시스템 제안·도입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수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민 대상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원시 보행여건과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 안광은·정영주·박재성·정세연·최홍준·이종섭·서동만, 2016, 「IoT를 사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201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보처리학회, 931~934쪽.

### 3. 수원시 보행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sup>20</sup>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수원시 보행 관련 교통사고를 분석하였다. 수원시 전체 유형별 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차대사람 유형별 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보행 교통사고, 어린이 보행사고, 고령자 보행사고, 무단횡단 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를 분석하였다.

#### 1) 수원시 전체 유형별 교통사고

수원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순으로 나타났지만 사망자수의 경우 차대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수원시 전체 유형별 교통사고

구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2017	1,160	3,563	146	25	17	3
2018	1,118	3,743	136	25	12	2
2019	1,013	3,751	156	16	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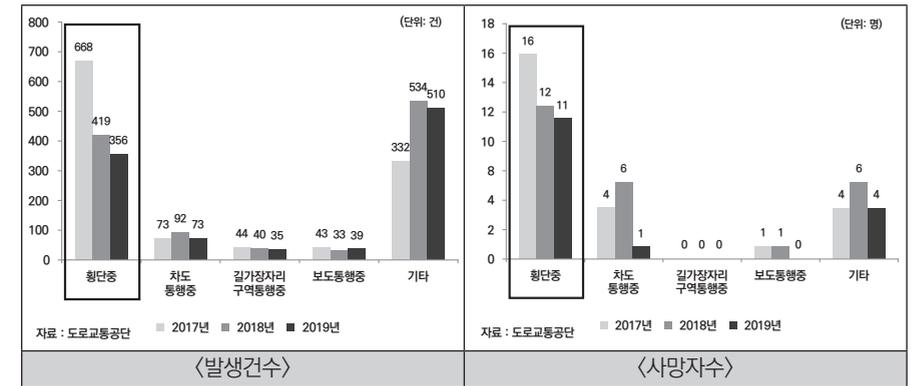
#### 2) 차대사람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횡단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원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횡단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0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표 5〉 수원시 차대사람 교통사고

구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횡단 중	차도 통행 중	길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 통행 중	기타	횡단 중	차도 통행 중	길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 통행 중	기타
2017	668	73	44	43	332	16	4	0	1	4
2018	419	92	40	33	534	12	6	0	1	6
2019	356	73	35	39	510	11	1	0	0	4



〈그림 1〉 수원시 차대사람 교통사고

#### 3) 총보행 교통사고

최근 3년간 수원시 보행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으므로, 향후 보행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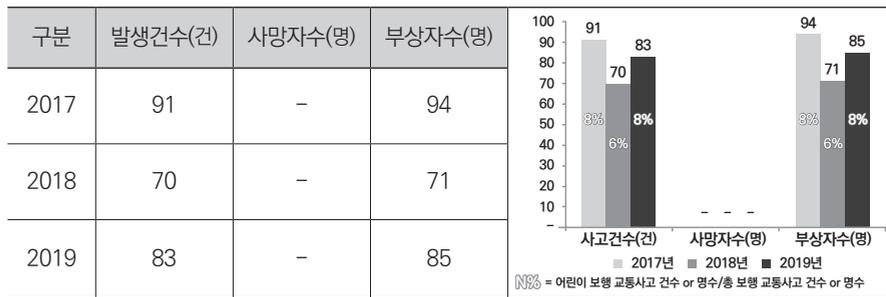
〈표 6〉 수원시 총보행 교통사고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7	1,173	27	1,178
2018	1,139	26	1,158
2019	1,014	16	1,030

#### 4)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수원시 보행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2019년 기준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수원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 5)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최근 3년간(2017~2019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보행 교통사고 발생비율 중 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보행사고 감소를 위한 향후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수원시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 6) 시간대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수

시간대별 보행 교통사고 분석 결과, 22~02시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20~02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수의 경우 16~24시 사이의 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20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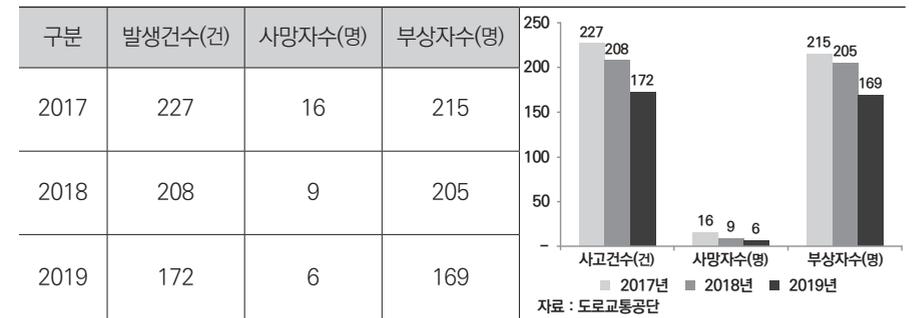
〈표 9〉 수원시 시간대별 보행 사상자수

구분	0-2시	2-4시	4-6시	6-8시	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사망자수	2017	8	2	4	1	1	1	0	3	1	1	4
	2018	3	1	3	2	1	3	2	2	0	2	6
	2019	2	1	2	2	1	1	1	0	1	1	3
부상자수	2017	52	50	52	48	105	96	88	119	150	159	145
	2018	76	45	47	49	94	95	98	123	141	158	112
	2019	64	40	36	54	81	75	75	116	117	168	115

#### 7) 무단횡단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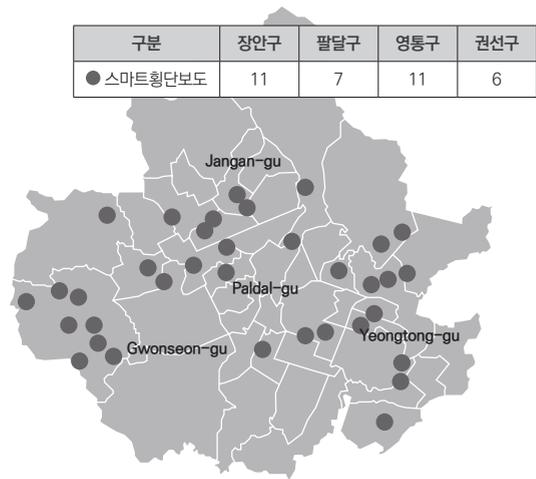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으므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수원시 무단횡단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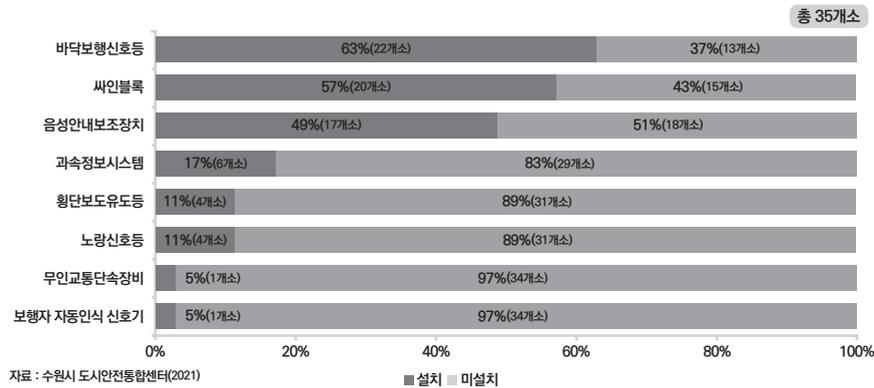
#### 4.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현황

수원시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총 35개소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총 8개 유형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장안구, 영통구에 각 11개소, 팔달구 7개소, 권선구 6개소이다.



자료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2021)

〈그림 2〉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현황



〈그림 3〉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설치 현황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설치유형으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싸인블록, 음성안내보조장치, 횡단보도 유도등, 과속경보시스템, 노란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등이 있다. 도입 현황은 바닥보행신호등(63%)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싸인블록(57%), 음성안내보조장치(49%), 과속경보시스템(1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3).

#### 5.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6일간(21.05.07~21.05.12)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820명이 응답하였다. 설문항목은 기존문헌을 통해 연구목적에 맞는 항목을 도출하여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그 후 1차 설문지를 구축하여 사전설문을 통해 설문지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일반특성(성별/연령대, 직업, 거주지, 차량보유여부), 통행특성,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현황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행특성 항목을 통해 수원시민이 선호하는 통행수단 선호도, 신호위반 차량 시도/목격 경험 및 이유, 수원시 보행환경 만족도, 무단횡단·신호위반 시도/목격 경험 및 이유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현황 항목을 통해 이용경험 및 종류, 이용 후 변화(무단횡단,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인지도, 만족도, 기대효과, 선호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 응답자 일반사항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820명으로 유효한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10대와 60대

를 제외한 모든 연령의 참여율이 높았고, 거주지역의 경우 영통구(33.0%), 권선구(27.4%), 장안구(26.2%), 팔달구(13.3%) 순으로 참여했으며, 직업의 경우 직장인(52.9%)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차량 소유 여부의 경우 소유자(60.7%)가 미소유자(39.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사항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응답자 일반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08	49.8	직업	학생	161	19.6
	여	412	50.2		직장인	434	52.9
연령대	만 14~19세	101	12.3	자영업	51	6.2	
	만 20~29세	160	19.5	주부	124	15.1	
	만 30~39세	163	19.9	기타	50	6.1	
	만 40~49세	172	21.0	차량 소유 여부	있음	498	60.7
	만 50~59세	149	18.2		없음	322	39.3
	만 60~69세	75	9.1				
합계		820	100.0	합계	820	100.0	

(2) 통행수단별 선호도

수원시민의 통행수단별 선호도는 보행(73.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가용(73.0%), 대중교통(6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의 도출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표 12〉 통행수단별 선호도

구분		매우 선호한다	선호한다	보통	선호하지 않는다	매우 선호하지 않는다
보행	빈도(명)	157	444	192	24	3
	비율(%)	19.1	54.1	23.4	2.9	0.4
자가용	빈도(명)	237	362	178	38	5
	비율(%)	28.9	44.1	21.7	4.6	0.6
대중교통	빈도(명)	134	412	232	37	5
	비율(%)	16.3	50.2	28.3	4.5	0.6

구분		매우 선호한다	선호한다	보통	선호하지 않는다	매우 선호하지 않는다
자전거	빈도(명)	50	196	239	229	106
	비율(%)	6.1	23.9	29.1	27.9	12.9
택시	빈도(명)	21	116	275	305	103
	비율(%)	2.6	14.1	33.5	37.2	12.6
개인형 이동수단	빈도(명)	25	50	164	261	320
	비율(%)	3.0	6.1	20.0	31.8	39.0

(3) 무단횡단 시도 및 목격

무단횡단의 경우 ‘목격’(42.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도와 목격을 둘 다 한 적 있음’(35.0%)이 높게 나타났다. 시도 이유는 ‘차량이 없어서’(27.3%), ‘급한 용무가 있어서’(18.5%), ‘횡단보도가 멀어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의 경우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이 건너서’ 등으로 나타났다.

〈표 13〉 무단횡단 시도 및 목격 경험

구분	시도	목격	둘 다 있음	없다
빈도(명)	149	351	287	33
비율(%)	18.2	42.8	35.0	4.0

〈표 14〉 무단횡단 시도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급한 용무가 있어서	319	18.5
차량이 없어서	452	27.3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243	14.1
단속하지 않아서	122	7.1
도로 폭이 좁아서	249	14.5
횡단보도가 멀어서	256	14.9
특별한 이유 없음	71	4.1
기타	8	0.5
합계	820	100.0

**(4) 신호위반 시도 및 목격**

신호위반의 경우 ‘목격’(6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둘 다 있음’(12.9%)이 높게 나타났다. 신호위반을 시도한 이유는 ‘차량·보행자가 없어서’(27.3%),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21.4%), ‘단속을 하지 않아서’(21.1%)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황색신호로 변해서’, ‘신호를 헛갈려서’ 등으로 나타났다.

**〈표 15〉 신호위반 시도 및 목격 경험**

구분	시도	목격	둘 다 있음	없다
빈도(명)	62	533	106	119
비율(%)	7.6	65.0	12.9	14.5

**〈표 16〉 신호위반 시도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급한 용무가 있어서	186	15.6
차량·보행자가 없어서	327	27.3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256	21.4
단속을 하지 않아서	252	21.1
특별한 이유 없음	140	11.7
기타	35	2.9
합계	820	100.0

**(5)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경험**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이용해본 비율’(32.1%) 보다 ‘비이용 비율’(67.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가 경험해 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무인교통 단속장비’(24.1%),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최근 도입된 시스템 보다는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본 것으로 보인다.

**〈표 17〉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63	32.1
아니오	557	67.9

**〈표 18〉 이용해 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용자 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199	21.4
무인교통 단속장비	224	24.1
횡단보도 유도등	65	7.0
LED 바닥신호등	181	19.5
집중조명시설	87	9.4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136	14.7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28	3.0
스마트폰 차단	8	0.9
합계	820	100.0

**(6) 이용 후 효과**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후 효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속도위반’, ‘운전 시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보행 시 신호위반’, ‘무단횡단’ 순으로 위반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자들은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9〉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 후 효과**

구분		매우 그렇다 ←		보통		→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보행 시 무단횡단 횟수가 감소하십니까?	빈도(명)	49	18.6	43	16.3	60	22.8	75	28.5	16	6.1	14	5.3	6	2.3
	비율(%)	18.6	16.3	22.8	28.5	6.1	5.3	2.3							
보행 시 신호위반 횟수가 감소하십니까?	빈도(명)	52	19.8	54	20.5	66	25.1	57	21.7	18	6.8	10	3.8	6	2.3
	비율(%)	19.8	20.5	25.1	21.7	6.8	3.8	2.3							
운전 시 신호위반 횟수가 감소하십니까?	빈도(명)	57	21.7	73	27.8	52	19.8	54	20.5	13	4.9	10	3.8	4	1.5
	비율(%)	21.7	27.8	19.8	20.5	4.9	3.8	1.5							
운전 시 속도위반 횟수가 감소하십니까?	빈도(명)	61	23.2	81	30.8	51	19.4	44	16.7	12	4.6	13	4.9	1	0.4
	비율(%)	23.2	30.8	16.7	4.6	4.9	0.4								
운전 시 정지선 위반 횟수가 감소하십니까?	빈도(명)	53	20.2	78	29.7	49	18.6	53	20.2	19	7.2	9	3.4	2	0.8
	비율(%)	20.2	29.7	18.6	20.2	7.2	3.4	0.8							

(7) 인지도 및 만족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알고 있다’(44.8%)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47.6%)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 횡단보도와 대비하여 스마트 횡단보도의 ‘만족도가 높다’(37.5%)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설치위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적절하지 않다’(44.9%)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향후 적정 설치위치 선정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인지도 및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	보통	----->	매우 그렇지 않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빈도(명)	68	122	177	284	88	42	39
	비율(%)	8.3	14.9	21.6	34.6	10.7	5.1	4.8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빈도(명)	95	130	165	261	76	52	41
	비율(%)	11.6	15.9	20.1	31.8	9.3	6.3	5.0
일반횡단보도 대비 스마트 횡단보도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빈도(명)	62	103	142	327	91	52	43
	비율(%)	7.6	12.6	17.3	39.9	11.1	6.3	5.2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설치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47	78	110	217	128	119	121
	비율(%)	5.7	9.5	13.4	26.5	15.6	14.5	14.8

(8) 기대효과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기대효과로 ‘어린이 보행안전’(60.6%)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령자 보행안전’, ‘신호·속도위반 감소’, ‘차량운전자 안전’, ‘무단횡단’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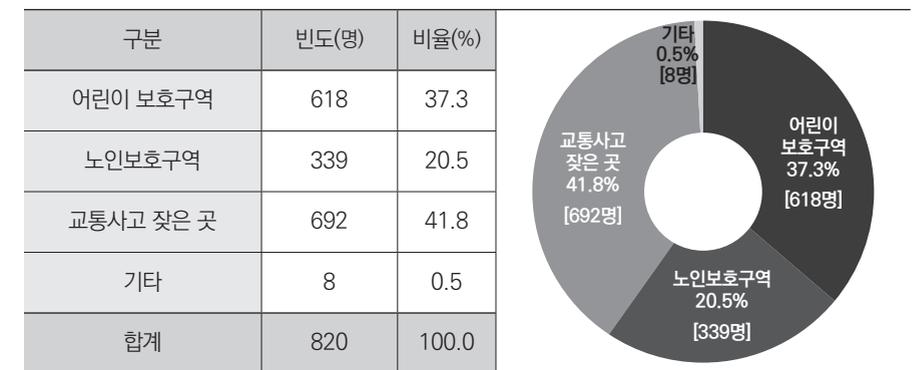
〈표 21〉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기대효과

구분		매우 그렇다	<-----	보통	----->	매우 그렇지 않다		
무단횡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93	130	167	230	104	54	42
	비율(%)	11.3	15.9	20.4	28.0	12.7	6.6	5.1
신호·속도위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100	161	198	212	75	41	33
	비율(%)	12.2	19.6	24.1	25.9	9.1	5.0	4.0
어린이 보행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138	176	183	189	73	26	35
	비율(%)	16.8	21.5	22.3	23.0	8.9	3.2	4.3
고령자의 보행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137	172	173	188	79	33	38
	비율(%)	16.7	21.0	21.1	22.9	9.6	4.0	4.6
차량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102	176	173	229	82	27	31
	비율(%)	12.4	21.5	21.1	27.9	10.0	3.3	3.8

(9) 추가 설치 지점

향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어떤 지점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41.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37.3%), ‘노인보호구역’(20.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교차로’, ‘신호대기지점’, ‘모든 구간’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22〉 향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설치지점



## 6.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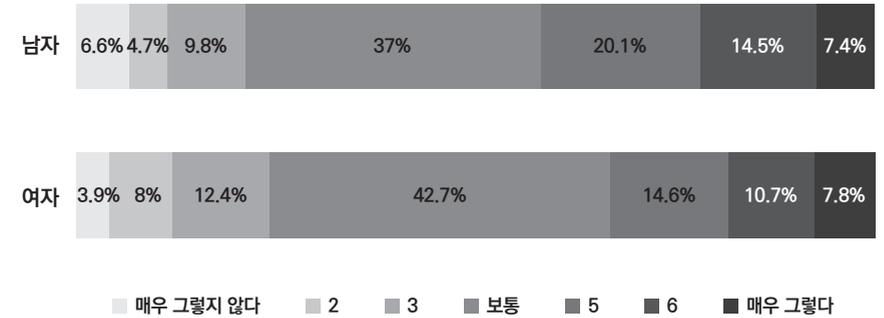
사회경제지표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수원시민의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항목 중 교차분석을 위해 선정한 사회경제지표는 성별, 연령대별, 차량 소유 여부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교차분석 결과 중 각 항목별 특성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별, 차량 소유 여부 유형에 따른 수원시 보행환경,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만족도 및 선호도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1) 성별에 따른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모두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 37%, 여성 : 42.7%). 그 다음으로는 ‘5’ 수준(보통과 매우 그렇다 사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남성 : 20.1%, 여성 : 14.6%), 전반적으로 남성, 여성 모두 수원시 내에 설치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나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은 15.462로 산출되었고, 유의수준은 0.017로 나타나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성별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구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총계	
남성	빈도(명)	27	19	40	151	82	59	30	408
	비율(%)	6.6	4.7	9.8	37	20.1	14.5	7.4	100
여성	빈도(명)	16	33	51	176	60	44	32	412
	비율(%)	3.9	8.0	12.4	42.7	14.6	10.7	7.8	100
총계	빈도(명)	43	52	91	327	142	103	62	820
	비율(%)	5.2	6.3	11.1	39.9	17.3	12.6	7.6	100



〈그림 4〉 성별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성별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모두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중 LED 바닥신호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 23.8%, 여성 : 24.5%). 그 다음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과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은 14.603으로 산출되었고, 유의수준은 0.041로 나타나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성별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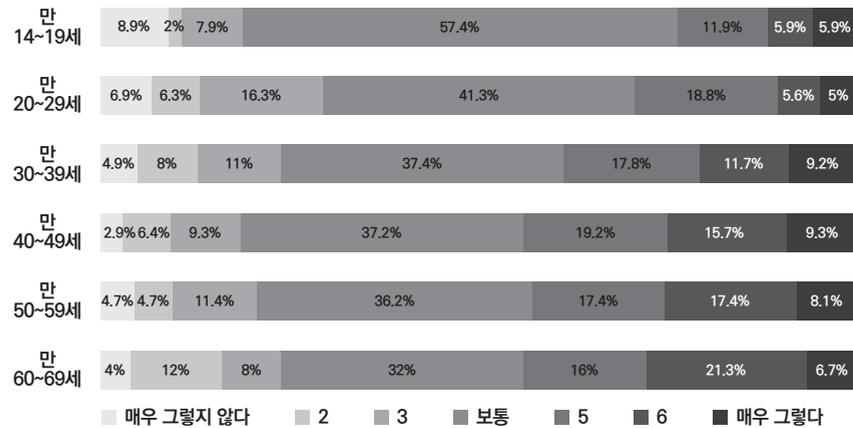
구분	과속경보 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횡단보도 유도등	LED 바닥 신호등	집중 조명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스마트폰 차단	총계
남성	빈도(명)	93	78	48	97	34	10	26	408
	비율(%)	22.8	19.1	11.8	23.8	8.3	2.5	6.4	100
여성	빈도(명)	75	75	50	101	27	32	29	412
	비율(%)	18.2	18.2	12.1	24.5	6.6	7.8	7.0	100
총계	빈도(명)	168	153	98	198	61	42	55	820
	비율(%)	20.5	18.7	12.0	24.1	7.4	5.1	6.7	100

### 2) 연령대에 따른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분석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연령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구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총계			
만 14~19세	빈도(명)	9	2	8	58	12	6	6	101
	비율(%)	8.9	2.0	7.9	57.4	11.9	5.9	5.9	100
만 20~29세	빈도(명)	11	10	26	66	30	9	8	160
	비율(%)	6.9	6.3	16.3	41.3	18.8	5.6	5.0	100
만 30~39세	빈도(명)	8	13	18	61	29	19	15	163
	비율(%)	4.9	8.0	11.0	37.4	17.8	11.7	9.2	100
만 40~49세	빈도(명)	5	11	16	64	33	27	16	172
	비율(%)	2.9	6.4	9.3	37.2	19.2	15.7	9.3	100
만 50~59세	빈도(명)	7	7	17	54	26	26	12	149
	비율(%)	4.7	4.7	11.4	36.2	17.4	17.4	8.1	100
만 60~69세	빈도(명)	3	9	6	24	12	16	5	75
	비율(%)	4.0	12.0	8.0	32.0	16.0	21.3	6.7	100
총계	빈도(명)	43	52	91	327	142	103	62	820
	비율(%)	5.2	6.3	11.1	39.9	17.3	12.6	7.6	100



〈그림 5〉 연령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그다음으로는 연령대에 따라 '3' 수준(보통과 매우 그렇지 않다 사이 수준) 또는 '5' 수준(보통과 매우 그렇다 사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수원시 내에 설치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값은 53.700으로 산출되었고, 유의수준은 0.005로 나타나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분석 결과,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비율이 낮은 10대의 경우, LED 바닥신호등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20대부터는 LED 바닥신호등과 동시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운전자 관련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값은 72.137로 산출되었고, 유의수준은 0.000로 나타나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연령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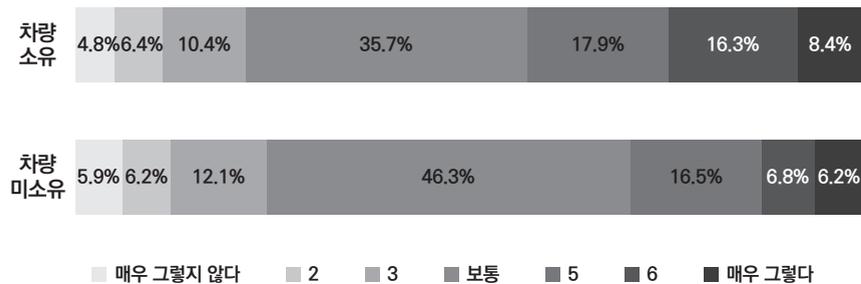
구분	과속경보 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횡단보도 유도등	LED바닥 신호등	집중 조명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스마트폰 차단	총계	
만 14~19세	빈도(명)	10	14	10	43	8	6	4	6	101
	비율(%)	9.9	13.9	9.9	42.6	7.9	5.9	4.0	5.9	100
만 20~29세	빈도(명)	24	36	19	41	13	7	17	3	160
	비율(%)	15.0	22.5	11.9	25.6	8.1	4.4	10.6	1.9	100
만 30~39세	빈도(명)	31	37	22	37	12	8	7	9	163
	비율(%)	19.0	22.7	13.5	22.7	7.4	4.9	4.3	5.5	100
만 40~49세	빈도(명)	35	28	25	34	12	9	14	15	172
	비율(%)	20.3	16.3	14.5	19.8	7.0	5.2	8.1	8.7	100
만 50~59세	빈도(명)	46	26	17	31	13	5	4	7	149
	비율(%)	30.9	17.4	11.4	20.8	8.7	3.4	2.7	4.7	100
만 60~69세	빈도(명)	22	12	5	12	3	7	9	5	75
	비율(%)	29.3	16.0	6.7	16.0	5.0	9.3	12.0	6.7	100
총계	빈도(명)	168	153	98	198	61	42	55	45	820
	비율(%)	20.5	18.7	12.0	24.1	7.4	5.1	6.7	5.5	100

### 3)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만족도 및 선호도 차이 분석결과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분석 결과, 차량 소유자, 미소유자 모두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소유자 : 35.7%, 차량 미소유자 : 46.3%). 그 다음으로는 ‘5’ 수준(보통과 매우 그렇다 사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차량 소유자 : 17.9%, 차량 미소유자 : 16.5%), 전반적으로 차량 소유자, 미소유자 모두 수원시 내에 설치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나 약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값은 21.735로 산출되었고, 유의수준은 0.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구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총계
		매우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차량 소유	빈도(명)	24	32	52	178	89	81	42	498
	비율(%)	4.8	6.4	10.4	35.7	17.9	16.3	8.4	100
차량 미소유	빈도(명)	19	20	39	149	53	22	20	322
	비율(%)	5.9	6.2	12.1	46.3	16.5	6.8	6.2	100
총계	빈도(명)	43	52	91	327	142	103	62	820
	비율(%)	5.2	6.3	11.1	39.9	17.3	12.6	7.6	100



〈그림 6〉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분석 결과,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미소유자의 경우, LED 바닥신호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 소유자의 경우, 운전자가 선호하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소유자는 LED 바닥신호등과 무인교통 단속장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 미소유자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LED 바닥신호등,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값은 27.089로 산출되었고, 유의수준은 0.000로 나타나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구분		과속경보 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횡단보도 유도등	LED 바닥 신호등	집중 조명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스마트폰 차단	총계
		차량 소유	빈도(명)	123	90	66	97	37	22	
	비율(%)	24.7	18.1	13.3	19.5	7.4	4.4	6.4	6.2	100
차량 미소유	빈도(명)	45	63	32	101	24	20	23	14	322
	비율(%)	14.0	19.6	9.9	31.4	7.5	6.2	7.1	4.3	100
총계	빈도(명)	168	153	98	198	61	42	55	45	820
	비율(%)	20.5	18.7	12.0	24.1	7.4	5.1	6.7	5.5	100

### 4) 시사점

수원시 보행 교통사고 분석결과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순으로 나타났지만 사망자수의 경우 차대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횡단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원시 보행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수가 증가 추세로 분석되었다. 또한, 22~02시에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대체로 20~02시에 보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안전성 개

선을 위해 수원시 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원시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총 35개소에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총 8개 유형의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장안구, 영통구에 각 11개소, 팔달구 7개소, 권선구 6개소 순이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통행수단별 선호도는 보행(73.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자가용(73.0%), 대중교통(66.5%) 순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시도 및 목격에 대한 응답결과는 목격(42.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도, 목격 둘 다 있음(35.0%)으로 나타났다. 시도 이유는 차량이 없어서(27.3%), 급한 용무가 있어서(18.5%), 횡단보도가 멀어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호위반 시도 및 목격에 대한 응답결과도 목격(6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둘 다 있음(12.9%)이 높게 나타났다. 신호위반을 시도한 이유는 차량·보행자가 없어서(27.3%), 사고가 안날 것 같아서(21.4%), 단속을 하지 않아서(21.1%)로 나타났다. 수원시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 비율(39.1%)이 불만족 비율(10.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 이유는 보도 정비·유지관리 미흡(27.9%), 안전성이 낮아서(22.1%), 보도 인프라 부족, 보도 연결성 부족(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자(32.1%) 보다 비이용자(67.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가 경험해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무인교통 단속장비(24.1%),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최근 도입된 시스템보다는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 후 효과에 대한 문항에 대해 과반수가 이용 후 무단횡단, 신호위반, 속도위반, 정지선 위반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인지도에 묻는 문항에 알고 있다(44.8%)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47.6%)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일반 횡단보도 대비 만족한다(37.5%)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설치위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적절하지 않다(44.9%)

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현재 주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시스템 설치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좀 더 필요한 지점들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원시 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적정 설치위치 선정을 위한 개선방향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기대효과인 무단횡단 및 신호·속도위반 감소와 어린이 보행안전, 고령자 보행안전, 차량운전자 안전에 대해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어린이 보행안전(60.6%)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향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설치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잦은 곳(41.8%), 어린이 보호구역(37.3%), 노인보호구역(20.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교차로, 신호대기지점, 모든 구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회경제지표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수원시민의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수원시 보행환경 만족도는 남성, 여성 모두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여성 모두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중 LED 바닥신호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과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수원시 보행환경 만족도는 만 14~19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4~19세는 '만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분석 결과,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전자 비율이 낮은 10대의 경우 LED 바닥신호등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20대부터는 LED 바닥신호등과 동시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운전자 관련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대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수원시 보행환경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는 '보통' 수준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미소유자의 경우, LED 바닥신호등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차량 소유자의 경우 운전자가 선호하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소유자는 LED 바닥신호등과 무인교통 단속장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 미소유자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결론 및 정책방향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수원시 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시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지표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차량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스마트 보행안전 일부 만족도 및 선호도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운전자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대의 경우에는 LED 바닥신호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전자 비율이 증가하는 타 연령대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과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과속단속시스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대가 주로 통행하는 학교 앞 인근의 횡단보도는 LED 바닥신호등을 더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간선도로 등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상의 횡단보도는 과속단속시스템을 더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적정 설치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운영중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적정 설치지점 검토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설치지점을 조사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문 응답 중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로 어린이 보행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적정 설치지점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관리가 필요하다. 수원시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22시~02시에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20시~02시에 보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야간 시간대에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보행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도로 상에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야간에는 어린이와 노인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지점 중심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보행안전 뿐 아니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도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호위반을 시도한 이유로는 차량·보행자가 없어서, 사고가 안날 거 같아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 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시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등 운전자 대상 단속 시스템이나 안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도 함께 도입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 교통시설이지만, 이러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도입을 통해 보행 안전도가 제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행 안전성 개선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국민 생명 보호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이후 설치 지점별로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인구 구성에 적합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간과 야간의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함으로써 주간과 야간의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이용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수원시 내에 확대 도입되어 운영되는 경우, 이용자들의 연령, 성별, 차량 소유 여부 등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도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보행 안전성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 내의 보행 교통사고와 보행 안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적정방향을 수립하여 수원시 내 적정 위치에 적절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입 확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2년 4월 25일 심사일 2022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 참고문헌

- 김소용, 2021,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최적 항공사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희, 2021, 「수원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2020, 「2020년판(2018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도로교통공단.
- 모창환 · 전은수, 2015,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 박상민 · 김경현 · 고한검 · 목재균 · 이종화 · 윤일수, 2017,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BRT 및 바이모달트램 이용 속성의 효용 산정 연구(세종시를 중심으로)」, 『한국도로학회지』 19(4), 45~52쪽.
- 박제진 · 박주천 · 하태준, 2008,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6(2), 25~33쪽.
- 박찬수, 1995, 「컨조인트 분석의 시장점유율 예측타당성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마케팅학회지』, 19~36쪽.
- 부산광역시, 2020, 「광안리 스마트타운 조성으로 ‘한 번 더’ 도약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2020, 「스마트 횡단보도로 우회전 사고 막는다」.
- 안광은 · 정영주 · 박재성 · 정세연 · 최홍준 · 이종섭 · 서동만, 2016, 「IoT를 사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201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보처리학회, 931~934쪽.
- 이원규 · 허중배 · 이해령, 2020, 「부산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입 방안」, 부산연구원.
- 장영주 · 금기정 · 손승녀 · 김현명, 2011,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보행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6(4), 209~221쪽.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부산광역시 글로벌 스마트시티(<http://www.k-smartcity.kr/>).
- 서울특별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http://www.smart.seoul.go.kr/>).
- 수원시청 만민광장(<https://www.suwon.go.kr/>).
-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https://www.smartsejong-lab.co.kr/>).
- Alice Morby, Camille Walala creates multicoloured pedestrian crossing for London(<https://www.dezeen.com/2016/09/23/camille-walala-multicoloured-pedestrian-crossing-london-design-festival-2016/>).

- Kunshan, China-gov A smart crosswalk with intelligent sensors and luminous road tiles (<https://www.facebook.com/KunshanCity/posts/a-smart-crosswalk-with-intelligent-sensors-and-luminous-road-tiles-recently-made/2173461142964917/>).
- Lauren RO, Smart crosswalk reacts to cars and pedestrians in real time (<https://conpaper.tistory.com/61966>).
- Lisa Fadiccio, There's a city in China with its own street lane for people who can't stop staring at their phones (<https://www.businessinsider.com/phone-lane-in-chinese-street-2014-9>).
- Ruichen, LED Solar Powered Pedestrian Crosswalk Signs in United States (<https://www.rctrffic.com/application/solar-traffic-sign/led-solar-powered-pedestrian-crosswalk-signs-in-united-states.html/>).
- STEPVIAL, Smart Pedestrian Crossing in Vic (<https://www.stepvial.com/en/smart-pedestrian-crossing-in-vic/>).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 「부산 남구, 활주로형 횡단보도 확대 설치」, 『로컬세계』 2020년 9월 25일.
- “Honolulu targets ‘smartphone zombies’ with crosswalk ban”, Reuters, 2017년 7월 29일.

## 요 약

본 연구는 수원시 내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6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차량 소유 여부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한 수원시민의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별 특성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지표에 따른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및 선호도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차량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 대해 만족도 및 선호도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전자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대의 경우에는 LED 바닥신호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전자 비율이 높은 타 연령대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과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과속단속시스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대가 주로 통행하는 학교 앞 인근의 횡단보도는 LED 바닥신호등을 더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간선도로 등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상의 횡단보도는 과속단속시스템을 더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의 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방향으로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적정 설치지점을 고려해야 하고,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보행안전뿐 아니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도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 방향을 수립하여 수원시 내 적정 위치에 적절한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입 확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보행안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만족도,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선호도, 이용자 만족도 선호도 차이분석

## ABSTRACT

### Satisfaction and Preference Differenc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 for Introduction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in Suwon city

Kim Sukhee / Kim Hyungjun / Lim Hyejin

This research suggested a policy direction for the expansion and introduction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s in Suwon city.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Suwon citizens for 6 day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Suwon citizens for the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according to gender, age group, and vehicle ownership were analyzed. Through cross analysis, the results of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tors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rough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the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according to socioeconomic indicators, it was confirmed that some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 group and vehicle ownership. In the case of teenagers with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driver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it was found that LED floor traffic lights were the most preferr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other age groups with an increasing proportion of drivers prefer speed enforcement systems, such as speed warning system signs and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Therefore, it seems that the LED floor traffic lights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crosswalks in front of the school where teenagers pass, and the speed enforc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cusing on the crosswalks on roads with high traffic volume, such as arterial roads. It is

considered that the introduction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users of the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As a policy direction, it was found that an appropriate installation point for the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nd accident management for pedestrian accidents at night is necessa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mprove not only pedestrian safety of vehicles passing on the roa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form an overal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an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expansion project with continuous interest in Suwon city so that an appropriate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can be introduced and operated at an appropriate location in Suwon city

**Key words** :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Pedestrian Safety, Satisfaction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Preference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User Satisfaction Preference Difference Analysis

제19호  
2022

# 부 록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수원학연구』 간행 및 편집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4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0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09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원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수원학연구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수원학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수원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2. 논문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2.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 4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2.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정기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임시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의결사항은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출석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 공모)**

-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준)**

-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5.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 6.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 8.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판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③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⑤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 ⑧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 ⑨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⑩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 『수원학연구』 발간 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5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1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1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학연구의 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그 밖에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타당성)**

-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의 윤리****제11조(저자의 의무)**

-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 ② 투고 및 게재 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

**제13조(자기 표절)**

-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구성과 의결)**

- ① 학술지 발간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제6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제소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권리보호)**

- ①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① 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소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 5.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수원학연구』 논문 투고 및 작성 요강

### ▣ 논문 투고와 작성 일반사항

#### 1. 원고 접수

- 1) 접수일자는 원고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원고의 주요 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한다.
- 4)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및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2. 원고 분량

-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 원고 작성

- 1)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18mm, 머리말/꼬리말 12mm로 한다.
- 3)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국문요약과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한다.

- 4)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 논문 작성 세부사항

#### □ 논문의 구성

#####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 2. 영문논문

- 1)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 □ 논문 제목 표기

#####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 저자명 아래에 영문 제목을 작성한다.

- 2)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 2. 영어논문

- 1)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 2)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3)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uwon)

## 3. 부제목

- 1)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한다.

### □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 1.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아래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 제목 아래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3)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4)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를 변경할 수 없다.

####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3)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6)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 3. 저자 소속 표기 예시

- 1) 저자가 1인일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2)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 3)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Urban@suwon.re.kr, Tel : 031-456-7890)

## □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 2. 주제어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10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 본문 작성

### 1. 본문 작성

- 1) 목차 및 본문의 장(章), 절(節), 항(項) 등의 번호 전개는 ‘장 → 1. 2. 3. / 절 → 1) 2) 3) / 항 → (1) (2) (3)’으로 하고,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 2)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3)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수원학(水原學)’ ‘수원학(Suwonology)’과 같이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병기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2. 본문의 인용문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2) 왼쪽 여백만 2줄림 둔다.
- 3) 자료(사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 도표 및 사진

### 1. 표 번호

- 1)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 2. 그림 및 사진 번호

- 1)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 1. 각주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 2) 한자(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 3) 표기 순서와 원칙(√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①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연구』1, √활빈학회, √100~101쪽.
  - ② 홍길동, √1960, √『의적연구』, √『의적학보』1 √; √1998 √『의적의 사회사』, √활빈출판사 √재수록, √100쪽.
  - ③ 홍길동, √1997,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홍길동, √1988(a), √앞의 논문, √100쪽.
  -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 )...]와 같이 처리
  - ⑤ A. √R, √Zolberg, √1972,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pp. √183~207.
  - ⑥ 조한욱 √유희김, √1996,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Robert √Darnton, √1984, √The Great Cat Massacre :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출판사이름), 100쪽
  - ⑦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고려사』 √권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事多稽滯 仍罷之.”
    - 『세종실록』 √권9, √세종 √6년 √5월 √1일(경자).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 2.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 2) 논문 및 단행본의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 3)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한다.

## □ 사사 등 표기

### 1. 사사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 2. 게재일자 등

- 1)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맺음말 말미 하단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 편집위원장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용 원광대학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호 경상대학교 교수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식 영남대학교 교수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금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동수 한양대학교 교수  
Rainer Dormels 비엔나대학 교수

## 편집간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19

발행인 | 김선희

편집인 | 박상우

발행일 | 2022년 11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주소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홈페이지 [www.suwon.re.kr](http://www.suwon.re.kr)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E-mail [suwonstudy@suwon.re.kr](mailto:suwonstudy@suwon.re.kr)

인쇄 | ㈜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

# Suwon Studies

No. 19, 2022

Suwon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Suwon Studies

Lee, Bang-Weon

Establishment and role of a public medical institution in Suw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oi, Jihae

A study on spatial changes of Hwaseonghaenggung after construction in 1923

Yi, Hong-Du

The Cavalry Battle at Namhan Fortress and Gwanggyo Mountain during the Qing's Invasion of Joseon in 1636

Cho Seong Woon

Memory of the Jeam-ri Massacre and Succession I  
: From liberation to the 1950s

Cho, Halla / Cho, Yongjun / Jeong, Gahy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rtual policy type preference and charging pros and cons

Kim Sukhee / Kim Hyungjun / Lim Hyejin

Satisfaction and Preference Differenc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 for Introduction of Smart Pedestrian Safety System in Suwon city